

李 炫 熙 教授指導

博士學位 請求論文

日帝下 西大門刑務所 研究

- 義兵鬪爭과 105人事件을 中心으로 -

2006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梁 盛 熟

日帝下 西大門刑務所 研究

- 義兵鬪爭과 105人事件을 中心으로 -

李 炫 熙 教授指導

이 論文을 博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4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梁 盛 熟

認 准 書

梁盛熟의 博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⑩

審査委員 _____ ⑩

審査委員 _____ ⑩

審査委員 _____ ⑩

審査委員 _____ ⑩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 文 概 要

서대문형무소는 일제의 식민지배 통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탄압기구로서 일제는 이곳을 통하여 한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을 억압하고 말살하려고 하였다. 즉 1908년 경성감옥으로 신축되어 문을 연 뒤 1945년 광복을 되찾기 까지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투옥되어 고문을 받으며 처형당했던 수난과 아픔의 현장이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보면 서대문형무소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애국지사들이 투옥되어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한 현장이기도 했다.

최초의 근대감옥인 서대문형무소의 개소와 함께 일제의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되었고 감옥제도에 있어서 자주권이 상실되었다. 즉 조선의 전통적 제도가 종지부를 찍고 서구의 영향을 받은 일본 행형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식민지 행형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일제침략에 항거하는 의병이 전국적으로 쫓기하고 항일의 열기가 넘치면서 무차별적인 체포와 투옥으로 감옥의 수용인원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일제 말 전국에는 형무소 17개소, 형무소지소 11개소를 운영하는 등 감옥을 계속 증설하였으나 항일 애국지사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감옥의 수용 실태는 위생과 급식상태가 마치 짐승우리와 같았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수감 중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대부분의 감방은 햇빛과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어둡고 습기가 차 있는데다 용변시설을 짓지 않아 방안에서 변통을 사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감옥내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항일 애국지사들은 일제침략에 항거하여 감옥 내에서까지 처절한 투쟁을 전개했다. 특히 李康季·李麟榮·許

蔦·金秀民·李殷瓚 등 항일 의병장들은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어 사형당하기까지 꾀꾀함과 의연함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헌병사령관을 준엄하게 꾸짖었기 때문에 이에 감명 받은 일본인들이 각별히 禮遇하였다. 일제의 탄압이 심해질수록 항일 의병들은 독립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며, 이후 일제침략에 항거하는 독립투쟁은 더욱 활발해졌다.

현재까지 자료 수집을 통해 발굴한 의병투쟁 관련 서대문형무소 투옥인물은 총 115명이다. 분석결과 1심(경성지방법판소나 경성지방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여 수감생활을 한 경우는 단지 30%에 그쳤고 투옥한 인물의 56%가 사형순국하거나 옥중 순국하여 체포된 2명 중 1명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또한 순국한 의병을 제외한 투옥인물의 75%가 5년 이상의 장기 형량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한국독립운동사의 첫 장을 열어간 항일 의병들의 격렬했던 활약상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105인 사건은 일제가 허위 날조한 최대 규모의 한민족 탄압사건으로 여기에 연루되었던 700여명의 애국지사들이 훗날 항일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의 지도력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05인 사건과 관련하여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된 인물의 출신지별 분석 결과 총 105명 중 3명을 제외한 98%가 서북지방으로 지칭되는 평북·평남·황해도 출신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의 발생지가 평북 선천이었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서구의 근대적 문명을 일찍 접할 수 있었고 기독교 등 새로운 사상과 신문화가 신속히 수용되어 근대사회로 급속히 진행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지닌 서북지방의 항일세력을 제거시킬 목적에서 꾸며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105인 사건의 재판당시 연령별 현황을 보면 40세 이하가 총 105명 중 89명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젊은 층이 대거 관련된 것은 일제가 尹致

昊·安泰國·梁起鐸·李昇薰 등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던 민족지도자들과 함께 미래의 항일 독립운동세력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청년·학생층을 대거 관련시켜 탄압하려 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형량별 현황을 보면 105인 사건 피의자들은 경성지방법원(1심)에서 105명 전원이 5년 이상의 중형을 받았다. 그러나 105인 전원 상고 결과 경성복심법원(2심)에서 6년 형 5명, 5년 형 1명, 무죄 99명으로, 1심 때 유죄판결을 받은 105인 중 94%가 무죄로 풀려났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가혹한 고문이 자행된 사실과 그로 이 사건 자체가 허위 날조된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의 애국계몽 운동가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간부들은 약 6년씩의 투옥에 처해졌고, 일반회원들도 2년 여간 온갖 살인적 고문을 당하다가 국제여론의 압력 하에 더 이상 구실이 없어 풀려났다.

이들 대부분은 옥고에서 풀려난 이후 불굴의 투지로 국권회복운동을 다시 전개하였으며 항일민족 지도력으로 성장하여 1919년 3·1운동을 견인해 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끈 주도세력으로 굳게 자리 잡았다.

目 次

論文概要

I. 序 論	1
II. 西大門刑務所 開所の 背景	5
1. 韓國 行刑制度의 歷史的 背景	5
1) 朝鮮時代 以前의 行刑制度	5
2) 朝鮮時代의 行刑制度	7
3) 甲午更張 以後의 行刑制度	10
2. 日帝의 西大門刑務所 開所와 目的	14
1) 監獄官制의 制定 및 監獄의 設置	15
2) 監獄分監의 設置	19
3) 監獄의 收容實態	20
III. 日帝強占期의 行刑	25
1. 行刑機關	25
1) 總督府 機構	25
2) 行刑組織의 變遷過程	28
2. 刑務官	41
1) 監獄官制	41
2) 刑務官 任用	43
3) 刑務官 定員	44

3. 刑務所の 運營	47
1) 收容	47
2) 在監者 處遇	62
3) 刑務作業	68
IV. 抗日 義兵將의 獄中鬪爭	72
1. 西大門刑務所에서 殉國한 義兵將	73
1) 李康季	73
2) 李麟榮	79
3) 許 蔦	85
4) 文泰洙	91
5) 李殷瓚	95
6) 金秀敏	99
7) 盧應奎	102
8) 南相穆	105
2. 抗日義兵의 西大門刑務所 投獄實態 分析	105
V. 西大門刑務所에 投獄되었던 105人事件 關聯者들의 獄中鬪爭	110
1. 安岳事件	111
1) 安岳事件과 愛國志士 投獄	111
2) 金九의 獄中鬪爭	114
2. 梁起鐸 등 16人 保安法 違反事件	120
3. 105人 事件	127
1) 105人 事件과 愛國志士 投獄	127

2) 105人 事件의 拷問方法 事例	134
4. 105人 事件의 西大門刑務所 投獄實態 分析	143
VI. 結 論	150
參 考 文 獻	154
ABSTRACT	161
附 錄	166

表 目 次

< 丑 II-1 > 在監人員表	22
< 丑 III-1 > 日帝強占下 刑務所 變遷過程	35
< 丑 III-2 > 看守採用人員表 (1919년~1929년)	45
< 丑 III-3 > 刑務所別 刑務職員人員表(1937年末 現在)	46
< 丑 III-4 > 年度別 在監人員	48
< 丑 III-5 > 各所別 收容人員表(1938年 1日平均)	49
< 丑 III-6 > 刑務所 收容區分(1938年)	51
< 丑 III-7 > 醫務職員 現況(1937年)	65
< 丑 III-8 > 教務職員 現況(1937年)	65
< 丑 III-9 > 假出獄人員(1911~1943年)	67
< 丑 III-10 > 作業收入 現況	70
< 丑 III-11 > 作業形態別 收入(1935년)	70
< 丑 III-12 > 官用物品製作實積(1935년)	71

統計目次

抗日義兵의 西大門刑務所 投獄實態 分析

[통계 IV-1] 출신지별 현황	106
[통계 IV-2] 법원별 현황	107
[통계 IV-3] 형량별 현황	108
[통계 IV-4] 순국 현황	108

105人 事件의 西大門刑務所 投獄實態 分析

[통계 V-1] 출신지별(도별) 현황	143
[통계 V-2] 출신지별(군별) 현황	145
[통계 V-3] 재판 당시 연령별 현황	146
[통계 V-4] 경성지방법원(1심) 형량별 현황	147
[통계 V-5] 경성지방법원(2심) 형량별 현황	148

附 錄 目 次

< 자료 1 > 監獄官制	166
< 자료 2 > 看守및女監取締職務規程	167
< 자료 3 > 看守採用規則	169
< 자료 4 > 罪囚押送規則	171
< 자료 5 > 일본의 감옥법	173
< 자료 6 > 의병투쟁 관련 서대문형무소 투옥 및 순국선열	182
< 자료 7 > 105인사건 관련 서대문형무소 투옥 및 순국선열	190

I. 序 論

서대문형무소는 대한제국 말 일제에 의해 한국 침략의 일환으로 지어져 지난 80여 년간 한국 근·현대사 격동기의 수난과 민족의 한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의 현장이었다.

일제는 의병투쟁을 비롯하여 한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이 점점 더 거세지자 이를 억압하고 구금 고문하기 위해 1908년 대규모의 신식감옥인 京城감옥을 신축하였다.

이 감옥은 1912년 9월 3일 마포 공덕리에 京城감옥을 설치하면서 서대문감옥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고, 1923년 5월 5일 서대문형무소로 다시 바뀌었다. 그 후 이곳은 광복을 맞기까지 수많은 항일 독립 애국지사들이 고문을 받으며 처형되거나 옥사당하는 등 일제 침략과정에서 악명 높은 곳이었다.¹⁾

이렇듯 서대문형무소는 그 이름의 변화만큼이나 많은 민족수난의 역사를 간직한 장소였으며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표적인 탄압기관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²⁾

1) 法務部, 『韓國矯正史』, 1987, 1090~1156쪽 참조. 광복 이후에도 1945년 11월 21일에 서울형무소로, 1961년 12월 23일에 서울교도소로, 1967년 7월 7일에 서울구치소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그 뒤 1987년 11월 15일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옮겨가게 되자 1992년 8월 15일 '서대문독립공원'으로 개원하였다. 그리고 1995년부터 서대문형무소 성역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998년 11월 5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개관하였다.

2) 서대문형무소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愼鏞廈, 『舊서울구치소 보존대상 시설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연구』 I·II, 서울특별시, 1988 : 羅明淳·李泳禧, 『서대문형무소-흩기던 날의 기록 그리고 그 역사』, 열화당, 1988 : 金三雄, 『西大門刑務所 近現代史』, 나남출판, 2000 : 남도영·김삼웅·이현희, 『韓民族의 獨立運動과 西大門刑務所』, 서대문구청, 2000 : 박성수·오영섭·이현희, 『義兵戰爭과 西大門刑務所』, 서대문구청, 2001 : 윤경로·김삼웅·정경환, 『西大門刑務所와 105人事件』, 서대문구청, 2002 : 신재홍·김창수·김삼웅, 『西大門刑務所와 義烈鬪爭』, 서대문구청, 2003 : 이현희·유준기·조규태, 『3·1

행형사 측면에서 본다면 조선총독부 등에서 발간한 자료³⁾들로 일제하 행형 제도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행형과 관련하여 몇몇 연구⁴⁾가 있다.

그리고 다행히 판결문과 수형기록표⁵⁾가 일부 보존되어 있어 서대문형무소의 투옥 여부와 재판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당시 신문자료와 개인기록 등을 통해 서대문형무소 투옥인물의 활동내용과 검거소식을 알 수 있다.⁶⁾

또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는 판결문과 수형기록표, 옥중일기와 신문기사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해 서대문형무소 순국선열 90명과 투옥인물 400여명을 발굴하여 전시하였다.⁷⁾ 그리고 필자가 추가로 발굴한 서대문형무소 순국 및 투옥인물은 약 600여 명 정도이다.⁸⁾

運動 以後의 義烈鬪爭과 西大門監獄』, 서대문구청, 2004 : 김응조·이정은·김광식, 『3·1民族代表와 西大門刑務所』, 서대문구청, 2005.

3) 朝鮮總督府 治刑協會, 『朝鮮刑務所寫眞帖』, 1924 : 朝鮮總督府 法務局 行刑課, 『朝鮮刑務提要』, 1927 : 中橋政吉, 『朝鮮舊時の刑政』, 1937 : 朝鮮總督府 法務局 行刑課, 『朝鮮の行刑制度』, 1938 : 西大門刑務所, 『西大門刑務所例規類纂』, 1939.

4) 尹白南, 『朝鮮刑政史』, 文藝書林, 1948 : 國立矯導官學校, 『韓國行刑史』, 1967 : 徐壹教,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研究』, 博英社, 1968 : 權仁鎬, 『行刑史』, 國民書館, 1973 : 許柱旭, 『行刑學』, 一朝閣, 1977 : 明炯植 外, 『韓國刑政史』, 圓光大學校出版部, 1983 : 李正贊, 『韓國行刑史』, 選民出版社, 1984 : 法務部, 『韓國矯正史』, 1987 : 임재표, 『朝鮮時代 行刑制度에 관한 研究』,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5)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別集1~9 참조.

6) 또한 백범일지 등 서대문형무소 투옥인물의 자서전 등에서 간간히 옥중생활을 그려볼 수는 있지만 자세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밖에 權寧峻은 1922년에 서대문형무소의 간수가 되어 8·15 광복을 맞이까지 신의주·진주·원산 등지의 형무소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刑政半世紀」라는 제목으로 『중앙일보』에 연재(1970. 9. 15~10. 5)하여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된 애국지사들의 수형생활과 고문의 참상을 밝혀주었다.

7) 필자는 1996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근 10년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학예연구사로 근무하면서 전시자료 수집 및 학술연구를 담당하였다. 현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2층 전시실에는 서대문형무소 투옥인물 400여명의 명단을 시대순과 사건별로 전시하고 있다.

8) 양성숙, 「항일독립운동의 현장-서대문형무소」, 『殉國』, 2002. 1월~2003. 2월 연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단편적으로 고대국가시대부터 행형의 변천과정을 시대 순으로 서술하거나 순국선열의 업적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이 대부분이었고 서대문형무소 투옥실태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렇게 서대문형무소와 관련된 연구가 부진한 이유는 서대문형무소란 이름과 지명의 한계성으로 행형기록 위주로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일제가 물러가면서 그들의 만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가 될 만한 애국지사들의 수형기록 자료들을 대부분 태워버렸기 때문이다.⁹⁾ 그리고 그 중에서 남은 일부 자료마저도 6·25 한국 전쟁 이후 소실되었다.¹⁰⁾

이에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를 항일 의병투쟁 및 105인사건 관련 투옥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서대문형무소가 개소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고 감옥관제의 제정 및 전국 감옥의 설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둘째로 일제침략기 행형조직의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형무관의 임용 및 정원, 재감자 처우 및 형무작업, 감옥의 수용실태 등 형무소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로 의병투쟁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한 항일 의병장들의 행적을 재판 및 사형집행과정 등 옥중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된 항일의병을 출신지와 법원별 항소심 여부, 형량별 현황과 순국선열 현황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1908년 서대문형무소 설립 이후 항일의병의 투옥실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넷째로는, 105인 사건 및 안악사건으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된 애

재 참조. 필자는 월간 『순국』에 약 14회 연재를 통하여 서대문형무소 순국선열 및 투옥인물 1,000여명을 시대별 사건별로 분류하여 연재하였으나 정리에 그쳤을 뿐 본격적인 연구논문으로서는 매우 미비하였다.

9) 權寧峻, 「刑政半世紀」, 『中央日報』, 1971년 9월 30일자.

10) 『東亞日報』, 1965년 2월 11일자 : 『朝鮮日報』, 1965년 2월 12일자.

국지사들의 옥중기록 및 고문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판결문과 105인 사건 公判始末書에 의거하여 105인 사건 관련 애국지사들의 출신지별 현황과 재판당시 연령별 현황, 1심과 2심의 형량별 현황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西大門刑務所 開所의 背景

1. 韓國 行刑制度의 歷史的 背景

1) 朝鮮時代 以前의 行刑制度

한국 행형사 연구는 고증학적 뒷받침이 불충분 한데다가 ‘행형사’라는 특수한 부분의 사료 빈곤으로 현재까지 연구 성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몇 가지 단편적인 사료를 가지고 고대 行刑史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각종 고대 문헌 자료를 통하여 대략적인 행형제도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漢書地理志』燕條에 있는 八條法禁은 고조선의 행형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것도 전문은 알 수 없고 살인·상해·절도와 관련된 3개조만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이러한 생명, 신체, 재산 및 그 외 정조에 관한 法禁性質은 비단 고조선 사회에서 뿐 아니라 고대의 인류사회에 널리 공통되는 기본법으로서 原始刑法에서 약간 변형된 일종의 自然法이라고 할 수 있다.¹¹⁾

扶餘의 행형제도는 魏志 扶餘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개인의 생명과 사유재산 및 가부장제적 가족제도를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부여의 행형에서 특이한 것은 殷正月(12월)에 나라의 제천행사를 열고 매일 먹고 춤추며 즐겁게 노는 迎鼓라는 제도이다. 이때에는 모든 刑獄 업무를 중단하고 죄수를 석방하는 풍습이 있었다.¹²⁾

삼국시대의 행형 제도는 원시형법의 형태를 지나 좀 더 체계적으로 법령을

11) 문화재청, 『구서울구치소 실측조사보고서』, 2003, 66쪽.

12) 法務部, 『韓國矯正史』, 1987, 10~12쪽 참조.

정비하여 국가공권력이 점차 크게 작용하게 되고, 刑罰의 종류가 死刑, 流刑, 杖刑, 財産刑으로 다양해졌으며 감옥제도가 정비되었다.

고구려는 정복적인 기질이 행형제도에도 그대로 표현되어 형벌은 매우 준엄하였다.

백제는 고구려와 비슷하였으나 일찍부터 중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형벌을 시행함으로써 법치를 중요시하였다.¹³⁾ 반역·살인·退軍·간음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고구려·신라와 비슷하지만 도둑질한 자는 3배의 배상을 물게 하였고 官人收賄罪는 백제의 초기부터 등장하였다.

신라는 삼국사기 등 사료에 의하면 반역 행위자는 極刑에 처하였고, 전투에 임하여 퇴각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였다. 또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며 절도자는 배상을 물게 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고구려보다는 백제의 제도에 가까웠다.

삼국시대에는 獄, 牢獄, 囹圄라고 불리던 구금시설이 있었으나 구금제도의 운영방법에 관한 문헌상 기록은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고려시대에 典獄署가 설치되면서 독립된 구금시설인 감옥이 설립되었다. 즉 전옥서는 고려 太祖가 모든 행정기구를 조직 정비하면서 獄囚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독립된 형무기관인 것이다.¹⁴⁾

지방에는 지방관아에서 직접 관장하는 附設獄이 설치되었으며 고려 말에 이를 모두 市獄이라 불렀다. 또한 종래의 전옥서만으로는 급격히 불어난 죄인을 수용할 수 없어서 임시 구금시설로 설비한 假獄도 있었다.¹⁵⁾

고려 형법에 名例된 형벌의 종류는 笞, 杖, 徒, 流, 死 등 5종류로 되어있고, 그 이외에 附加刑도 있었다.

감옥의 건축형식은 문헌상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仁宗때 송나라에서 사

13) 丘秉朔, 『韓國古代法史』, 고려대학교출판부, 1984, 122쪽.

14) 『高麗史』 卷77, 百官二 典獄署條 「掌獄囚國初始置典獄署…」 라고 함.

15) 尹白南, 『朝鮮刑政史』, 文藝書林, 1948, 64쪽.

신으로 왔던 徐兢이 저술한 『高麗圖經』에

개경에 설치된 감옥은 둘레의 담장이 원형으로 매우 높고 그 가운데 건물을 지었는데 官行道路의 남쪽에 刑部와 상대하여 있었으며 도적과 중죄인만을 이 옥에 가두었다.¹⁶⁾

라고 하여 당시 둘레의 담장이 원형이었던 전옥서의 건물구조를 알 수 있다.

2) 朝鮮時代의 行刑制度

가. 行刑管掌機關 및 刑罰

조선의 통치제도는 행정과 사법이 명백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사법업무도 관장하였고, 체포·수사하는 기관에서 재판과 형의 집행까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행형을 관장하는 중앙기관은 刑曹, 司憲府, 義禁府, 漢城府, 捕盜廳 등이 있었다. 이러한 기관에서 행정·사법 심지어 군사 권한까지도 행사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직무에 따라 관리의 직위가 세분되어 감옥관리를 전담하는 관리 등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었다.¹⁷⁾

형조는 조선 초기 설치된 6曹 중의 하나로 통치 질서의 유지를 위한 각종

16) 『高麗圖經』官府篇 卷16, 囹圄條 : 內務部 治安局, 「高麗時代의 治安制度」, 『韓國警察史』 제1권, 1973, 109쪽.

17) 法務部, 앞의 책, 86~87쪽.

법률과 형벌, 각종 소송사건 등 국가의 사법업무와 노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였다. 형조에는 詳覆司·考律司·掌禁司·掌隸司의 4司를 두었고, 屬衙門으로 올령의 관리와 律官을 양성하는 律學廳, 囚人의 구금을 전담하는 전옥서와 조선 초 설치되면서 형조에 소속되었다가 중기 이후 兵曹에 소속된 左·右捕盜廳이 있었다.

사헌부는 時政의 是非를 논하고 문무관의 기강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 잡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맡은 일종의 감찰기관이었다. 행형의 집행을 담당하는 刑吏 軍士 30여명을 두었다.¹⁸⁾

의금부는 왕의 명령에 의한 특수범죄를 처리하였는데, 즉 國事犯, 謀逆 및 반역죄 또는 왕실·왕족에 대한 범죄, 관헌으로서 관기를 문란케 한 범죄, 사헌부가 탄핵한 사건, 인륜도덕에 관한 범죄 등을 관장하였다.

한성부는 수도의 행정을 맡은 기관으로서 수도의 일반 행정 이외에도 전국의 토지, 가옥의 소송과 묘지에 대한 소송을 맡아 처리하였다.¹⁹⁾

지방은 전국의 행정구역을 八道로 나누어 각도에 관찰사를 두고 그 밑에 350개의 府, 牧, 郡, 縣을 두었다.

道觀察使 밑에는 수령이 관내의 행형을 관장하였고, 수령의 밑에는 6房을 두었는데 행형에 관한 사무는 刑房의 소관으로 재판·수사·감옥 등 형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하였다.²⁰⁾

조선시대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經國大典』의 규정에는 형사에 관한 법률은 大明律을 사용하고 경국대전 原典 및 續大典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는 그 율에 따라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다. 형벌의 종류는 대명률의 규정에 의한 笞刑·杖刑·徒刑·流刑·死刑의 五刑이 조선시대의 형벌의 기본이 되었다.

18) 『六典條例』 吏典 司憲府 總例條.

19) 續大典·大典會通 刑典 聽理條.

20) 金雲泰, 『朝鮮王朝行政史：近世編』, 博英社, 1970, 108쪽.

형벌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형구는 笞·杖·訊杖·枷·杻·鐵索·鑊²¹⁾의 7종이 있었다.

나. 監獄制度

조선시대 감옥은 수사·재판의 형사 절차를 거쳐 형을 집행할 때까지 수용하는 구금시설을 말한다. 형조, 한성부, 사헌부, 병조, 승정원, 수령 등의 直囚衙門에는 감옥시설이 부설되어 있었으며, 그 중 형조의 전옥서는 구금만을 전담하는 기관이었다.

전옥서는 조선감옥의 표준이 되는 동시에 서대문형무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죄인의 獄囚를 맡아하던 관서였는데, 瑞麟洞(現 종로1가 89번지, 광화문우체국 자리)에 있었다.²²⁾

조선시대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을 직수아문이라고 하였는데, 경국대전에는 직수아문을 형조·병조·한성부·사헌부·승정원·장예원·宗簿寺·備邊司·포도청·관찰사·수령으로 한정하였다. 그 외의 官司에서 구금할 죄인이 있을 때는 모두 형조에 이송하여 가두었다.²³⁾

조선의 통치구조는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수아문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행정을 수행하는 모든 관아에서 사법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태형50에 해당하는 사안은 직접 처리할 수 있으나 구금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형조에 이송하도록 한 것이다.

직수아문에는 감옥이 부설되어 있었고 형조에는 전옥서, 지방에는 道獄·府

21) 笞는 태형을 집행할 때 쓰는 회초리, 杖은 杖刑에 쓰는 때, 訊杖은 죄인을 訊問할 때 쓰는 때, 枷는 죄인의 목에 씌우는 나무 갈, 杻는 손에 채우는 나무로 만든 수갑, 鐵索은 죄인의 도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우는 쇠사슬, 鑊는 죄인이 노역할 때 철삭을 연결하여 발목에 채우는 쇠뭉치를 말한다.

22) 『經國大典』 1, 吏典 典獄署.

23) 『經國大典』·『續大典』·『大典通編』·『大典會通』 刑典 囚禁.

獄·郡獄이 있었다.

한편 조선에서는 통치의 기본이념을 인정에 두었기 때문에 형벌은 가볍게 하고 죄수를 보호하는 조치를 흘형이라고 하여 善政의 징표로 삼았다. 조선의 모든 형사법에는 반드시 흘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억울하게 옥에 갇히거나 죄수의 처우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였다.

3) 甲午更張 以後의 行刑制度

가. 甲午更張과 行刑改革

1894년 갑오경장으로 홍범14조에서 선포한 민·형사법의 제정과 불법 감금, 불법 형벌의 금지 및 인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가 개혁의 지침이 되었다. 세부적으로 刑曹의 폐지와 法務衙門의 신설, 의금부를 義禁司로 개편, 緣坐律의 폐지, 拷刑금지, 관·민의 재판권을 법무아문에 귀속 처리, 경무청 관제 개편, 감옥사무를 內務衙門으로 이관, 감옥 규칙의 제정 등이 있다.

특히 1895년 3월 5일자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²⁴⁾이 제정되었는데 그것은 행정권으로부터 사법권을 독립시키는 근대 사법제도의 기본원리를 처음 시도한 것이었다.

갑오경장으로 일반 행정업무의 일부로서 관장되던 監獄사무를 새로 설치한 警務廳의 소관으로 정하고, 刑曹에 소속되었던 典獄署를 경무청 監獄署로 변경함²⁵⁾과 동시에 종전 直囚衙門(형조, 의금부, 사헌부, 한성부, 포도청 등)에 부설되었던 감옥을 모두 폐지함으로써 감옥사무를 일원화하였다.

형벌에 있어서도 조선의 基本刑이었던 五刑(笞刑·杖刑·徒刑·流刑·死刑)

24) 法律 第1號 裁判所構成法 : 『官報』, 開國 504年(1895) 3月 25日.

25) 『高宗實錄』 33, 高宗 32年 4월 29일, 勅令 第85號 警務廳官制(『官報』 제27호 開國 504年 5月 1日)

중 杖刑을 폐지하고, 徒刑을 징역으로 바꾸고, 流刑은 정치범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未決囚와 既決囚를 구분하여 분리 수용하고 징역형을 받은 자는 감옥서에서 勞役に 종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감옥운영의 기준이 되는 監獄規則과 懲役受刑者의 累進處遇를 규정하는 懲役表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행형제도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近代 自由刑制度를 확립시키려는 것이었다.²⁶⁾

나. 光武時代의 行刑

광무시대(1897~1907)의 행형제도는 조선 고유의 성격을 살리면서 갑오개혁 당시의 법령을 보완하고 점진적인 제도개선으로 근대적 행형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1909년 7월 12일 己酉覺書를 체결하여 감옥사무를 박탈함으로써 조선 행형의 맥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조선의 감옥기구는 중앙의 경우 刑曹에 소속된 典獄署와 直囚衙門이 있었고 지방에는 道獄, 府獄, 郡獄 등이 있었다. 갑오경장으로 형조에 소속되었던 전옥서는 內務衙門에 이관되면서 監獄署로 명칭을 변경하고 警務使의 직할로 두었다.

그리고 內務衙門 직할의 警務廳이 창설되면서 左右捕盜廳과 直囚諸司獄은 폐지시키고 감옥기구를 監獄署로 일원화시켰다. 이후 감옥사무는 내부 산하의 경무청 소관이었다가 1907년 12월 13일 內部에서 다시 法部로 이관되었다.

갑오경장의 행형개혁은 전통적인 五刑(笞·杖·徒·流·死)제도를 자유형 중심의 행형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근대 자유형이 확립된 시기는 光武時代부터이다.

自由刑은 범죄자를 일반사회로부터 강제로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거나 강제노역에 종사시키는 자유 박탈의 형벌인데, 고려·조선시대에는 徒刑과

26) 法務部, 앞의 책, 1987, 207쪽.

流刑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일반 행정관청에서 徒·流刑을 관장하였는데, 개선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의 처우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갑오경장에서 처음 사법과 행정을 분리하여 裁判所構成法(1895년 3월 25일, 法律 제1호)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리고 1894년 11월 25일 監獄規則을 제정하여 새로운 監獄事務의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未決監과 既決監을 구분하고 判事와 檢事の 監獄巡視를 명시하였으며 在監者의 준수사항 등이 규정되었다.²⁷⁾ 이때 監守長(간수장)과 押牢(간수)라는 직명이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당시 법률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식 명칭이 함께 사용된 것이다.

또한 1898년 1월 12일 勅令 제3호로 감옥규칙을 개정하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감옥 사무의 총괄적인 지휘감독 책임을 內部大臣과 각 지방의 관찰사에게 귀속시키고, 女監은 별도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징역에 복역하는 수형자의 작업 기준과 工錢支給 등을 새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법관의 양성과 재판소의 설치, 그리고 감옥시설 등을 일시에 갖추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정세의 혼돈으로 일관된 시책을 추진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근대 自由刑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1896년 俄館播遷 이후 일본의 간섭을 벗어나 다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벌의 기초가 되는 刑律名例(刑法)를 비롯하여 행형에 관련된 법령인 監獄細則, 판·검사제도가 그 시기에 처음 시행되었다. 근대적 자유형이 정착되면서 수형자에 대한 처우개념이 성립되고 실제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行刑關係法規가 제정되었다.

특히 1898년 1월19일 內部令 제11호로 제정된 監獄細則은²⁸⁾ 감옥규칙에 대한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률형태에 있어서도 감옥규칙에 비하여 진전

27) 韓國文獻研究所編, 『法規類編4-韓末法令集』, 亞細亞文化社, 1982, 1~6쪽.

28) 韓國文獻研究所編, 위의 책, 亞細亞文化社, 1982, 6~15쪽.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監獄細則은 通規, 給與, 衛生, 接見, 賞與·賞罰의 6개의 章과 27개 條文으로 되어있으며 在監者 준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監獄細則은 監獄規則과 함께 近代 行刑史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한편 1894년 감옥규칙의 제정과 함께 범죄인의 改過促進을 목적으로 懲役表를 제정하였다. 이 표에 의하면 수형자를 普通者·特殊技能所持者·老幼者·婦女의 4종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 종류에 대하여 2~5등으로 나누어 常用 戒具의 종류를 달리 행하였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진급시키면서 戒具를 완화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5等に 대하여는 그 기간 내에 重鎖를 채우고 4등에 진급하면 輕鎖를 채우나 다시 3등에 진급하면 양채, 2등에 片鈇, 1등은 無戒具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鈇란 수형자가 작업도중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목에 달고 다니는 쇠몽치를 말하는데 일본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조선의 鑰와²⁹⁾ 같은 것이다.

징역표는 수형자에 대한 분류 및 단계적 처우제도의 초기 형태로서 근대자유형의 도입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는 전통적 행형에서 근대적 행형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에서 명치유신 초기 시행한 징역표와 거의 동일한 것이다. 德川幕府시대의 행형은 조선시대와 비슷한 呵責, 押込(拘禁), 敲(杖), 追放(徒·流), 遠島(流), 死를 기본으로 하는 전근대적 행형을 시행하였으나 명치유신 이후 서구의 제도를 본받아 근대 행형으로 전환하였다.

1896년 4월4일 법률 제3호로 「刑律名例」를³⁰⁾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朝鮮舊制의 형벌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근대적 법률체계를 갖춘 과도기적 형법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제정 이래 4차례 개정되었다.

29) 六典條例 刑典形具條에 鑰連環의 무게는 3斤, 鐵索의 길이는 1丈으로 되어 있고, 大明律直解 獄具條에도 鑰連環의 무게는 3斤이라고 되어 있다.

30) 法律 第3號 刑律名例, 官報 建陽元年 4月 7日.

1905년 4월29일 법률 제2호로 제정된 刑法大典은 조선왕조에서 시행한 마지막 刑法이었다. 이것은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조선의 전통적 형법의 律例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형법대전은 국한문을 혼용한 전문 680조로 되어있으며 大典 중에는 刑事實體關係에 관한 규정 이외에도 刑事節次에 관한 규정과 행형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동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되어 오던 대전회통의 刑典 및 大明律과 갑오경장 이후 제정된 刑律名例 등을 모두 폐지함으로써 (同法 제679조) 刑律關係의 법률을 일원화시켰다.

2. 日帝의 西大門刑務所 開所와 目的

갑오경장 이후 감옥사무는 內部官衙의 경무청업무에 속하여 1907년까지 약 13년을 지속하여 왔는데 그간 경무청관계는 수차례에 걸쳐 변혁되어 왔으나 監獄官制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隆熙時代(1907~1910)에 이르러 감옥사무는 內部관할에서 法部관할로 이관되었고 감옥관계는 경무청관계에서 독립되었다. 이에 따라 감옥 관계의 조직과 법령이 대폭적으로 개편되었다.

또 이 시기는 조선의 국권이 일제로부터 잠식당하던 시점이니 만큼 감옥제도에 있어서도 일본의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됨으로써 자주권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조선말 근대행형이 성립된 이래 국내의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추진되어 오던 행형의 근대적 개혁은 종식되고 이후 일본의 행형제도를 그대로 옮겨 놓는 식의 변화를 맞게 되었다.

그것은 감옥제도의 변천이라는 관점에서 조선의 전통적 제도가 종지부를 찍고 서구의 영향을 받은 일본 행형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식민지 행형의 서막을 이루게 되었다.

1) 監獄官制의 制定 및 監獄의 設置

1907년 12월 13일 勅令 제52호로 監獄署의 관할이 內部에서 法部로 이전되고 監獄官制가 새로 제정되었다.³¹⁾ 그 내용을 요약하면 감옥은 法部 大臣의 관리에 속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고, 典獄 9인, 看守長 54인, 監獄醫 12인, 通譯 7인의 직원을 두었다. 전옥은 법부대신 및 檢事長의 지휘감독을 받아 감옥 사무를 관장하며 부하직원을 지휘 감독하였다. 감옥의는 상관의 명을 받아 의무에 종사하며 통역은 통역과 번역을 담당하였다. 그밖에 간수와 女監取締 약간 명을 두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分監도 설치할 수 있었다. 이때 分監長은 간수장으로 대신하여 전옥의 지휘를 받아 분감 사무를 관장하였고 부하직원을 감독하였다.³²⁾

監獄官制는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의 감옥업무를 규제하는 첫 규정으로서, 이에 따라 감옥조직이 경무청에서 분리 독립되고 크게 확장 개편되었다.

그리고 監獄官制에 이어 계속적으로 行刑關係의 法令들이 제정되었다. 즉, 1908년 4월 11일 法部令 제2호로 전국에 8개의 監獄 本監을 설치하였고, 같은 해 11월 20일 法部令 제19호로 전국에 8개의 監獄分監을 증설하였다. 이외에도 1908년 4월 25일 法部令 제3호로 看守와 看守長의 중간에 看守部長 職級을 신설하고, 1908년 5월 12일 法部令 제4호로 看守및女監取締職務規程을 제정하였다.

특히 看守및女監取締職務規程을 보면 간수와 여감취체는 전옥 및 간수장의

31) 官報, 1907年 12月 8日 號外

32) 부록 <자료 1-監獄官制> 참조.

지휘에 따라 서무 및 계호에 종사하며 근무의 방법 및 사무의 분담은 전옥 및 간수장이 지정한 바에 따르고 항상 재감인의 동정을 시찰하여 그 상황을 간수장에게 보고하게 했다.³³⁾

이러 監獄職員給與令(1908. 5. 25), 監獄官服制(1908. 6. 17), 看守採用規則(1909. 6. 18)을 제정하였다. 특히 간수채용규칙을 보면 간수는 신체검사 및 학술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신장이 5척 이상이고 연령이 20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만 응시가 가능했다. 먼저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은 학술시험을 치렀는데, 필기와 구술 총 2종의 시험으로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만 구술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³⁴⁾

이밖에도 監獄職員定員(1908. 6. 19), 監獄官服裝規則(1908. 6. 23), 看守女監取締給與品規則(1908. 6. 23), 在監人領置金品處理規程(1908. 6. 15), 監獄僱傭人給與規程(1908. 6. 20), 看守以下給與品支給規程(1908. 7. 23), 罪囚押送規則(1908. 7. 23), 留置·拘留 및 刑罰執行施行(1908. 7. 31), 教誨師旅費規程(1909. 3. 26), 收監者食糧規程(1909. 4. 16) 등을 제정하였다.³⁵⁾ 이 중 죄수압송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미결수와 기결수는 경찰이 압송하되 감옥의 경리 및 행형상의 필요로 인해 기결수를 타 감옥으로 압송할 경우에는 감옥관리가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압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출전과 일몰 후에는 할 수 없었고 전염병 유행지를 경유한 때는 따로 격리시켜 소독을 행하도록 하였다.³⁶⁾

한편 1907년 정미7조약 이후 감옥서의 고위직에 일본인이 직접 임명되기 시작하였고 점차 하위 감옥관리에 이르기까지 일본인으로 채워졌다. 그리하여

33) 부록 <자료 2-看守 및 女監取締職務規程> 참조.

34) 부록 <자료 3-看守採用規則> 참조. 1909년 6월 18일 法部令 제6호로 제정.

35) 法務部, 앞의 책, 1987, 286쪽.

36) 부록 <자료 4-罪囚押送規則> 참조. 1909년 7월 23일 勅令 제53호로 제정.

수용자와의 의사소통과 조선에서의 원활한 감옥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역 관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어 1907년 12월 27일 法部令 제1호로 「京城監獄署를 설치하는 件」을 반포하였으며, 1908년 4월 11일 법부령 제2호로 전국 8개 감옥의 명칭과 위치를³⁷⁾ 정하여 반포하였다. 이 감옥들은 1908년 7월 13일 法部령 제10호 「監獄事務 開始期에 관한 件」에 의하여 7월 16일부터 업무가 개시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1일 法部告示 제8호 「京城감옥 이전」에 의해 京城감옥은 종로의 舊 典獄署 자리에서 독립문 밖 금계동(현재 서대문구 현저동)에 신축한 감옥으로 이전하였다.

1907년 12월 감옥사무가 내부 관할로부터 법부로 이관되면서 漢城府의 경무청감옥서는 京城감옥서로 변경³⁸⁾되었다가 1908년 4월 11일 京城감옥으로 개칭되었다.

1908년 10월 서대문 금계동에 감옥을 신축·이전함과 동시에 종로에 있던 舊 전옥서는 京城감옥 종로출장소로 개칭되었다. 이 京城감옥 종로출장소는 1921년에 폐지되었다.³⁹⁾

京城감옥의 신축이전 경위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시대 서대문형무소장을 역임했던 나카하시(中橋政吉)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마루야마(丸山) 警務顧問은 장차 사회의 변화에 따라 犯罪人이 크게 증가하

37) 官報, 1908年 4月 17日 法部令 第2號 ‘監獄位置·名稱’에 京城감옥(한성부), 평양감옥(평안남도 평양), 대구감옥(경상북도 대구), 공주감옥(충청남도 공주), 해주감옥(황해도 해주), 광주감옥(전라남도 광주), 진주감옥(경상남도 진주), 함흥감옥(함경남도 함흥) 등 전국 8개 감옥의 위치와 명칭이 나타나 있다.

38) 1907년 12월 27일 法部령 제1호, 京城감옥서를 설치하는 건.

39) 法務部, 앞의 책, 1987, 254~255쪽.

게 될 것을 예측하고 경비 약 5만원을 들여 인왕산 金鷄洞에 감옥의 신축에 착수하였다. 건물의 설계는 本國(日本)에서 典獄을 지낸 四天王數馬가 맡았다. 이 신축감옥은 전부 목조로 하였고 周壁은 전면의 일부만 벽돌로 하고 그 외는 모두 아연판을 붙인 판자로 하여 허술한 점이 있었지만 청사 및 부속건물 80평, 감방 및 부속건물 480평에 건축구조는 감방의 巡警, 視察, 換氣 및 防風을 고려하여 “T字型”으로 하고 外哨와 巡察路를 설치하여 戒護上 편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감방은 주간에는 어둡고 매우 칙칙하여 이 점만은 결점이었다. 하지만 공장, 목욕실, 그 외 필요한 설비를 갖추었으며 수용능력은 500명 정도였다. 당시 전국 8개 감옥의 총 수용면적이 3백여 평이었던데 비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현대식 감옥이었다.⁴⁰⁾

구한말 일제침략에 항거하는 의병이 전국적으로 꺾기하고 항일의 열기가 넘치면서 감옥의 수용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京城감옥은 초만원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09년 서대문 대평동에 있는 원래 조선포병대 막사를 인수하여 감방으로 개조한 후 수감자들을 수용하였는데 이것이 京城감옥 서대문출장소이다.

서대문출장소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로서 대평동(현 종로구 평동, 대한적십자병원 자리)의 도로를 따라 세웠고 외벽은 설치하지 않았다. 보통 4~5백 명을 수용하고 가장 많을 때는 700명을 수용하였는데 나중에 대평동출장소로 개칭되었고 1923년 폐지되었다.⁴¹⁾

京城감옥은 종래의 전옥서를 개편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행형기관일 뿐

40) 中橋政吉, 『朝鮮舊時の刑政』, 1937, 127~129쪽 : 법무부, 앞의 책, 1987, 255쪽 재인용. 단 조선총독부 行刑課長과 서대문형무소장을 역임한 中橋政吉은 일제식민통치를 미화시키고 한국행형사를 철저히 식민사관의 입장에서 왜곡시켰음을 밝혀둔다.

41) 朝鮮治刑協會, 『朝鮮刑務所寫眞帖』, 1924, 31쪽.

아니라 행형의 근대적 개혁이 시작된 이후 최초로 설치된 감옥시설이다. 京城 감옥은 산하에 인천분감·춘천분감을 두었다.

2) 監獄分監의 設置

1908년 11월 20일 法部令 제19호로 ‘감옥분감 설치령’⁴²⁾을 제정함으로써 京城 감옥 인천분감·춘천분감, 공주감옥 청주분감, 함흥감옥 鏡城分監·원산분감, 평양감옥 의주분감, 진주감옥 부산분감, 광주감옥 전주분감의 8개소의 분감이 설치되었다.

위 분감들의 업무개시 일자는 다음과 같다.

仁川分監	1909년 2월 16일 ⁴³⁾
益山·全州分監	1909년 2월 20일 ⁴⁴⁾
義州分監	1909년 2월 24일 ⁴⁵⁾
春川分監	1909년 3월 1일 ⁴⁶⁾
元山·鏡城分監	1909년 3월 3일 ⁴⁷⁾
淸州分監	1909년 3월 10일 ⁴⁸⁾

42) 법부령 제19호, 감옥분감설치, 관보 융희 2년 11월 23일.

43) 法部告示 第8號, 京城監獄仁川分監의 事務를 개시하는 件. 官報 隆熙 3年 2月 18日.

44) 法部告示 第10號, 晉州監獄 益山分監, 光州監獄 全州分監의 事務를 개시하는 件. 官報 隆熙 3年 2月 18日.

45) 法部告示 第12號, 平壤監獄 義州分監의 事務를 개시하는 件. 官報 隆熙 3年 2月 23日.

46) 法部告示 第14號, 京城監獄 春川分監의 事務를 개시하는 件. 官報 隆熙 3年 2月 24日.

47) 法部告示 第15號, 咸興監獄 元山分監, 鏡城分監의 事務를 개시하는 件. 官報 隆熙 3年 3月 3日.

48) 法部告示 第17號, 公州監獄 淸州分監, 淸州分監의 事務를 개시하는 件. 官報 隆熙

분감설치에 따른 감옥관제 중 看守長 54명이던 것을 1909년 2월 18일 칙령 제15호로 간수장 70명으로 증원하였다.⁴⁹⁾

이 중 京城감옥 인천분감은 1909년 2월 16일 仁川理事廳⁵⁰⁾ 건물을 인계받아 설치하였다. 인천분감은 1923년 3월 폐지되고 이 분감건물은 仁川救護院으로 사용되었다.

京城감옥 춘천분감은 1909년 3월 1일 춘천관아의 감옥시설과 순찰교습소 건물 일부를 인계 받아 설치하였다. 순찰교습소 건물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감방은 온돌방이 3개였는데 수감자가 증가하여 수용이 어렵게 되자 같은 해 9월 春川邑 衛洞里의 재판소 부지 일부에 옥사를 신축하였다.⁵¹⁾

3) 監獄의 收容實態

융희시대에는 이미 일제 통감부에서 국정을 좌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사무 역시 통감부의 장악 아래 있었고, 이 시기 감옥의 수용자는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는 義兵과 愛國志士들이 대부분이었다.

3年 3月 6日.

49) 칙령 제15호, 감옥관제 개정, 법규속편 상, 109쪽.

50) 理事廳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일본은 駐韓日本公使館을 철폐하고 각지에 있던 領事館을 理事廳으로 개편(통감부 및 理事廳官制, 1905年 12月 20日)하였다. 한국의 재판권이 일본인에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청에는 일본인의 재판기관과 감옥이 독자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1909年 己酉覺書를 맺어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박탈한 후 이사청 재판 및 감옥은 폐지하고 통감부의 사법업무에 귀속시켰다.

51) 朝鮮總督府 法務局行刑課, 『朝鮮の行刑制度』, 1937, 3쪽 : 朝鮮治刑協會, 앞의 사진첩, 1924, 33~35쪽 참조.

본래 조선의 감옥은 刑을 집행하기까지 미결수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조선 왕조는 인정을 표방하고 있었던 관계로 감옥은 설치하되 비어있게 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감옥의 규모는 클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조선의 대표적인 감옥시설인 전옥서는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감옥시설은 그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수준이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한국의 국권을 잠식해 오던 일제는 융희시대에 더욱 노골적으로 합병정책을 추진하면서 군사력을 배경으로 전국의 치안조직을 먼저 장악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당시의 수용실태가 매우 혼잡하고 처우 또한 가혹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이 시기 행형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당시의 몇 가지 문헌을 통해 일부분만 살펴보고자 한다.

통감부시대부터 감옥관리로 종사한 나카하시(中橋政吉)는 당시 열악했던 감옥의 수용실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隆熙 2년(1908) 4월 新 監獄官制에 의해 전국에 8개소의 감옥을 설치했을 때 제대로 감옥시설을 갖춘 곳은 京城감옥(이전의 典獄署) 뿐이고 그 외의 감옥은 불완전한 온돌 감방이 2~3개 있었을 뿐이다...중략. 그때의 8개 감옥의 감방면적을 집계하면 298평 3합이었다.⁵²⁾

1908년 10월 31일 현재의 재감인원을 보면 <표 II-1>⁵³⁾과 같다.

52) 中橋政吉, 앞의 책, 1937, 125~126쪽.

53) 法務部, 앞의 책, 1987, 280쪽.

<표 II-1> 在監人員表

구분 감옥별	계	기 결	미 결
京城감옥	835	514	321
공주감옥	246	172	74
함흥감옥	80	41	39
평양감옥	178	132	46
해주감옥	133	97	36
대구감옥	252	161	91
진주감옥	132	97	35
광주감옥	163	60	103
합 계	2,019	1,274	745

계속해서 당시의 수용 실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용회 2년 말에 수용인원은 이미 2,000명을 넘고 있었기 때문에 수용밀도는 평당 7명을 넘었고 옥사는 가득 찼으나 계속 수용인원이 증가하여 평당 십수 명에 이르렀다. 재감자는 누워서 잘 수가 없어서 ½씩 또는 ⅓씩 교대로 누워서 자게 하였다.

대구감옥의 감방은 3개 방에 15평이었는데 수감자가 150명이나 되었고 공주감옥은 방내에 변기를 넣을 공간이 없어 감방 앞에 항아리를 놓아두고 호스를 방으로 연결하여 용변을 보기까지 하였다. ...중략... 국권피탈 3개월 후

인 1910년 12월 31일 감방의 총면적은 1,470평 4홉에 수감인원은 7,021명으로
서 수용밀도는 평당 4.7명 이었다.⁵⁴⁾

이밖에도 함흥감옥에서는 감방 내에 上·下段의 선반을 설치하고 마치 2층
처럼 만들었는데 천장이 낮은 온돌방을 2단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가로로 누
워있을 수는 있었으나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한다.⁵⁵⁾

포도청 감옥의 위치는 左포도청이 漢城中部 貞善坊(現 종로3가 단성사 자
리), 右포도청이 漢城西部 瑞麟坊(現 종로1가 89번지) 이었다.⁵⁶⁾

한편 典獄署 내의 神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전옥서 구내의 한 모퉁이에 작은 神祀가 있었고 신사의 벽에는 제신의 화
상이 걸려 있고 그 앞에 제단이 설치되어 있다. 제단에는 촛대, 밥그릇, 그
외 여러 가지 제구가 있었는데 畫像과 제구는 손때가 묻어 있고 그슬려 있으
며 고색이 완연하여 오래전부터 제사가 행하여 졌던 것을 알 수 있었다. ...
중략... 畫像 중의 남녀 인물은 고구려 始祖인 東明王과 王妃의 像이라는 설
이 있지만 어떻게 典獄署의 祭神으로서 모셔지게 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신사는 典獄署에만 설치된 것이 아니라 모든 官衙의 감옥에
서 행하여 졌다고 한다. 그러나 官衙마다 祭神이 달라 諸葛武侯, 文天祥, 高
麗 恭愍王 등의 제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전옥서의 神祀는 1923년(대
정12년) 종로감옥을 철거할 때 함께 없어졌지만 畫像과 祭具類는 서대문형무
소에 보관되어 있다.⁵⁷⁾

54) 中橋政吉, 앞의 책, 1937, 172~173쪽.

55) 김삼웅, 앞의 책, 나남출판, 2000, 35쪽.

56) 內務部 治安局, 『한국경찰사』, 1972, 136쪽.

이러한 감옥의 풍습은 한국 고유의 무속신앙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여 지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사실은 알 수 없고 현재 전옥서 신사의 사진만이 행형 관련 문헌⁵⁸⁾에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옥내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朝鮮刑務所寫眞帖』에는 ‘全州監獄 異動者の首魁’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地方暴徒가 속속 入監함으로써 그들의 기세가 높아 囚情은 날마다 평온치 못하고 험악하게 되어 명치 43년 2월 98명의 죄수가 기와와 돌을 던지면서 대거 폭동을 일으켜 간수 6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나 모두 진압되어 한 사람도 도주하지 못하였다. 부상한 관리들은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공평 무사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 후 囚情이 변하고 정숙하게 되었다.⁵⁹⁾

위에서 말하는 ‘지방폭도’는 일제침략에 맞서 싸우다 체포된 호남 의병장들을 말하는데, 1986년 3월 2일자 신문에 이 사진 속의 의병장 이름이 모두 밝혀진 바 있다.⁶⁰⁾ 위 사실은 일제침략에 항거하여 감옥 내에서까지 처절한 투쟁을 전개했던 의병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자료이다.

57) 中橋政吉, 『朝鮮舊時の刑政』, 1937, 352~360쪽.

58) 朝鮮總督府 法務局行刑課編, 『朝鮮の行刑制度』, 1939.

59) 朝鮮治刑協會, 앞의 사진첩, 1924, 123쪽.

60) 『조선일보』 1986년 3월 2일자 참조.

Ⅲ. 日帝强占期の 行刑

1. 行刑機關

1) 總督府 機構

가. 中央行政機構

1910년 8월 29일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같은 해 10월 1일 조선총독부관제, 지방관제 및 중추원관제를 비롯하여 식민통치에 필요한 각종 기관의 직제를 제정·공포하였다.

總督府官制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선총독은 천황에 直隸한 특별한 지위로서 한국에 있어서 全權을 위임받은 통치자였다. 총독은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되며 한국에 있어서 행정·입법·사법의 권한은 물론 육·해군을 통솔하여 朝鮮防備의 일을 관장하였다.

총독부의 중앙조직은 총독을 보필하는 總督官房와 총무부, 내무부, 도지부, 농상공부, 사법부의 1房 5部 9局으로 구성되었다. 총독부에는 위의 중앙기구 이외에도 소속된 여러 관서가 있었다. 즉 감옥, 재판소, 경무총감부 등의 치안 기관과 토지조사국, 세관, 전매청, 통신국, 광업소, 營林所 등의 경제수탈기관, 중추원, 조사국 등의 자문기관이 그것이다.

1915년 일제는 총독부 기구의 개혁을 단행했는데, 各 部 아래 局을 폐지하고 부의 장관이 직접 課의 사무를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무단통치에서 소위 문화통치로 정책을 전환하였고 이에 총독부관제는 다시 변화되었다. 즉 육·해군 대장으로 제한했던 총독의 임명범위를 확대하였고, 총독의 육·해군 통솔권을 “안녕질서를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선에 있는 육·해군 사령관에게 병력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또한 총독부 중앙조직을 격하시켜 部를 局으로 개편하고 내무부에 속한 學務局을 독립시켰다. 그리고 독립기관이던 경무총감부를 직속 경무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하였다. 문화통치를 표방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탄압보다 동화로서 민족말살을 획책하는 식민정책의 기만적인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920년 奏任官⁶¹⁾ 대우 이상 153명 중 한국인 관리 3명, 1938년 주임관 이상 255명 중 한국인 관리 12명, 1941년 朝鮮年鑑에 수록된 고급관리 1,000명 중 한국인 관리는 12명에 불과하였다.⁶²⁾

감옥관리의 경우에는 더욱 차별이 심하여 한국인으로서 주임관은 일제 통치 기간 중 한명도 없었으며 통역생을 겸한 간수장이 각 소에 1명씩 있을 뿐이었다.

나. 司法機關

총독부의 사법기관은 일반 행정관서와 같이 중앙행정부서의 일부로 총독에게 직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법기구의 구성, 법관의 인사 등이 총독의 재량에 맡겨져 법관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즉, 사법기관은 총독정치의 보조기관에 불과했고 한국의 사법권 및 감옥사무는 1909년 7월 기유각서로 일제에 박탈되어 통감부 사법청에서 관장하였다. 그리고 3審4級制(高等法院, 控訴院, 地方裁判所, 區裁判所)를 구성하고 검사관을 부설하였다. 여기에 일본인 판·검사와 서기가 배치되어 한국에 있어서의 민사·형사재판 및 非訟事件까지 장악하였다.

61) 갑오개혁 이후 官階의 하나로서 대신이 임금에게 추천하여 임명하였다.

62) 梁榮煥, 「3·1운동이전의 사회와 경제 : 일제의 침략기구」, 『한국사』 21, 국사편찬위원회, 1984, 26~30쪽.

1910년 8월 29일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총독부관제 실시와 함께 통감부 사법청을 총독부 사법부로 개편하여 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를 총괄하였다. 재판소는 고등법원 1개소(京城) 아래 공소원 3개소(京城·평양·대구), 지방재판소 8개소(京城·공주·함흥·평양·해주·대구·진주·광주), 지방 재판소 지부 12개소, 구 재판소 68개소 등 92개소가 설치되었다.⁶³⁾

이 같은 3심4급의 사법조직은 1912년에 고등법원, 복심법원, 지방법원의 3심3급제로 변경되었다.

일제는 한민족을 합리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판제도를 악용하였기 때문에 일본인 법관이 일본법 내지 총독부 법령에 의하여 한민족에게 일방적으로 중형을 내렸다.

법관은 1909년에 이미 일본인에게 독점되어 일본인 판사 192명에 비해 한국인 판사는 88명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인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져 1912년에는 판사 199명 중 38명과 검사 57명 중 3명만이 한국인이었다.⁶⁴⁾ 이는 각각 19.1%와 5.3%에 지나지 않는 수치이다.

또한 같은 법관이라도 민족차별이 심하여 한국인 판사는 일본인이 관련된 재판을 담당할 수 없었으며 재판장이 될 수도 없었다. 차별폐지를 선언한 1920년 이후에도 복심법원을 비롯한 합의부 재판부 구성에 있어 한국인이 재판장이 된 일은 없었으며, 일본인 재판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사실상 한국인 판사의 재판권은 박탈되어 있었다.

사법제도 및 재판소는 한민족의 탄압과 수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적용한 刑律은 중형규정을 남용하였다. 또한 사소한 사건에 다수의 관련자를 만들어 재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문하면서 고통을 주었다.

항일 애국지사들은 장기간에 걸친 심문 및 재판과정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

63) 朝鮮總督府編, 『朝鮮總督府 施政年報』, 1910, 96쪽.

64) 法務部, 앞의 책, 1987, 306쪽.

았으며, 그간의 옥고와 고문으로 체력과 의지가 무기력해져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이 허다하였다. 이러한 탄압을 받은 항일 애국지사들은 해가 갈수록 늘어났다.

1910년 형사입건 건수는 7,922건이었는데 계속 급증하여 1939년에는 45,576건이 되었다. 또 산림령 위반이 1911년 112건에서 1939년에는 5,245건으로, 제세법 위반이 44건에서 11,045건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한민족을 노예화시키기 위한 탄압이었고 무기력화 시키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도 굴하지 않자 일제는 한민족을 탄압하기 위하여 1936년 전국 7개소에 보호관찰소를 설치하였다.

일본 식민통치에 협조하지 않는 사상을 가진 것 같다는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제한 없이 사상을 바꿀 때까지 구금하는 것이다. 1940년까지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사람은 4,551명에 달했다.⁶⁵⁾

따라서 한민족의 검거는 감옥의 계속적인 증설에도 불구하고 절대 면적이 부족했다. 일본은 그 대책으로 가석방, 집행유예, 恩赦 등을 驅使했으나 1909년 감옥사무가 일본에 넘어갈 때 5,300여명이던 수감자가 1918년에는 12,249명, 1933년에는 18,957명, 1940년에는 18,182명이었다.

감옥의 위생, 급식상태는 마치 짐승우리와 같았고 평당 7.9명이 수용되고 있었으며⁶⁶⁾ 굶주림과 질병으로 수감 중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2) 行刑組織의 變遷過程

가. 中央機構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일제는 대한제국의 고문이나 보좌관, 참사관

65) 朝鮮總督府編, 『朝鮮總督府 施政年報』, 1939·1940 참조.

66) 朝鮮總督府 法務局行刑課編, 『朝鮮の行刑制度』, 1938, 18~24쪽, 행형통계

을 통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본격적인 합병기준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1909년 7월 12일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인 己酉覺書⁶⁷⁾에 의해 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를 박탈하였다.⁶⁸⁾

기유각서로 감옥은 이미 국권피탈 1년 전에 일제의 치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감옥사무를 장악한 일제는 동년 10월 31일을 기해 한국의 감옥규칙을 비롯한 감옥관계의 법령을 모두 폐지하였다. 그리고 일본 내각 告示 제34호 ‘司法監獄事務에 관한 일본국 勅令·統監府令·統監府告示를 게시하는 件’에 의하여 동년 11월 1일부터 통감부령에 의해 감옥사무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감옥의 기본법인 朝鮮監獄令을 공포한 것은 1912년 3월이며 이 기간 동안은 그나마 監獄法도 없이 감옥사무를 처리하였던 것이다.

1912년 3월 制令 제14호로 공포한 朝鮮監獄令⁶⁹⁾은 단순히 일본의 監獄法⁷⁰⁾

67)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 정부와 한국정부는 한국의 사법사무와 감옥사무를 개선하여 한국 臣民 및 在韓國 外國臣民과 人民의 생명, 재산의 보호를 확실히 하고 한국재정의 기초를 공고히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條款을 약정한다.

첫째,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한국정부는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국 정부에게 위탁할 것.

둘째, 일본국 정부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일본인과 한국인을 재한국 일본재판소 및 감옥의 관리에 임용할 것.

셋째, 재한국 일본재판소는 협약 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는 한국 신민에 대하여는 한국 법규를 적용할 것.

넷째, 한국 지방관청 및 공사는 각 그 직무에 따라 사법 및 감옥의 사무에 대해 재한국 일본 해당 관청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또 그 보조를 할 것.

다섯째, 일본국 정부는 한국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할 것.

68) 『純宗實錄』 3, 純宗 3年 7月 12日.

69) 제1조 監獄에 관한 사항은 본령, 기타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監獄法에 의한다.

제2조 감옥법 중 主務大臣의 직무는 朝鮮總督이 행한다.

제3조 拘置監에는 笞刑의 집행을 받는 자를 拘留할 수 있다.

제4조 새로 入監하는 자가 傳染病患者인 때에는 입감을 허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在監者에게는 糧食의 自辯을 허할 수 있다.

을 조선에 적용하되 특별한 법령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1조) 여러 가지 차별을 둘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은데 그 특징이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시행하지 않는笞刑을 실시하는 등 감옥운영 전반에 걸쳐 일본과 달리하고 행형에서조차 민족차별을 강화하였다.

조선총독부 감옥과장이던 柿原은 일제초기의 한국감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明治 40년(1907년) 倉富 법무장관이 한국의 司法 및 監獄事務의 改善計劃을 추진하여 동년 말 監獄官制를 발표해서 종래 內務系統에 속했던 監獄이 法務系統에 귀속하게 되어 金澤의 典獄에서 法務書記官에 聘用된 神野忠武가 주로 감옥사무 창설의 일에 당했으며, 中橋政吉이 法務主事로서 보좌했던 것이다.

舊官制에 기해서 우선 地方裁判所 開設地와 京城·公州·함흥·평양·해주·大邱·진주·광주의 8개소에 本監을 개설하기로 정하고 재래의 京城의 獄舍, 地方警察署 부속의 獄舍를 인계받아 修理해서 1908년 7월까지 典獄 이하의 직원을 배치하고 다음 달 초부터 개청한 것이다.

監獄官制가 발표되었으나 行刑의 기준이 되는 監獄規則등은 정하지 않았다. 한국에는 이미 10년 전에 제정한 당시로서는 극히 進歩된 내용의 감옥규칙이 있었으나 獄舍 기타 設備의 실상으로 보아 실행 불가능하여 空文에 불과하였다. 그러한 실정에 鑑하여 獄務改善의 발걸음이 어느 정도에 달할 때

附 則

본령은 1912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 70) 부록 <자료 5-일본의 監獄法> 참조. 1908년 3월 법률 제28호로 제정. 일본의 감옥법은 감옥의 종류에서부터 입감·감옥 관리·위생 및 치료·징벌·교육·가출옥·석방·사형집행 등에 이르기까지 감옥 운영에 관한 사항이 75개 條文으로 이루어져 있다.

까지는 행형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典獄 이하 직원의 경험과 수완에 일임해서 실제에 卽應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했다.⁷¹⁾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에서 행사하게 되자 한국의 법부는 폐지되고 대신 통감부에 司法廳을 설치하였다. 통감부 사법청에는 장관을 두고 장관은 통감의 지휘·감독을 받아 한국내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 장관 밑에 勅任 혹은 奏任인 참사관 3명, 주임인 서기관 2명, 주임인 감옥사무관 1명, 判任인 통역생 38명을 두어 장관의 명을 받아 각 그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1909년 10월 31일을 기하여 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여러 법령은 폐지하고 동년 11월 1일부터 일본 통감부의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종래의 감옥관계(1907년 12월 13일, 칙령 제52호), 감옥규칙(1894년 11월 25일), 감옥세칙(1898년 1월 19일, 내부령 제11호) 등도 폐지되었다. 따라서 갑오경장 이래 꾸준히 추진되어 온 대한제국에 의한 행형의 근대화는 종지부를 찍고 일제에 의한 행형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통감부 사법청의 기구에 관하여는 1909년 10월 1일 통감부 훈령 제24호 「統監府司法廳分課規程」을 제정하여 사법청에 직원과·서무과·민사과·형사과의 4개과를 두었다. 감옥의 설치나 폐지는 職員課의 소관이었으나 감옥의 운영, 감독은 刑事課에서 관장하였다.

1910년 8월 29일 강점 후에도 통감부의 조직이 잠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동년 9월 29일부터 조선총독부관제를 제정·시행함으로써 통감부 사법청은 총독부 사법부로 개편하여 한국에서의 사법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사법부는 서무과·민사과·형사과가 있었는데 감옥과 재판소의 설치 및 폐지는 서무과

71) 「法曹協會 雜誌」 제19권 10·11호, 昭和 15년(1940) 11월 1일 발행, 1,260쪽 참조.

소관이었고 감옥업무 및 출옥인 보호는 형사과 소관이었다.⁷²⁾

1912년 3월 30일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총독부훈령 제27호) 하였는데 사법부 서무과를 감리과로 개칭하고 민사과·형사과·감리과로 개편하였다.

1915년 5월 1일 다시 관제 및 사무분장규정을 개정(총독부 훈령 제26호) 하여 민사, 형사, 감리의 3개과에서 법무과·감옥과의 2개과로 축소, 개편하였다. 법무과는 재판소의 설치 및 폐지, 민사·형사 및 비송사건의 재판사무에 관한 사항,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했고 감옥과는 감옥에 관한 사항, 가출옥 및 출옥인 보호에 관한 사항, 범죄인의 식별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관제의 개편이 있었다. 동년 8월 20일 총독부훈령 제30호로 총독부를 部를 局으로 변경하여 사법부는 법무국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1920년 8월 14일 총독부 훈령 제31호로 법무과를 민사과와 형사과로 분리하고 監獄課는 그대로 두었다.

1923년 5월 5일 총독부령 제72호로 감옥의 명칭을 형무소로 바꾸고, 동년 12월 25일 총독부훈령 제34호로 민사과와 형사과는 다시 법무과로 합치고 감옥과는 行刑課로 개칭하였다.

1939년 12월 27일 총독부 훈령 제80호로 법무과는 민사과와 형사과로 분리되고 행형과의 업무분장에 刑務官練習所에 관한 사항과 豫防拘禁所에 관한 사항 및 刑務職員共濟組合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1943년 4월 행형과를 행형과와 보호과로 분리함으로써 법무국은 형사과·민사과·행형과·보호과의 4개과로 개편되어 일제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이 중에서 행형과는 형무소, 형무소연습소, 가출옥, 범죄인 식별, 형무직원 공제조합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고 보호과는 보호관찰소, 예방구금소, 소년심판소, 교정원, 사법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다.⁷³⁾

72) 法務部, 앞의 책, 1987, 308~309쪽.

73) 法務部, 앞의 책, 1987, 310쪽.

나. 刑務機關

가) 刑務所 變遷過程

1909년 한국의 감옥사무를 장악한 일제 통감부는 동년 10월 21일 統監府令 제31호로 전국의 감옥을 本監 9개소와 分監 9개소로 정하였는데, 그것은 종전의 감옥시설(본감 8개소, 분감 8개소)을 약간 변경한 것이다. 즉 영등포의 理事廳監獄을 영등포감옥(본감)으로 개편하고 義州分監 대신 신의주의 이사청감옥을 신의주분감으로 개편하였다. 이와 함께 의주분감은 신의주분감의 출장소로 변경하고 청진분감을 신설하여 종전의 鏡城分감은 청진분감 출장소로 변경하였으며 광주감옥 목포분감을 신설하였다.

일제는 한국을 강점한 후 1910년 10월 감옥을 다시 개편하여 영등포 감옥을 京城감옥 영등포 분감으로 변경하고 진남포·마산·군산에 새로 분감을 설치함으로써 전국의 감옥은 본감 8개소, 분감 13개소가 되었다.⁷⁴⁾

1912년 9월 3일 종전의 京城감옥을 서대문감옥으로 개칭하고 마포 공덕동에 京城감옥을 신설하여 형기 10년 이상의 長期囚를 수용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전국 감옥의 수감자는 초만원을 이루게 되어 이를 계기로 감옥시설을 크게 확장하게 되었다. 1919년 5월 대전감옥을 신설한데 이어 1920년 영등포·청진·신의주·목포·전주의 5개의 분감을 본감으로 승격 개편하고, 1921년 개성·강릉·금산포·서흥·김천·안동·제주의 7개소에 분감을 신설하였다.

1923년 3월 인천분감을 폐지하였으며 같은 해 5월 5일 총독부령 제72호로 감옥을 형무소로 분감을 지소로 그 명칭을 개칭하고, 개성분감을 개성소년형무소로 승격시킨데 이어 1924년 4월 김천지소를 김천소년형무소로 승격시켰

74) 朝鮮總督府令 第11號, 1910年 10月 1日.

다.

1935년에 소록도지소, 1936년에 인천소년형무소를 신설하여 전국에는 17개 형무소와 11개 지소가 운영되었다. 1939년에 청주지소는 공주형무소 관할에서 대전형무소 관할로 소속이 변경되고, 1941년 예방구금법의 제정에 따라 서대문형무소 내에 보호교도소를 부설하고 예방구금된 사상범을 수용하였으며 1943년 3월 대구형무소 소속의 안동지소를 김천소년형무소 소속으로 변경하고 동년 10월 서대문형무소 시설에 설치되었던 보호교도소를 청주지소로 이전하였다.⁷⁵⁾

이상의 일제강점기 형무소 변천과정을 표로 정리해 보면 <표 III-1>과 같다.

75) 法務部, 앞의 책, 1987, 311~311쪽.

<표 III-1> 日帝強占下 刑務所 變遷過程

年度別	公布法令	內 容
1909년 10월 21일	朝鮮 統監府令 제31호	- 本監9개소 (京城·永登浦·公州·咸興·平壤·海州·大邱·益山·光州) - 分監9개소 (仁川·春川·清州·元山·清津·新義州·晉州·全州·木浦)
1910년 10월 1일	朝鮮 統監府令 제11호	- 本監8개소 (京城·公州·咸興·平壤·海州·大邱·益山·光州) - 分監13개소 (永登浦監獄을 분감으로 변경, 鎭南浦·馬山·群山分監 新設) (永登浦·仁川·春川·清州·元山·清津·鎭南浦·新義州·馬山·晉州·木浦·全州·群山)
1912년 9월 3일	朝鮮 統監府令 제11호	- 京城監獄을 西大門監獄으로 개칭 (仁川·春川分監도 함께 西大門監獄소속으로 변경) - 京城監獄 신설(麻浦 孔德洞)
1913년 6월 2일		- 新義州分監 義州出張所·清津分監 鏡城出張所 폐지
1918년		- 平壤監獄 金山浦出張所 신설
1919년 5월 8일	朝鮮 統監府令 제86호	- 大田監獄 신설 (1919년말 현재 本監10, 分監13, 出張所5)
1920년 10월 27일	朝鮮 統監府令 제158호	- 永登浦·清津·新義州·木浦·全州分監을 本監으로 승격

1921년 3월 25일	朝鮮 統監府令 제41호	- 開城·江陵·金山浦·瑞興·金泉·安東·濟州分監 신설
1923년 3월 31일	朝鮮 統監府令 제62호	- 西大門監獄 仁川分監·鐘路·大平洞출장소·平壤監獄 대흥부출장소 폐지
1923년 5월 5일	朝鮮 統監府令 제72호	- 監獄을 刑務所로, 分監을 支所로 개칭하고 開城分監을 승격, 개성소년형무소로 개편
1924년 4월 15일	朝鮮 統監府令 제14호	- 金泉支所를 김천소년형무소로 개편
1924년 12월 5일	朝鮮 統監府令 제78호	- 永登浦刑務所, 江陵·濟州支所 폐지 (1924년 말 현재 本所 16개소, 支所 10개소)
1935년 7월 23일	朝鮮 統監府令 제92호	- 小鹿島支所 신설
1936년 7월 10일	朝鮮 統監府令 제52호	- 인천소년형무소 신설
1939년 3월 8일	朝鮮 統監府令 제26호	- 公州刑務所 淸州支所를 대전형무소 청주지소로 소속변경
1941년 7월 4일	朝鮮 統監府令 제53호	- 西大門刑務所 내에 豫防拘禁所를 부설하고 保護敎導所로 명칭을 정함
1943년 3월 2일		- 大邱刑務所 安東支所를 김천소년형무소 안동지소로, 海州刑務所 瑞興支所를 개성소년형무소 瑞興支所로 소속변경
1943년 10월		- 大田刑務所 淸州支所에 保護矯導所를 설치 (서대문형무소 부설 保護矯導所 이전)

나) 刑務所

형무소는 총독의 관리 하에 두고 그 설치나 폐지도 총독의 권한에 속하였고 형무소의 감독은 총독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의 공소원 검사장이 행하도록 하였다. 형무소에는 典獄·典獄補·看守長·看守 및 女監取締와 技手(기술직 공무원)·통역생 등을 두었다.⁷⁶⁾ 형무소의 기구로는 庶務係·計理係·用度係·戒護係·作業係·教務係 및 醫務係를 두었다가⁷⁷⁾ 1937년 형무소의 係를 課로 개편하였고, 서대문형무소에는 별도로 拘置課를 두었다.

각 과에는 과장, 계에는 주임을 두고 서무과·계호과·작업과·구치과의 과장 및 주임을 전옥보 또는 간수장으로 보하며 교무과장은 教誨師로, 의무과장은 保健技師 또는 保健技手로 보하고 각 과장과 주임은 兼職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형무소는 1910년 국권피탈 직후 본감 8개소(京城·공주·함흥·평양·해주·대구·부산·광주)와 분감 13개소(영등포·인천·춘천·청주·원산·청진·진남포·신의주·마산·진주·목포·전주·군산)를 설치하였다가 몇 차례의 신설·통폐합 등의 개편을 거쳐 일제말기에는 형무소 17개소, 형무소지소 11개소, 보호교도소를 운영하였다.

그 중 서대문형무소와 京城형무소와 그 지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京城형무소

京城형무소는 1912년 9월 3일 총독부령 제 11호에 의해 신설되었다. 국권피탈 무렵 전국 감옥의 수용인원이 급증하게 되자 조선총독부에서는 용산 청과동(지금의 선린상고 부지)에 감옥 부지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 마포 공덕리로 옮겨 다시 신축공사에 착수하였고 1912년에 완공하였다.⁷⁸⁾ 이 공

76) 監獄官制 勅令 제243호, 1909년 12월 10일.

77) 「監獄事務分掌 및 處務에 관한 규정」, 總務訓 제17호, 1917년 10월.

78) 朝鮮總督府 法務局 行刑課編, 앞의 책, 1937, 3쪽 : 中橋政吉, 앞의 책, 1937, 129쪽.

사는 42,694㎡(12,915평)의 부지위에 총 공사비 30만원이 들었다. 京城형무소의 신설과 동시에 종래의 京城형무소는 서대문형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용기준을 개정하였다.⁷⁹⁾ 즉 서대문형무소에는 서울의 미결수 및 10년 이하의 형을 받은 수용자를 수용하고 京城형무소에는 무기 및 10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장기수를 수용하였다. 1945년 8·15광복 후 京城형무소는 마포형무소로 개칭되었다.⁸⁰⁾

② 서대문형무소

京城감옥을 인수한 조선총독부는 1912년 9월 3일 마포 공덕리에 京城감옥을 신설함과 동시에 종래의 京城감옥을 서대문감옥으로 개칭하였다. 서대문감옥의 산하에는 종로출장소(舊 전옥서), 대평동 출장소 및 영등포·인천·춘천분감을 두었다.

그 뒤 개편을 거듭하여 1920년에 영등포 분감은 본감으로 승격·개편되었으며, 1923년 인천분감 및 종로출장소와 대평동 출장소를 폐지하였고, 1934년 구치감을 증설하였다.⁸¹⁾

또한 1941년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의 제정으로 항일 독립운동가를 수용하기 위해 서대문형무소에 예방구금소를 부설하고 이를 보호교도소라고 하였다. 1943년 10월 보호교도소는 대전형무소 청주지소로 이전되었다.⁸²⁾

京城감옥 춘천분감은 1912년 9월 3일 京城감옥이 서대문감옥으로 개편됨에 따라 서대문감옥 춘천분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1918년 춘천에 신축공

79) 朝鮮治刑協會, 앞의 사진첩, 1924, 7쪽.

80) 法務部, 앞의 책, 1987, 315~317쪽.

81) 朝鮮總督府 法務局 行刑課編, 앞의 책, 1937, 3쪽.

82) 남도영, 「西大門刑務所の 民族史的 意義」, 『韓民族의 獨立運動과 西大門刑務所』 (광복 55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서대문구청, 2000, 11쪽.

사를 시작하여 1923년 완공·이전하였다.

③ 영등포형무소

영등포형무소는 1908년 3월 통감부 이사청감옥으로 설치되어 1909년 10월 21일 통감부령 제31호에 의해 영등포감옥(본감)으로 개편되고, 1910년 10월 1일 총독부령 제11호에 의해 京城감옥 영등포분감으로 변경되었다.

영등포형무소에는 대규모의 연화공장이 있었는데, 이 공장은 본래 1908년 탁지부 건축소 공업부에 속해 있었다. 그 후 감옥의 설치와 더불어 이 공장은 감옥에서 운영하게 되었으며 생산실적은 연간 기와 100만개, 토관 7만개 정도였다.

1920년 총독부령 제 158호로 영등포 분감은 다시 영등포감옥(본감)으로 개편·운영되다가 1924년 12월 15일 총독부령 제78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④ 인천소년형무소

京城감옥 인천감옥은 1912년 京城감옥이 서대문감옥으로 개칭되자 서대문감옥 인천분감으로 되었다가 1923년 3월 31일 총독부령 제62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 후 1936년 7월 10일 총독부령 제52호로 인천소년형무소가 설치되어 인천시 학익동에 건물을 신축·개소하였다.

⑤ 개성소년형무소

1921년 3월 25일 총독부령 제41호로 京城감옥 개성분감을 설치하고 소년수형자를 수용하였다. 그 후 1923년 5월 5일 총독부령 제72호에 의해 본감으로 승격시키면서 개성소년형무소로 정하고 형기 1년 이상 연령 18세 미만의 남자수형자를 집단 구금 수용하였다.

다) 理事廳監獄

구한말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에 대해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아 일본인의 재판 및 행형은 일본 영사관에서 독자적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장악하게 되자 일제는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던 일본영사관을 통감부 이사청으로 변경하고 종래의 영사가 행하던 직무를 이사청의 이사관이 행하게 하였다.

1906년 통감부는 京城·부산·평양·마산·군산·목포·인천·진남포·원산·성진·청진·대구·신의주의 13개소에 이사청을 설치하였는데 각 이사청에는 감옥시설이 부설되어 있었다.

1908년 3월 일본인 기결수를 집단 구금 수용한다는 구실로 대규모의 이사청 감옥을 영등포에 신설하여 서울에 京城 이사청감옥과 함께 2개의 이사청감옥이 있었다. 이사청 감옥은 한국에 거류하는 일본인 범법자를 수용하는 시설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병합의 탄압수단으로써 사용하였다.

각 이사청마다 설치된 감옥의 규모로 미루어 보거나 또 한국의 감옥사무를 장악한 직후 이사청감옥을 전국 감옥의 본감으로 즉시 대체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영등포·평양·부산·신의주·청진·인천·목포형무소 등은 본래 이사청감옥이었다.⁸³⁾

라) 保護敎導所

일제는 1941년 2월 12일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칙령 제8호)’을 제정·공포한데 이어 동년 7월 4일에는 이른바 정치사상범(독립운동가 등)의 예방구금을 위한 예방구금소를 서대문형무소 내에 설치하고 그 명칭을 ‘보호교도소’라 하였다.⁸⁴⁾

83) 中橋政吉, 앞의 책, 1937, 107~109쪽.

보호교도소에는 소장(현직 검사가 겸직) 밑에 서무과 및 補導課를 두고 교도관, 교도관보, 서기, 통역생, 교도부장, 교도 등 59명의 직원을 두었으며, 그 중 교도부장 및 교도의 일부는 간수부장 및 간수의 職에 있는 자를 겸임하도록 하였다.⁸⁵⁾ 이 보호교도소는 1943년 10월 1일 대전형무소 청주지소의 시설로 이전, 운영되다가 8·15 광복과 더불어 자연히 소멸되었다.

보호교도소는 일제가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최후의 발악 했던 탄압의 현장으로서 막연히 그들의 악법인 치안유지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운동가를 무조건 예방구금에 처하여 수용하였다.

1日 수용인원은 관계 자료가 확실하지 않아 상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시 朝鮮人 看守로 在職하였던 前職矯導官 李龍基의 증언에 따르면 1일 수용인원이 무려 200여명에 달했다고 한다.⁸⁶⁾

2. 刑務官

1) 監獄官制

朝鮮總督府의 監獄官制⁸⁷⁾는 1909년 10월 勅令 제243호로 제정된 감옥관제

84) 총독부령 제53호.

85) 治刑協會, 「朝鮮刑務所 職員錄」, 1943.

86) 前서울拘置所長 李龍基(당시 淸州刑務所 勤務) 證言 : 法務部, 앞의 책, 1987, 346쪽 재인용.

87) 1909년 10월 勅令 제243호로 제정하였고 1910년 9월 勅令 제306호로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朝鮮總督府 監獄은 朝鮮總督의 管理에 속한다. 감옥의 설치 및 폐지는 조선총독이 이것을 정한다.

제2조 覆審法院檢事長은 조선총독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감옥을 감독한다.

제3조 監獄에는 다음 직원을 둔다.

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감옥관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총독이 감옥을 관리하며 그 설치나 폐지도 총독의 권한에 속하고 控訴院檢事長(후에 覆審法院檢事長)은 총독의 명을 받아 관할 내의 감옥을 감독하였다.

감옥직원은 전국에 典獄 9명, 看守長 75명, 通譯生 9명, 그밖에 監獄醫, 教誨師, 教師, 藥劑師, 看守, 女監取締 등을 두고 감옥은 본감과 분감으로 설치, 本監의 長은 典獄으로, 分監長은 看守長으로 보하게 하였다.

職員數는 그 후 감옥의 증가에 따라 몇 차례 증원되었다. 그리고 동년 10월 1일 총독부령 제13호로 統監府監獄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같은 대우로 총독부

典獄 專任 14人 奏任

典獄補 專任 6人 奏任

看守長 · 技手 · 通譯生 專任 142인 判任

제4조 전옥은 조선총독 및 覆審法院 檢事長의 지휘를 받아 감옥사무를 掌理하고 도는 分監長이 된다.

제5조 看守長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監獄事務에 종사하고 看守 및 女監取締를 지휘·감독한다.

제5조의 2, 技手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技術에 종사한다.

제6조 通譯生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翻譯 및 通譯에 종사한다.

제7조 감옥에는 제3조에 揭記한 직원 외에 監獄醫, 教誨師, 教師, 藥劑師, 看守 및 女監取締를 두는 그 외 定員, 職務 및 懲戒에 관한 규정은 朝鮮總督이 정한다.

監獄醫 및 教誨師는 奏任官 도는 判任官의 대우로 하고 교사, 약제사, 간수 및 여감취제는 判任官의 대우로 한다.

제8조 朝鮮總督은 필요에 따라 分監을 설치할 수 있다.

分監長은 典獄補 또는 看守長으로 充用할 수 있다.

分監長은 典獄의 지휘·감독을 받아 分監의 事務를 掌理하고 부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9조 典獄이 事故가 있을 때는 典獄補 또는 上席의 看守長 또는 看守가 그 직무를 代理하고, 分監長이 사고가 있을 때는 上席의 看守長 또는 看守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附 則

이 습은 19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1910년 9월 칙령 제306호)

이 습은 19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本令 시행에 있어서 統監府 典獄, 看守長 및 通譯生직에 있는 자는 별도로 辭令을 하지 않고 朝鮮總督府 典獄, 看守長 및 通譯生에 각 同 官等俸給으로써 임용한 것으로 한다.

감옥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總督府監獄은 1913년 5월 14일 勅令 제85호로 감옥내의 諸般技術業務에 종사하는 技手制를 신설하였고, 1920년 10월 23일 勅令 제409호로 典獄補를 신설하여 전옥보는 전옥을 보좌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옥의 長이 될 수 있게 하였다.

1922년 4월 18일 총독부 훈령 제17호에 의해 看守의 上位인 看守部長과 女監取締의 상위인 女監取締部長制度를 신설하였다.

1923년 5월 4일 勅令 제201호로 監獄醫를 奏任官 대우인 保健技師와 判任官 대우인 保健技手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 1924년 5월 8일 勅令 제109호로 감옥에서 작업을 지도·관리하는 作業技手를 신설하였으며, 1929년 12월 26일 칙령 제373호로 女監取締를 간수에 통합하였다.

감옥관계의 정비는 1920년대 말까지 대체로 완료되었다. 1930년대 들어서서 1930년 1월 7일 총독부 훈령 제1호로 女監取締部長이 看守部長에 통합되었고, 1935년 4월 30일 勅令 제26호로 作業技手보다 한 계급 높은 奏任官 待遇의 作業技師가 신설되었다. 또 1940년 5월 20일 총독부훈령 제22호로 간수부장의 자격, 특별임용, 시험 등의 규정을 정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2) 刑務官 任用

총독부감옥이 설치되면서 1910년 9월 30일 勅令 제400호로 特別任用令을 제정하여 典獄은 統監府典獄이나 監獄事務官 재직자 중에서 임용하게 하였고, 10월1일 총독부령 제13호로 종전에 統監府監獄에 근무하던 감옥관리는 동등한 대우의 봉급으로 총독부 감옥의 직원에 임명시키는 過渡的 조치를 취하였다. 1911년 4월 24일 勅令 제24호로 5년 이상 감옥사무에 종사하고 判任官 3給俸 이상의 자는 당분간 文官 고등시험위원의 전형으로 典獄에 임용할 수 있게 하였다.

看守長은 통감부 간수장에 재직 한 자와 3년 이상 간수 경험자로서 精勤證書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는 증서)를 소지한 재직자에게 승진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實務考査와 學術試驗을 치른 후 文官普通試驗委員의 전형을 거쳐 임용케 하였다. 1920년 11월 6일 총독부령 제169호로 「看守長 特別任用學術試驗 및 實務考査規程」을 제정하였으며, 이 규정은 그 후 3차에 걸쳐 약간의 개정이 있었으나 일제 말까지 시행되었다.

한편 1911년 5월 6일 총독부령 제58호로 간수의 채용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은 신체검사, 학술시험 시험면제자에 관한 사항, 수험자격등에 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었고 일제통치기간 수차의 개정을 거쳐 일제 말까지 시행되었다.

3) 刑務官 定員

형무관의 정원은 일제강점기 감옥관제의 변천에 따라 수차례 변화였다. 1909년 10월에 제정된 감옥관제의 형무관 정원은 典獄 9명, 看守長 75명, 通譯生 9명 등이었으나 감옥의 확장에 따라 인원이 증가하여 1923년에는 典獄 15명, 典獄補 8명, 看守長(技手, 通譯生 포함) 143명, 看守 1,911명, 女監取締 65명, 典獄醫 27명, 教誨師 20명, 教師 7명이었다.⁸⁸⁾

그리고 1941년에는 典獄 14명, 典獄補 6명, 看守長과 通譯生 및 技手 142명, 看守 2,291명(여 75명 포함), 保健技師 33명, 保健技手 27명, 教師 13명, 藥劑師 12명, 作業技師·技手 35명이었다.⁸⁹⁾

일제강점기의 형무 관리를 보면 관리직에 해당하는 전옥은 모두 일본인이고 중간관리직인 간수장 역시 대부분 일본인이지만 통역생을 겸한 간수장을 각

88)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朝鮮司法提要』, 岩松堂 京城店, 1924, 25쪽.

89) 朝鮮總督府 法務局, 『刑務提要』, 1943, 31쪽.

소에 1명씩 한국인으로 임용하였다.⁹⁰⁾

하위직의 경우에는 일제초기 일본인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1930년부터 한국인의 채용을 늘려 일제말기에는 약 절반씩 차지하였다.

참고로 연도별 간수채용인원과 각 형무소별 직원을 보면 <표 Ⅲ-2>·<표 Ⅲ-3>과 같다.

<표 Ⅲ-2> 看守採用人員表 (1919년~1929년)

區分 年度別	韓國人	日本人	區分 年度別	韓國人	日本人
1919		71	1930	64	117
1920		366	1931	42	116
1921		348	1932	148	138
1922		254	1933	93	110
1923		181	1934	140	176
1924		142	1935	99	120
1925		100	1936	107	125
1926		51	1937	176	128
1927		99	1938	181	101
1928		150			
1929		112	계	987	3,062

(資料：朝鮮總督府 法務局 行刑課, 『朝鮮の行刑制度』, 1938, 29쪽)

90) 中橋政吉, 앞의 책, 371쪽.

<표 III-3> 刑務所別 刑務職員人員表(1937年末 現在)

所 別	區分	計	典獄	典獄補	看守長	看守		其他
						男	女	
경 성 형 무 소		211(91)	1		7	146(72)		57(19)
서 대 문 형 무 소		343(145)	1	1	13(1)	253(112)	8(3)	67(29)
	춘천지소	55(28)			3(1)	41(20)	2(1)	9(6)
공 주 형 무 소		95(48)	1		4	66(33)	4(1)	20(14)
	청주지소	65(33)		1	3	46(24)	2(1)	13(8)
대 전 형 무 소		153(77)	1		6	106(56)		40(21)
함 흥 형 무 소		136(63)	1		6	91(42)	4(2)	34(19)
	원산지소	62(26)			3(1)	44(19)	2(1)	13(5)
청 진 형 무 소		91(40)	1		4	63(27)	1	22(13)
평 양 형 무 소		199(97)	1		8	142(74)	9(3)	39(20)
	진남포지소	32(16)			1	23(11)	1	7(5)
	금산포지소	34(18)			1	27(14)		6(4)
신 의 주 형 무 소		136(67)	1		6	96(49)	2	31(18)
해 주 형 무 소		106(48)	1		4	75(35)	2	24(13)
	서흥지소	35(17)			1	27(14)	1	6(3)
대 구 형 무 소		209(90)	1		8(1)	147(76)	7(2)	46(11)
	안동지소	53(27)			2	39(21)	1	11(6)
익 산 형 무 소		119(52)	1		6	75(41)	1	36(11)
	마산지소	51(26)			2(1)	35(18)	2(1)	12(6)
	진주지소	59(29)			3	44(23)	1(1)	11(5)
광 주 형 무 소		122(62)	1		5	79(43)	6(2)	31(17)
	소록도지소	15(7)			1	10(5)	1	3(2)

(資料 : 「'39總督府統計年報」 360쪽. ()안은 한국인)

3. 刑務所의 運營

1) 收容

가. 收容現況

일제 통치기간 감옥의 수용인원은 국내외의 정세변화에 따라 변동되어 왔으며, 그것은 일제가 감옥을 한민족 탄압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1905년 을사늑약 때부터 치열한 반일 민족운동으로 전국 감옥의 수용시설은 계속적인 증설에도 불구하고 절대면적이 부족하였다. <표 III-3>의 ‘연도별 재감인원’을 보면, 1908년 10월말 감옥의 수용자는 2,019명이던 것이 1909년 일제에 넘어갈 때는 5,300명이었으며 1918년 말에는 12,249명이었다. 또 1919년에는 1일 평균 재감인원이 15,725명이었고 1930년 16,677명, 1940년 18,182명, 광복직전인 1944년에는 21,900명에 달하였다.

일제초기의 수용밀도는 평당 7.9명에 이르렀고, 계속적인 감옥시설의 확장으로 1920년 총 감방면적은 7,603㎡(2,300평)에서 1923년까지 17,521㎡(5,300평)로 증설하였으나 수용밀도는 평당 2.9명이었다.⁹¹⁾

연도별 在監人員 및 각 소별 수용인원을 보면 <표 III-4> · <표 III-5>와 같다.

91) 朝鮮總督府 法務局 行刑課編, 앞의 책, 164~171쪽, 行刑統計 : 朝鮮總督府 施政年報(1929), 408쪽.

< 丑 Ⅲ-4 > 年度別 在監人員

區分 年度	年末現在 在監人員	1日平均 在監人員	區分 年度	年末現在 在監人員	1日平均 在監人員
1910	7,021		1928	14,257	14,267
1911	9,599		1929	15,886	14,743
1912	9,581		1930	17,215	16,677
1913	9,914	9,895	1931	17,359	16,988
1914	9,474	9,716	1932	18,864	18,113
1915	9,800	10,316	1933	19,090	18,957
1916	10,869	10,719	1934	17,939	17,879
1917	12,265	11,813	1935	18,414	18,244
1918	11,609	12,249	1936	18,540	18,490
1919	15,161	15,725	1937		19,191
1920	14,428	14,255	1938		19,392
1921	16,695	15,916	1939		19,116
1922	15,091	15,962	1940		18,182
1923	13,709	14,315	1941		19,760
1924	12,825	12,665	1942		20,891
1925	13,106	13,083	1943		23,199
1926	13,963	13,678	1944		21,900
1927	13,751	13,454			

(資料：朝鮮總督府法務局行刑課, 『朝鮮の行刑制度』, 1938, 20卒, 行刑統計(1911~1936)
: 『刑政』通卷 11호(1949년 7월), 刑務統計)

<표 III-5> 各所別 收容人員表(1938年 1日平均)

區分 所別	被疑者		被告人		受刑者		勞役場留置		計		비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京城 刑務所					979				979		※대동유아: 남 9명, 여 9명 계18명
西大門刑務所			414	16	2,100	194	38	1	2,552	211	
春川支所			36	1	274	3	7		317	4	
公州 刑務所			1	3	472	2	3	2	476	4	
清州支所			8	8	315	1	7	4	332	5	
大田 刑務所	2		52		1,132	51	7	2	1,191	56	
咸興 刑務所			231		867	20	15		1,113	28	
元山支所			32		336		51		420		
清津 刑務所	1		528	18	308	8	26	3	862	29	
平壤 刑務所			142	9	928	85	22	1	1,111	95	
鎭南捕支所	19		26		108				140		
金山捕支所	6				162		1		163		
新義州刑務所			58	3	858	11	53	4	969	18	
海州 刑務所	6		39	3	526	4	7		578	7	
瑞興支所	3		19		185		1		208		
大邱 刑務所			89	3	1,083	44	18	2	1,190	49	
安東支所			29	3	195	1	11		235	4	
釜山 刑務所			32	1	846	5	7		885	6	
馬山支所			13		251	1	2	1	266	2	
晉州支所	2		23	2	288	3	13	1	324	6	
光州 刑務所			88	10	730	5	13	5	833	65	
小鹿島支所	8				40	2	1		41	2	
木捕 刑務所	2		89	1	444	4	9	1	550	6	
全州 刑務所	1		33	5	540	4	8		583	9	
群山支所			21		492		5	2	519	2	
仁川少年刑務所					109				409		
開城少年刑務所					717		1		718		
金泉少年刑務所			6	1	731				737	1	
계	50		2,009	87	16,316	493	326	29	18,701	609	
총계		50		2,096		16,809		355		19,310	

(資料 : 「治刑」 第17卷(1939년 2월), 96쪽)

조선총독부는 통치초기부터 한민족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이른바 무단정치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감옥의 수용인원은 날로 급증하여 계속 감옥시설을 확장하였으나 항상 수용인원의 증가를 따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20년대까지 계속되었고, 이때에는 법원의 관할에 따라 수용구분을 정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1923년 5월 감옥을 형무소로 개칭하면서 총독부령 제72호로 京城 감옥 개성분감을 개성소년형무소로 개편하였고, 이듬해인 1924년 4월 총독부령 제14호로 대구형무소 김천지소를 김천소년형무소로 개편하였다. 이어 1935년 7월 총독부령 제92호 나환자수형자를 集禁수용하는 광주형무소 소록도지소를 신설하고, 1936년 7월 총독부령 제52호로 인천소년형무소를 신설하였으며, 1937년 부산형무소 마산지소를 不具老衰受刑者の 集禁所로 지정하였다.

이와 같이 소년수형자·한센병자·불구수형자의 수용을 위한 특수형무소를 설치하였지만 그 시설이나 운영이 있어서 일반형무소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 오히려 소년수형자를 보국대라는 미명하에 더욱 가혹한 戰時勞動에 동원하였다.

일제강점기 각 형무소의 수용구분 중 京城형무소와 서대문형무소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표 III-6>과 같다.

<표 III-6> 刑務所 收容區分(1938年)

區分 所別	收容할 受刑者의 種別	判決廳名		
		복심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청
京城刑務所	무기 또는 10년 이상 남수형자			
西大門刑務所	형기 10년 미만 남자, 무기 또는 유기 여자	京城	京城	鐵原 仁川 開城
西大門刑務所 春川支所	형기 10년 미만 남자, 형기 1년 미만 여자			春川 原州

(資料 : 朝鮮總督部 法務局 行刑課, 『朝鮮刑務第要』, 朝鮮治形協會, 1927, 944쪽)

나. 日帝의 彈壓과 拷問 證言

일제강점기 애국지사들은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 투옥되어 많은 고초와 수난을 당하였다.

애국지사들에 대하여는 경찰의 審問過程에서부터 악랄한 고문이 가해졌고 감옥에 수용되어서는 특수범죄자로 분류하여 일반범죄자와 엄격히 분리, 獨居收容한 후 고문과 私罰, 폭행 등 갖은 惡刑을 일삼았다. 인신에 관한 법적인 보호가 완전히 무시된 가운데 모든 감옥에는 고문실과 함께 햇빛조차 전혀 들지 않는 이른바 특별감방을 설치하여 이와 같은 악형을 제도적으로 조장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그 참혹상에 관하여 당시 서대문감옥에서 조선인 간수로 근무했던 權寧峻은 다음과 같은 생생한 증언을 남겼다.

나는 지금도 내가 처음 근무했던 西大門監獄의 拷問室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아니, 그곳에서 술하게 매질을 당한 獨立運動家들의 悲鳴소리가 지금도 귀에 잡히는 듯하다. 당시 西大門監獄 本館 監獄이 刑護課 옆에는 取調室이라는 나무팻말이 붙은 拷問室이 있었다. 그 크기는 8坪가량인데 출입문과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을 뿐이어서 한 낮에도 전등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캄캄하였고, 네 벽은 모두 防音化되었으며 바닥은 시멘트였다.⁹²⁾

그러나 1945년 8·15 광복을 전후하여 일제는 비인도적인 탄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증거가 될 만한 애국지사의 행형자료를 소각해 버렸다.⁹³⁾ 그리고 그중에서 남은 일부 자료마저도 6·25 전쟁 중 다시 소실된 데 이어, 부산형무소에 보존되어 있던 잔여분까지 5·16혁명 후 전부 원인불명으로 폐기되어 버렸다.⁹⁴⁾

따라서 옥중 애국지사들의 고난과 항일 독립정신을 모두 기술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이 일부 수록된 行刑物이나 체험자 또는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통하여 그 진상의 일부나마 알 수 있다.

특히 서대문형무소 내 탄압과 고문에 대해서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장기간 투옥생활을 했던 애국지사 중에 생존인물이 있어서 생생한 육성증언을 들을 수 있다.⁹⁵⁾

92) 權寧峻, 「刑政半世紀」, 『中央日報』, 1971년 9월 20일자.

93) 權寧峻, 앞의 기사, 1971년 9월 21일자, 「韓守天 前職所長, 郭明德 辯護士(軍政時 전국형무소 접수관)의 증언.

94) 《東亞日報》, 1965년 2월 11일자 : 《朝鮮日報》, 1965년 2월 12일자 : 《韓國日報》, 1965년 2월 12일자.

95) 양성숙, 「발굴-서대문형무소 옥중체험기」, 『殉國』, 2004. 8월~12월 참조.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저항시인이었던 李陸史(1904~1944)와 함께 북경감옥에 투옥되어 그의 최후를 목격하고 시신을 수습한 李丙禧(1918~)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 또한 그녀는 노동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936년 16세의 어린 나이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약 2년 4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이병희는 1939년 4월 14일 京城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⁹⁶⁾

이와 관련된 수형기록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氏名：李丙禧
指紋番號：43316-43489
年齡：大正7年 1月14日生
本籍：京城 鳳翼
罪名：治安維持法違反
刑期：1年
宣告年月日：昭和14年 4月 14日
出所年月日：昭和14年 4月 14日
刑務所名：西大門刑務所
其他前科：三年間刑務猶豫 未決300日通算⁹⁷⁾

이병희의 서대문형무소 옥중체험 육성증언은 채록⁹⁸⁾의 일부분을 소개하는

96) 國家報勳處, 『獨立有功者功勳錄』 14, 581쪽 : 判決文(1939. 4. 14. 京城覆審法院)

97)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別集 6, 129쪽.

98) 양성숙, 「이병희 애국지사의 서대문형무소 옥중체험 육성증언」, 『殉國』 9월호, 순국선열유족회, 2004. 71~73쪽 참조 : 2003년 8월 2일 오전 10시 이병희 애국지사 자택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 일부분 소개.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증언내용은 활자체를 달리하여 표기하였다.

(중략)

그러면 2년 4개월 정도 수감을 하셨는데...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됐을 때 할머니께서 고문도 많이 당하셨잖아요. 어떤 고문을 당하셨어요?

비행기고문 이라든지...

비행기고문이 어떤 거죠?

인제, 다리하고 팔하고 뒤로 묶어가지고 한테 묶어서 매다는 거지.

비행기를 막 태우는 듯이요? 매달아가지고요?

어어어...그래서 막 흔들흔들하니깐 비행기 아니야. (웃음)허허... 비행기고문이라든지 고춧가루를 주전자에 넣어가지고 코에다 들이 붓는 거... 팔은 뒤로 묶어놓고...

고춧가루 고문도 받으셨어요?

어어...받았고, 또... 연필고문도 당했고.

연필고문은 어떤 거예요?

연필고문은 옛날에 팔각연필이 있었어. 각이 팔각이었는데 여기다 놓고 비틀면은 뼈까지 나오면서 피가 철철철 나오는게 연필고문이지. 허고 전기고문도했고...

전기고문도 당하셨어요? 전기고문은 어떻게 당하셨어요?

전기고문은 사람한테 전기를 쬐으면 막 칙칙...하고 전기가 울르지.

음...굉장히 많은 고초를 당하셨잖아요. 혹독한 고문을 많이 받으면서 고초를 당하셨는데...지금 후유증은 없으세요?

나는 서대문형무소에 4년 반 있어도 배한번 안 아파봤고 감기한번 안 들어봤어. 일어서 (손과 발을 가리키며)이게 이렇게 뼈만 남아가지고 썩어 들어가도, 인제…물에다가 소금을 한줌 넣고 뜨거운 물 한 양재기씩 주면은… 거기다가 담그면 붓기가 쭉 빠지면서… 인제 얼음물이 다 빠지고 난 뒤에 피가 나면 아몰어. 그렇게 4년을 했어. 4년 겨울을…

(중략)

그리고 감옥에서 서대문형무소에 계셨을 때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3분의 2는 벌러지고… 3분의 1은 좁쌀, 보리, 콩하고 쌀도 조금 섞였을까 말았을까… 그 땐 양식이 귀했잖아.

그럼, 그 때 그 벌러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양재기, 함석양재기 있잖아. 강통으로 된 거… (양 손을 펴 보이시며)요런 대로 접시를 하나 주는데, 잡곡을 물에 담갔다가 판을 찍으면 각이 일등·이등·삼등·사등… 이렇게 나가. 그렇카면 내가 오등인가 육등인가 그래. 요만한 강통으로 찍은 밥이 나와. 나오는데 이걸 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흔들면은 다 부서져버려. 그렇카면은 벌러지는 위로가고, 잔 좁쌀이든지 이런 거는 밑으로 내려앉으니깐 고걸 대나무젓갈로 조금씩 먹고…

벌러진 다 치워버리고?

벌러진 위로 뜨니깐 치워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그걸 먹었고, 국은 벌러지 등등 뜬 된장… 된장 좀 풀고 강통으로 하나씩… 요런 쪼만한 강통으로 하나씩 대접에다 쥐.

(중략)

그렇게 형무소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또 여자의 몸으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성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젤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힘들었던 점은 추운거지 뭐... 더울 때 너무 덥고...근데 나 회한하지. 형무소에서는 빈대가 가마니로 나와, 가마니로...그런데 빈대가 내 피만 먹으면 다 죽어. 피가 써서 그런가봐. 그니깐, 난 빈대 고통은 안 당했어. 내 피를 빨아먹었다 하면 뱃대기가 특 터지게 먹어가지고... 내 피만 먹으면 죽어. 근데 벼룩이 한테는 못 당해. 벼룩이하고 모기한테는 (피를 너무 빨려서)못 당해.

그니깐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서대문감옥 안에서 춥지는 않으셨어요?

어쨌, 세면바닥에다 마루를 깔고 그 위에다 있는데... 냉방인데 어떻게 안 춥나? 얼어가지고 이렇게 부우먼은 뜨거운 물에다가 소금 한웅큼 갖다 주면 거다 담그면 얼어서 부었던 것이 쭉 빠지고... 인제 썩어 들어갔던 테서 얼음물이 줄줄 빠지고 붓기가 빠지면 그 다음에는 피가 줄줄 나왔어. 피가 줄줄 나오면은, 그 때 비로서 새살이 돌아. 그러기를 자꾸 반복이 되서 (손을 만지면서)이게 썩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만 되고 그래도 나왔어. 내 살들이 워낙에 좋아.(웃음)

전신에 동상이 걸리신 거구나.

그리고 머리를 감는다고 하면은 세숫대 예다 물을 쥐. 냉수에다가 그냥 얼음물에다 머릴 감으면 머리가 얼어서 버적버적하지. 그 땐 왜 그렇게 추웠는지...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추운 날이 없어.

이병희가 수감되었던 곳은 현재 서대문형무소 정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왼쪽 편 여사 감방 중 미결수를 수용하였던 독방이었다고 한다. 말 한마디 건넬 길 없는 외로운 독방생활에 유일한 낙이 있었다면 그것은 밥 먹는 나무젓가락을 이용한 신호교환이었는데, 수감자들끼리 나무젓가락을 벽에 두들기는 횟수로 '가나다라마바사...' 등 암호를 정하여 신호와 정보를 교환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들기는 횟수로 문자를 조합하여 '누가 사형장에 끌려갔는지, 누가 아픈지, 어느 애국지사가 새로 형무소에 들어왔는지...' 등 새로운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었다.

혹은 간수가 교대하는 시간에는 감시가 그나마 소홀했으므로 유리창을 ‘깡깡’ 두 번 두들기면 수감자들이 서로 유리창에 바짝 붙어 서서 몇 마디씩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서대문형무소의 감방 안은 여름엔 무덥고 겨울엔 너무나 추웠는데, 겨울철 한 달에 두세 번 머리를 감게 되면 그 즉시 머리카락이 얼어붙어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하루에 세 번 주는 감방의 식사는 쌀은 거의 없었고 메주콩 같은 것과 보리, 좁쌀이 섞인 것이 전부였는데, 그것을 불렀다가 시루에 찌서 목판에 들고 다니면서 각 방마다 배급을 해 주었다. 배급할 때에는 배식량을 조절하기 위해 5종류로 나누어진 깡통같이 생긴 것으로 목판의 밥을 찍어서 밥 양을 조절하여 배식판에 나누어 주었다. 국은 채소 끓인 물 같은 아주 멀건 국을 주었고 나무로 된 젓가락을 주었다. 밥은 찢 밥이라 거의 뭉쳐지지가 않았는데 2/3가 벌레였기 때문에 배식판을 살살 흔들어서 위로 뜬 벌레를 건져 내고 밑에 있는 좁쌀과 콩 같은 것만 조금씩 먹고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다.

따라서 늘 추위와 배고픔을 참아야 했는데, 겨울철에는 동상이 걸려 손과 발을 잘라내는 일이 허다했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공장에서 노역을 하다가 쥐를 잡아먹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서대문형무소 내 공장에는 옷을 만드는 機織공장과 벽돌공장 등이 있었는데, 공장의 노역은 既決囚들의 몫이었고 未決囚는 법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미결수로 과란 죄수복을 입고 수감되어 있던 이병희 애국지사는 편물 일에 솜씨가 있었기 때문에 자청해서 뜨개질로 노역을 많이 했다고 한다.

또한 이병희는 서대문형무소와 북경감옥 등에서 2번의 옥고를 치르면서 여

러 종류의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다리와 팔을 뒤로 묶고 공중에 매다는 속칭 비행기 고문, 손가락에 팔각연필을 끼워서 비틀면 뼈가 으스러지면서 피가 철철 나오는 손가락 고문, 기둥에 거꾸로 묶어놓고 주전자로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마구 쏟아 붓는 물고문, 호스로 물을 마구 입에 집어넣는 물고문, 전기모터로 여기 저기 마구 찌르면 살이 타들어가는 전기고문... 등등. 심지어는 자궁에 심지를 해 박아서 불지르는 성 고문까지도 당했다고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나 이런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잡혀서 죽을 정도의 고문을 당하게 되면 너만 죽어라. 나라나 동료를 팔아먹는 짓 따위는 죽어도 하지 말아라. 아무리 힘든 고문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버티라.’는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귀에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에 절대 나라를 팔아먹는 짓 따위는 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병희는 이렇게 혹독한 서대문형무소 옥중생활을 2년 4개월 동안 견딘 끝에 1939년 4월 드디어 출옥하게 된다.

다. 總督의 收容彈壓 指示

일제는 수많은 우리 애국지사들을 감옥에 투옥시키고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애국지사들은 옥중에서도 굽히지 않고 저항하였으며 옥외의 애국지사들과도 연락하며 조직과 저항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항일 애국지사의 수형기록표·身分帳 등 관계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수용기간이나 수용 감방 등 매우 중요한 실제 수용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애국지사 등에 대한 일제의 탄압관계 공문서 역시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런 공문서를 작성했을 리도 없겠지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폐기했거나 일제 패망 시에 소각 또는 일본으로 가져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刑務所長會議에서 총독이 행한 훈시 중 일부가 전해지고 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옥중에서도 굽히지 않고 계속된 애국지사들의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찾을 수 있고, 일제의 탄압 실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1926년, 1930년, 1932년, 1939년 刑務所長會議에서 행한 총독의 훈시 중 관련된 내용⁹⁹⁾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26년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의 훈시를 살펴보면,

최근 위험사상을 지닌 犯罪者가 入監하는 數가 현저히 增加하는 추세에 있다. 이들 犯罪者를 收容하기 위하여는 더욱 많은 시설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의 財政上 이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部下를 잘 指導하고 臨機의 조치를 취하여 拘禁의 適正을 圖謀하기 바란다.

또 危險思想을 지닌 犯罪者에 대하여 行刑의 目的을 달성하고자 할 때에는 극히 곤란한 문제들이 따르겠지만 예의 部下職員을 독려하고 성의를 가지고 教化善導에 노력한다면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¹⁰⁰⁾

라고 하여 사이토의 독기 서린 발언을 볼 수 있다. 공식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용어 사용을 매우 신중하게 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사상을 지닌 수감자들을 임기의 조치를 취하여 구금의 적정을 도모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99) 朝鮮總督官房 文書課 編, 「刑務所長會議 朝鮮總督 訓示文」, 『諭告·訓示·演述總覽』, (京城:株式會社 朝鮮行政學會 轉載, 1942), 419~442쪽.

100) 1926. 10. 5 刑務所長會議時.

다음 1930년 10월의 사이토 총독의 훈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요즈음 社會思想의 惡化에 따라 刑務所의 受刑者도 영향을 입어 자칫하면 그 言動이 不純하며 심할 때에는 暴舉 騷擾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중에는 처음부터 생각하는 면이 천박하여 附和雷同한 것이 지나지 않은 자도 적지 않다. 따라서 受刑者에 대한 遵守事項을 주지시키는데 태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¹⁰¹⁾

사이토가 언급했던 ‘附和雷同’이란 표현에서 당시 독립운동에 참가한 애국지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수형자에게 준수사항을 주지시키라는 훈시 내용은 그만큼 애국지사들을 강압적으로 다루라는 표현으로 일제의 탄압상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총독이 우가키 가즈시케(宇垣一成)로 바뀐 1932년 10월 전국 형무소장회의의 훈시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즉,

최근 大小의 刑務事故가 빈발하고 특히 危激思想에 관한 受刑者가 他受刑者를 教唆煽動하여 騷擾 등 사태를 야기시킨 것은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생각컨대 事故發生은 職員業務의 過重에도 원인이 크다고 하겠지만 세밀히 조사, 考察하는 注意力이 결여된데 원인이 적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職員配置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職員의 심신단련에 留意하여 크게 기백을 增進시키며, 나아가서는 服務의 중요성을 이해시켜야 한다.

한편, 危激思想犯에 대해서는 특히 拘禁의 위력을 과시하여 엄중하게 함은

101) 1930. 10. 29 刑務所長會議時.

물론 思想犯罪의 원인, 思想感染의 정도 및 思想轉向의 難易등을 고찰하여 이에 적절한 處遇를 실시하고 보도유예에 힘쓰며 만약 受刑者가 규율을 문란케 하고 法規에 저촉한 행위를 할 때에는 엄중 懲罰하고, 때에 따라서는 刑事訴追의 방법을 강구하여 단호하게 法令에 服從하게 함으로써 장래 사고근절을 기하도록 하기 바란다.¹⁰²⁾

우가키의 이 훈시는 당시 형무소 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애국지사의 옥중투쟁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애국지사들은 옥중에서도 일반 수형자들을 선동하여 투쟁을 전개한 사례가 빈번하였고, 이에 총독부에서는 구금의 위력을 과시하여 엄중하게 다스리는 한편 사상을 전향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1939년 6월 제7대 총독이면서 민족문화말살정책을 추진했던 미나미 지로(南次郎)의 훈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思想犯 受刑者 중 아직 상당수의 未轉向者가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만약 재소 중 끝내 思想轉向을 하지 않은 채 滿期釋放하는 자가 있다면 일반인들에게 行刑의 효과를 의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형자의 個性을 살려서 敎化의 구체적 방안을 치밀히 연구하여 부단한 노력을 함으로써 이들 未轉向受刑者가 전혀 없도록 목표를 둔다.¹⁰³⁾

즉 이 총독의 훈시로 우리의 애국지사들은 혹독한 고문과 회유에도 전향하

102) 1932. 10. 18 刑務所長會議時.

103) 1939. 6. 22 刑務所長會議時.

지 않았으며, 일제가 이들을 전향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고문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2) 在監者 處遇

가. 處遇實態

조선총독부의 감옥제도는 식민통치의 탄압수단의 일환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在監者에 대한 처우는 권위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하였다. 法制에 있어서는 일본 감옥법을 비롯한 일본 행형법규를 依用하였으므로 외형상 근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應報威嚇的인 행형정책으로 일관하였고, 특히 사상범에 대한 처우는 비인간의 극치를 이뤘다.

在監者에 대한 私罰과 고문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행형 관리와 수감자 모두가 당연하게 여길 정도였고 사소한 형무소내 규율 위반에도 重懲罰을 부과하였다.

또한 수형자의 教誨, 累進處遇制度를 시행하였으나 일제의 악랄함을 감추기 위한 허구에 지나지 않았으며 行刑教育 역시 일제의 臣民皇道化와 民族抹殺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었다.

일제강점기 근대적 수용시설로 건설하였다고 하는 감옥시설이야말로 당초부터 재소자의 인권을 도외시한 구금 및 계호위주의 시설이었다. 대부분의 감방은 햇빛과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어둡고 습기가 차있는데다 용변시설을 갖지 않아 방안에서 便桶을 사용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수용절차, 예산운영을 비롯한 형무행정의 체계는 어느 정도 근대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나. 給養

재감자의 급량은 감옥법에 의거하여 미결수는 自辯을 원칙으로 하되 自辯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관에서 지급하고 既決수형자는 모두 관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일제는 초기부터 가혹한 법률로 한민족을 억압함으로써 수형자가 폭주하여 1930년대까지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었으므로 급량사정도 매우 나빴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에 감옥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굶주림이었다.

이와 같은 열악한 급식과 가혹한 수형생활로 항일 애국지사의 대부분이 옥고 1년만 지나면 심한 병을 얻게 되었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되기 십상이었다. 또한 규정상으로는 최소한의 양식 급여량이 마련되었으나 형무소 관리들의 착취로 실제 수감자들은 훨씬 모자라는 급식으로 배를 굶주려야 했다.

1936년 12월 재감자 급여규정이 처음 제정되어 급식의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食等を 11개 등급으로 세분하여 지급하였다. 인간의 기본적인 육구인 급식을 11등급으로 세분한다는 것은 급식의 가혹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혼합비율은 쌀 10%, 보리(또는 조)50%, 콩40%로 정하였는데, 일제말기에 이르러 전쟁으로 식량이 부족하게 되자 콩 대신 콩깻묵을 지급하였고 그나마 대폭 줄이게 되자 많은 수감자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다.¹⁰⁴⁾

일제 말기 수형자의 급식실태에 대하여 당시 서대문형무소에서 간수로 근무했던 권영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뒤니뒤니해도 형무소에서 제일 곤란을 느꼈던 것은 식량부족이었다. 형무소 식량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콩의 공급이 중단된 것은 죄수들 건강에 큰

104) 法務部, 『韓國矯正史』, 1987, 386~387쪽.

타격을 주었다. 좁쌀 삶은 것에 볶은 소금 뿐 영양실조로 인한 병발증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밤새 멀쩡하던 사람이 아침을 먹다가 그대로 쓰러지고, 이어 죽어갔다. 사상자수는 평소의 10배 정도로 부쩍 늘어났다. 威興 형무소에서는 1945년 6, 7월 동안 무려 360여명이 굶주림에 못 이겨 죽었다고 전해졌는데, 시체를 변변히 매장하지도 못할 정도였었다고 했다.¹⁰⁵⁾

즉 한 형무소에서 두 달 동안 360여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니 당시 참혹했던 감옥 내의 급식실태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다. 醫療 및 保健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제 총독부시대가 시작되면서 수감인원이 날로 증가하여 감방은 제대로 앉지도 못할 만큼 비좁았고, 일제는 탄압적인 식민정책으로 수감자에 대한 의료와 보건의도 전혀 무관심하였다. 그리하여 전염병 등 질병이 유행하고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일제 초기에 監獄醫 8명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당시 시설·예산 등의 여건으로 보아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러다가 1923년경 감옥의 확장사업이 대체로 마무리되고 감옥관제가 정비되면서 점차 보건기사, 保健技手, 藥劑師를 전국 감옥에 배치하였다.

참고로 1937년 京城형무소와 서대문형무소 醫務職員 現況을 보면 <표 III-7>와 같다.

105) 權寧峻, 「刑政半世紀」, 『中央日報』, 1971년 9월 30일자.

<표 III-7> 醫務職員 現況(1937年)

所別 \ 區分	保健技師	保健技手	藥劑師	醫務囑託	計
京城刑務所	1	1	1	2	5
西大門刑務所	1	3	1	2	7
西大門刑務所 春川支所		1		1	2

(資料 : 朝鮮總督府 法務局 行刑課, 『朝鮮の行刑制度』, 1938, 55쪽)

라. 教誨

일제 행정에서 특이한 것은 教誨制度인데 일본 불교의 승려를 교회사로 채용하여 각 형무소에 배치하고 교화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教誨는 주로 황국신민화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1924년부터 수형자가 읽는 「道」라는 잡지를 월 2회 발행(매월 1일과 15일 발행, 부수 약 4,500부 발간)하여 각 형무소에 배포하였다.

참고로 형무소에 배치된 교무직원 현황을 보면 <표 III-8>과 같다.

<표 III-8> 教務職員 現況(1937年)

所別 \ 區分	奏任對偶 教誨師	判任對偶 教誨師	教師	教務囑託	計
京城刑務所	1	1		3	5
西大門刑務所	1	2	2	3	8
西大門刑務所 春川支所		1			1

(資料 : 朝鮮總督府 法務局 行刑課, 『朝鮮の行刑制度』, 1938, 77쪽.)

마. 累進處遇

누진처우는 수형자 노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우를 완화함으로써 개선을 촉진시키는 제도인데, 1937년 11월 9일 총독부령 제178호로 朝鮮行刑累進處遇規則이 제정되어 처음 시행되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제 4級부터 1級까지 4계급으로 나누고 각 급별로 일정한 책임점수를 부여하여 그 책임점수를 채우면 상급으로 진급시키고 각 급마다 처우를 달리 하도록 정하였다. 가장 상위급인 1급 수형자의 처우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전을 주도록 되어 있었다.

제26조 1급 受刑者는 특별한 장소에 수용할 수 있다. 특별한 장소 내에 있어서는 그 居房에 施錠을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檢身 및 居房搜檢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29조 休憩時間中 刑務所內의 지정한 장소에 자유로 遊步할 수 있다.

제36조 就業時 戒護者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 圖書室에서 文書·圖書의 閱讀을 허가하고 도서실에는 적당한 新聞 및 雜誌를 비치할 수 있다.

제45조 수시 接見 또는 信書의 發送을 할 수 있다.

제46조 接見時 특히 立會者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¹⁰⁶⁾

바. 假出獄

일제 총독부는 조선시대에 보석 또는 假放제도가 광범하게 시행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여 민심수습의 방안으로 초기부터 가출옥을 실시하였다.

106) 「朝鮮行刑累進處遇規則」, 1937년 11월 9일, 총독부령 제178호.

그러나 그 수혜의 범위는 매우 좁아서 일제초기의 만기출옥자에 대한 가출옥 비율은 0.02%미만에 불과하였다. 1919년 3·1운동 이후 가출옥을 약간 확대하였으나 만기출옥자에 대한 가출옥의 비율은 1% 미만이었으며 일제말기까지 대체로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가출옥을 실시하였다.

연도별 가출옥 인원을 보면 <표 Ⅲ-9>와 같다.

<표 Ⅲ-9> 假出獄人員(1911~1943年)

年度別	假釋放	滿期釋放	年度別	假釋放	滿期釋放
1911	94	5,368	1928	408	11,187
1912	163	7,160	1929	359	10,536
1913	105	9,018	1930	757	10,359
1914	189	10,867	1931	907	10,310
1915	162	10,800	1932	871	10,411
1916	198	10,660	1933	858	9,972
1917	266	10,630	1934	1,032	11,608
1918	674	11,036	1935	1,075	9,666
1919	1,196	1,196	1936	1,028	10,002
1920	690	690	1937	905	10,712
1921	101	101	1938	922	10,725
1922	1,216	1,216	1939	1,209	10,395
1923	614	614	1940	1,261	12,516
1924	708	708	1941	1,016	11,408
1925	651	651	1942	976	11,692
1926	491	491	1943	1,320	11,898
1927	505	505			

(資料 : 法務部, 『韓國矯正史』, 1987, 392~393쪽, 法務部 矯政局 統計)

사. 笞刑의 施行

국권피탈 후 일제는 일본의 형사법을 한국에 적용시키면서 대부분의 구한국법을 폐지하였는데 그 중 조선행형의 태형제도는 그대로 존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1912년 3월 制令¹⁰⁷⁾ 제113호로 朝鮮笞刑令을 공포하고 조선인에 한하여 태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태형은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拘留에 처해야 할 자에 대해 情狀이 있을 때와 100원 이하의 벌금 및 과료에 처할 자가 일정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재산이 없을 때 부과한다고 하였다.¹⁰⁸⁾

태형의 집행은 감옥 또는 경찰관서에서 행하게 하고 징역 및 구류 1일에 笞 1, 벌금 1원에 笞 1로 계산하는데 즉, 감옥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감옥에서, 감옥이 없는 지역에서는 경찰관서에서 태형을 집행하였다. 태형은 1920년 초까지 집행하였다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제의 무단정치가 소위 문화정치로 전환되면서 1920년 3월 31일을 기해 폐지하였다.¹⁰⁹⁾

3) 刑務作業

일제는 감옥운영에 있어서 刑務作業을 매우 중요시했으며 형무작업의 목적을 “수형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勤儉力行의 良習과 직업기능을 습득케 함으로

107) 制令 : 조선에서 총독이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1910.8.29 합병과 동시에 칙령 제 324호로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조선에서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은 일본 내각 총리대신을 경유 일본 황제의 칙제를 얻어 총독이 발하게 하고, 일본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선에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칙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法務部, 앞의 책, 1987, 393쪽 재인용.

108) 「朝鮮笞刑令」 제1조·제2조, 1912년 3월 18일, 制令 제13호.

109) 朝鮮笞刑令 施行規則, 1912년 3월 19일, 總督府令 제23호 : 笞刑執行心得, 1912년 3월 30일, 總督府訓令 제40호 참조.

써 석방 후의 생활실력을 부여한다”고 표명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는데 두었다.

특히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는 保國隊를 조직하여 군수공장과 군용비행장 건설 그리고 해외 採鑛作業에까지 수형자를 동원하였다.

형무작업의 수입은 재감자 수용비용의 76%, 전체 형무예산의 40%에 달하였다.¹¹⁰⁾

한편 일제초기에는 수형자의 취업률이 낮았고 작업의 종류도 단순하여 受負作業으로서 가마니 짜기나 단순한 육체노동 정도가 있었고 官司作業으로서 官用夫 이외에 목공·농경 작업이 약간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20년경에 이르러 감옥시설이 크게 확장되고 작업인원도 증가되면서 작업운영의 형태도 달라지게 되었다. 즉 木工, 煉瓦工, 機織工, 石細工 등 종목이 늘어나고 작업설비가 향상됨으로써 생산수준도 증가하여 형무작업은 본격적인 경영체제를 갖추게 되고 수형자의 취업률은 98%를 유지하였다.¹¹¹⁾

1930년대에 이르러 각 형무소별로 주요 작업종목을 정하고 적격자를 集禁시켜 작업을 운영하여 기능공 양성과 생산성을 높였다. 형무작업의 선전 및 기술향상을 위한 작업제작품 품평회를 1928년 京城府 公會堂에서 처음 개최한 이래 1931년(2회), 1935년(3회), 1936년(4회)에 개최하였다.

연도별 작업수입을 보면 <표 III-10>과 같다.

110) 朝鮮總督府 法務局 行刑課編, 앞의 책, 34쪽.

111) 朝鮮總督府 法務局 行刑課編, 위의 책, 33~34쪽.

<표 III-10> 作業收入 現況

年度 \ 區分	作業收入高 (원)	作業收入1日 1人當 (전)	1日1人平均 工錢 (전)	收容費 (원)
1912	75,963	3.7	4.2	
1919	521,655	17.1	9.4	1,408,662
1924	1,134,408	40.3	19.1	1,948,403
1930	1,553,339	44.9	14.1	2,110,989
1935	2,455,090	62.2	14.3	3,219,484

(資料 : 朝鮮總督府 法務局 行刑課, 『朝鮮の行刑制度』, 1938, 46쪽.)

형무작업의 형태는 官司作業이 주종을 이루고 그 외 受負作業과 위탁작업이 있었다. 그리고 형무작업의 생산품은 官用主義에 의하여 전국 관공서에 주로 납품하였다. 작업형태별 수입과 관용물품 제작 실적을 보면 <표 III-11>, <표 III-12>와 같다.

<표 III-11> 作業形態別 收入(1935년)

區分 \ 作業別	收入(원)	作業延人員
官司作業	1,972,058.86	2,018,375.4
委託作業	197,961.01	507,375.2
手負作業	285,070.82	1,416,822.5
合計	2,455,090.69	3,942,573.1

(資料 : 朝鮮總督府 法務局 行刑課, 『朝鮮の行刑制度』, 1938, 46쪽.)

<표 III-12> 官用物品製作實積(1935년)

自刑務所	他刑務所	軍部隊	其他官公署	學 校	組合協議會等	計
339,199원	198,660원	292,839원	301,535원	38,213원	154,873원	1,325,319원

(資料：朝鮮總督府 法務局 行刑課, 『朝鮮の行刑制度』, 1938, 46쪽.)

각 형무소의 주요 작업종목은 신의주형무소는 전국 형무소의 목공작업에 소요되는 목재를 공급하였고, 京城형무소에서는 재감자 식품 및 용지를, 대전형무소에서는 職員官服地 및 在監者被服地를, 광주형무소에서는 솜, 탈지면 및 휴지를, 김천소년형무소에서는 인쇄시설물이 없는 형무소의 인쇄물을, 진주지소에서는 대나무제품을 생산하였다. 그 외 부산의 漁撈作業, 춘천의 연탄생산, 평양의 絹織, 해주·목포의 採石作業 등이 있으며, 농경 및 연와작업은 여러 형무소에서 운영하였다.¹¹²⁾

112) 法務部, 앞의 책, 1987, 400쪽.

IV. 抗日 義兵將의 獄中鬪爭

19세기 후반에 한국침략을 노골화한 일제의 만행은 한민족을 분노케 하였고, 이에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일제의 폭압에 항거하기 위한 의병부대가 조직되었다. 양반 유생은 물론이고 농민과 천민까지 합세하여 대단위 무력부대를 조직한 의병들은 일제와 무력적인 대결을 벌였다.

이후 의병투쟁은 1910년 국권피탈 전후까지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히 1905년 乙巳勒約의 강제체결과 1907년 한국 군대해산을 계기로 양반·농어민·노비 등이 연합하여 자발적으로 義陣을 조직, 국권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오직 조국의 국권수호라는 일념으로 의진에 가담한 의병들은 일제의 무력에 의해 살해되는가 하면 형무소에 무차별 감금 투옥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사형 순국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이 심해질수록 의병들은 항일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제침략에 항거하는 투쟁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의병전쟁으로 더욱 확대 전개되었다.

이에 본장에서는 옥중기록을 중심으로 한말 의병투쟁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중 순국한 의병장들의 행적과 사형집행과정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된 항일의병을 출신지와 법원별 항소심 여부, 형량별 현황과 순국선열 현황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1908년 서대문형무소 설립 이후 항일의병의 투옥실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西大門刑務所에서 殉國한 義兵將

1) 李康季

雲崗 李康季(1858~1909)은 경북 문경 출생으로 무예와 병서에 능하였고 22세 때인 고종 16년(1879) 정시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이 내려지자 1896년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켜 강원도 寧越·平昌·旌善·橫城·堤川 등에서 일본군을 토벌하는 등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

그러나 일제의 보복으로 이강년의 가족은 모두 살해되었는데, 일제는 이강년을 폭도의 수괴로 평가하고 있다.

그(이강년)는 학식과 기골이 장대하여 일청전쟁 당시 동학당이 일어났을 때부터 폭도의 수괴로서, 각지를 배회한 자로서 그의 가족은 모두 일병에게 살해되었으므로 일본에 원한을 품기 오래였다.¹¹³⁾

1905년 을사늑약과 연이은 1907년 고종황제의 강제퇴위 및 군대해산 등으로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전이 전개되었고 이때 이강년 의병장에게도 고종의 비밀칙령이 전해져 그 사기가 충천하였다. 「告訣八域同志」에,

11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資料集』 3, 1971, 600쪽. 1908년 11월 18일 강원도 관찰사 李圭完이 내부대신 宋秉峻에게 보낸 의병투쟁 상황 보고서인 「暴徒史編輯資料」 참조.

대전 30여 회에 죽여서 얻은 敵酋가 백여 급이라.¹¹⁴⁾

라고 스스로 밝혔듯이 정미·무신년(1907·1908)을 중심으로 경상도·충청도·강원도 등 3도 14군을 완전히 휩쓸며 일제와 대적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그 당시 승패를 대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승전 20여 회(대승 9회), 패전 10여 회(대패 5회), 그리고 비슷한 전과가 10여 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강년은 구한말 많은 다른 의병장과 달리 유림 의병장으로서 비교적 많은 전투와 승전을 거둔 유일한 의병장이었다.

1895년 을미의병 당시의 노병이 12년이나 지난 후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하는데, 13도 창의군의 서울탈환작전이란 역사적 사건을 남겼으니 어떤 다른 사건보다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¹¹⁵⁾

그러나 충청도 청풍 전투에서 기습을 받아 선봉장 河漢瑞 등 선봉장급 7명이 전사하고 이강년도 복사뼈에 일본군의 탄환을 맞아 체포되었다.

당시 경상도·충청도·강원도를 휩쓸며 일본군과 대적했던 이강년의 활동상황은 다음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즉,

약 3백의 부하를 거느리고 寧越수비대를 공격하고 또 동읍을 소각한 이래 寧越·平昌·旌善의 각 방면에 출몰하고 혹은 돌아서 충청북도 永春郡에 들어가 東面 兵屯里에서 大邱로부터의 토벌대 제14연대와 會戰, 대 타격을 받

114) 『雲崗倡義錄』, 「告訣八域同志」 ‘大戰三十餘 殺得敵酋百餘級’

115) 박성수, 「운강 이강년 의병장과 西大門刑務所」, 『義兵戰爭과 西大門刑務所』, 서대문구청, 2002, 4쪽.

고 계속하여 榮川수비대에 의하여 소탕되어 사산 도주, 三陟郡 방면에 이르러 그 후 역시 약세이였으나, 본년 5월경부터 세력이 부활하여 부하 2백 여를 이끌고 寧越郡 水周面 부근에 나타나 교묘히 白楊山·雉岳山 및 獅子山을 횡행 중 대토벌 때에, 6월 28일 平昌郡 大和面 桂洞에서 原州 비대 佐藤 대위에 의하여 대타격을 받고 酒泉·堤川을 거쳐 부상 때문에 淸風에 잠복 중 마침내 6월 30일 堤川수비대에 의하여 포획되었다.¹¹⁶⁾

이때 이강년은 일제에 체포된 분한 마음을 한 수의 詩로 남겼다.

무정하다 탄환이여
발목을 상하여 나아갈 수 없구나
차라리 심장에 맞았더라면
욕보지 않고 瑤京에 갈 것을.¹¹⁷⁾

그 후 이강년은 수원의 일본군 수비대 본부를 거쳐 1908년 양력 7월 8일 일본군 수십 명이 포박하여 인력거에 실린 채 서울의 일본 헌병사령부로 압송되었다.

일본병 수십 명이 의병장 한 사람을 포박하여 인력거에 搭載 入城하였는데

11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資料集』 3, 1971, 600쪽.

117) 『海東義士雲崗李康季先生略史』, 33쪽 ‘丸子太無情 臥傷足不行 若中心腹裏 母尋到瑤京’

이 의병장의 용모는 紅顏에 표불하여 左雇右眊하여 의기가 자약하다.¹¹⁸⁾

이강년은 체포된 후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와 담판하고 죽겠다고 호령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제를 통렬히 꾸짖었다.¹¹⁹⁾

10일에 평리원으로 옮겨졌는데 공이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들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어찌 대대로 원수인 적에게 붙어서 우리 종묘사직을 잊지르고 우리 동포를 해치느냐. 빨리 伊藤博文을 보게 하라. 담판하고 죽겠다.”고 하니, 대답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글로 적어 전하시오.” 하므로 공이 “그러겠다.”고 하였다.

저들이 묻기를 “어찌하여 의병을 하였느냐.” 고 하므로 공은 말하기를, “너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어찌 의병을 모르느냐. 나는 왕실의 후손으로 국가의 위급한 때를 당하여 차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다가 불행히 잡힌 몸이 되었으니 빨리 죽여주기를 바란다. 선비에게는 죽음을 줄지언정 욕을 보여서는 안 되는 법이다.”고 하였다.¹²⁰⁾

따라서 일본군은 그의 의연함에 당황하였고 상부에 보낸 보고서에 “그는 자못 傲然하여 조금도 진실을 들을 수 없고 심문의 결과도 요령을 얻을 수가 없

118) 『대한매일신보』

119) 『雲崗先生倡義日錄』은 운강이 남겨놓은 기록과 朴貞洙와 姜順熙가 종군하면서 견문한 것을 바탕으로 엮은 이강년의 창의기록인데, 박정수는 초기 의병항쟁에 관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고 강순희는 운강의 사서로 활동했다. 『獨立運動史資料集』 1권에 국역되어 있다.

12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資料集』 1, 1971, 281~282쪽.

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강년은 사형을 당하기 직전 동지들에게 자신은 대의에 의해 죽게 되었으나 동지들은 더욱 큰 의리로 매진하며 광복의 날을 기다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즉,

오호! 저 극악한 원수들이 정부를 차지하고 앉아 전곡과 무기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것은 본시 도적이 하는 상습이라 분통할 뿐이나 저놈들이 이른바 絞刑法이란 것을 만들어 사람을 죽이고 재물은 강탈하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누가 도둑인가.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나라에는 무고한 백성들이 날마다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다. 아! 어찌 차마 볼 수 있는 일인가.

이에 나 이강년은 양심이 격동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병신년 이래로 13년간 두 번 義旗를 들고 일어나 30여 회전에서 賊酋 백여 명을 참수하였다. 불행하게도 금년 6월 4일에 힘은 다하고 갈 길은 막혀 탄환에 맞아 사로잡혔으며 오랫동안 옥중에서 옥보다가 이제는 죽게 되었다. 이 몸은 존화양의 대의에 죽는 것이니 이제는 그날이 다 되었다. 동지들에게 바라는 것은 적세가 성하다 하여 본래의 뜻을 어기지 마시고 더욱 큰 의리로 매진하시어 광복되는 날을 기다리시라.

나 이강년은 잡혀서 죽게 되어 통분한 마음 금할 수 없어 그 충정을 글로 적어보이는 것이다. 사면을 바라보며 재배하는 바이다.¹²¹⁾

이와 함께 이강년은 큰 아들 承宰와 종제 康壽를 걱정하며 또 다른 유서 1통을 작성하여 옥졸에게 주었는데,¹²²⁾ 이 글에서 사형당하기 직전까지도 자주

121) 「告訣八域同志」, 『雲岡倡義錄』, 295쪽.

독립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이강년의 곳곳한 애국의지를 느낄 수 있다.

너의 아버지는 평생토록 丹衷은 나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 뜻이 이루어졌으니 무엇을 한탄하라.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 네 아우를 데리고 그날 옥문 밖에서 기다리도록 하라. 내가 죽은 뒤 3일 안으로 마땅히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고향 산이 멀어 수레에 실어서 반장하기 어려울 것이니 종가와 상의하여 서울의 효령대군 묘소 국내에 자리를 빌어 안장토록 하라.

이 아버지가 덕이 박하여 품은 뜻을 펴지 못하고 죽으니 너희 형제는 줄 지에 아버지를 잃으니 의지할 바가 없고 여관에서 한자의 배와 홀웃인들 마련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다만 간혀 있을 때 입던 옷가지로 선산에 묻으면 내가 마음으로 달게 여기는 바이니 유감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이제 이 나라가 오랑캐의 소굴이 되고 말 것인가. 머리를 들어 하늘을 부르나 하늘 뜻이 아득하기만 하니 통곡할 뿐이다. 내가 어찌 하랴. 이 아버지가 가르침을 받은 것은 존양토복 녀자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삼아 천하의 강적이자 천천지 원수와 총칼을 맞대어 싸운 지 10여년에 요동과 하북, 호서와 관동을 왕래하며 싸웠으나 그 형세가 외로웠다. 그러나 군자는 말하기를 ‘양은 다할 이치가 없다(陽無可盡之理)’ 하였고 고인은 말하기를 세월이 오래면 반드시 되돌아오는 것이 상도(千秋必返理之常)’라 하였다. 믿는 것은 단지 一脈正理일 뿐이다.¹²³⁾

이강년의 큰아들 承宰는 급보를 듣고 밤을 새워 서울로 올라와서 가로막는

12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1, 284쪽 참조.

123) 「訣長子承宰書大略」, 『대한매일신보』, 1908. 10. 15일자.

옥졸들을 뿌리치고 들어가 아버지를 만났다. 그러나 운강은 승재에게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말고 일제와 타협하지도 말라고 일렀다.¹²⁴⁾

마침내 1908년 10월 13일(음력 9. 19) 오전 10시에 이강년의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그는 이 자리에서도 크게 외쳐 말하기를, “우리나라 2천만 동포가 장차 차례로 나처럼 죽게 될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하고 끝까지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였다.¹²⁵⁾

이처럼 이강년은 구국의 일념으로 의병을 일으켜 13년 동안 일제와 싸우다가 51세를 일기로 순국하였다.¹²⁶⁾

이강년은 본격적인 침략을 노골화한 일제에 대한 항전이 전략전술상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쟁을 계속하다가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은 계승되어 항일 독립운동의 맥을 형성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강년과 같은 의병장들의 노력이 13도창의군 서울탈환작전으로 결실되어 한말 의병전쟁의 빛나는 전적이 역사에 남을 수 있게 되었다.

2) 李麟榮

이인영(1880~1909)은 경기도 여주군 북면 교곡리에서 출생하여 일찍이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저명한 유학자였다. 1895년 을미의병 때에는 柳麟錫·李康季과 더불어 의병항쟁을 일으켰으며, 그 후 부모와 처자를 거느리고 경북聞慶에 은거하였다.¹²⁷⁾

12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1, 284쪽.

12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71, 283~285쪽.

126) 金承學, 『韓國獨立史』 下, 207쪽 참조.

127) 「李麟榮」, 『騎驢隨筆』, 126쪽 : 國家報勳處, 『獨立有功者功勳錄』 10, 408쪽 참조.

그러다가 1907년 8월 말경에 강원도 원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여주·지평·원주 등지에서 활약하고 있던 의병장 李殷瓚과¹²⁸⁾ 서울 출신 李九載가 5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인영을 찾아갔다. 그들은 이인영에게 의병대장이 되어 줄 것을 간곡히 청하였고, 마침내 이인영은 동년 9월 2일 원주에서 의병 거사의 깃발을 들었다.¹²⁹⁾

그는 창 의 직후에 전국 8도에 격문을 보내 의병을 모집하였다. 이에 응하여 다수의 군사들이 몰려들어 대규모 연합의병진이 형성되었다.¹³⁰⁾

이인영이 관동창의대장에 오르자 원근에서 그를 따르는 자가 모여들어 군세는 더욱 크게 떨치게 되었다. 또한 그는 황성·지평·춘천을 왕래하며 8도의 의병규합에 진력하면서 서울을 공략하여 의병들의 최후 목표를 달성하고자 호소하는 격문을 발하였으며, 1907년 11월에 각도의 의병부대들을 양주로 집결시켰다.

한편 이인영은 金世榮을 서울에 파견하여 서울 주재 각국 영사관에 격문을 발송케 함으로 항일의병투쟁의 합법성을 국제적으로 호소하였다. 그리고 광무 11년(1907년) 9월 25일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동포들에게 호소하는 「해외동포에게 보내는 격문((Manifesto to all Koreans in all parts of the world)」을 발송하였는데¹³¹⁾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포들이여! 우리는 함께 뭉쳐 우리의 조국을 위해 헌신하여 우리의 독립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야만 일본제국의 잘못과 광란에 대해서 전 세계에 호

12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資料集』 3, 511·516·66·666·669·706쪽.

129) 「義兵總大將 李麟榮 略史(續)」, 『大韓每日申報』 1909년 7월 28일.

130) 上同

131) 「第二回 李麟榮問答調書」, 734쪽.

소해야 한다. 간교하고 잔인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인류의 적이요, 진보의 적이다. 우리는 모두 일본 놈들과 그들의 첩자, 그들의 동맹인과 야만스런 제국주의 군인을 모조리 죽이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¹³²⁾

이인영의 격문에 호응하여 양주에 모여든 전국 연합의병부대는 총 48진에 1만 여명에 달하였다.¹³³⁾ 그리고 이들 중 근대적 무기, 즉 양총을 가진 정예군이라 할 수 있는 과거의 진위대 병사들 및 기타 훈련받은 군인이 약 3천명이었다.¹³⁴⁾

양주에 모인 의병장들은 전체 통솔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13도창의대진소를 성립시키고 이인영을 13도창의대장에 추대하였다.¹³⁵⁾

13도 연합 의진은 서울공략을 목표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서울로 진격하여 1907년 10월부터 1908년 2월까지 일본군과 수십 회의 격전을 치루며 그 위세를 떨쳤다. 그러나 이인영의 서울진공작전은 탄약재고량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하였다.¹³⁶⁾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宋相燾의 『騎驢隨筆』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132) 『日本外交文書』 제41권 제1책, 856쪽. “Compatriot. We must united and to consecrate to our land and restore our independence. We must appeal to the whole about grievous wrongs and outrages of barbarous Japanese. They are cunning and cruel and are enemies of progress and humanity. We must all do our best to kill all Japanese their spies and soldiers.”

133) 「十三道倡義大將李麟榮逮捕始末」, 719쪽.

13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 1, 502~507쪽 참조.

135) 「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37쪽.

136) 오영섭, 「한말 의병장 이인영과 서대문형무소」, 『의병전쟁과 서대문형무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개관3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서대문구청, 2001, 51쪽 참조.

서로 연락하여 그 성원을 받아 각 도에 격문을 전하고 鼓起로써 하니 원근 응모자가 주야부절로 모인 자가 만여 인이었다. 이에 있어서 서울로 진군하여 통감부를 격파하고 협약을 취소시키고 국권을 회복코자 하여... 군사는 그 軍旅를 정돈하고 進發을 준비하였다. 이에 이인영은 각도 義旅로 하여금 일제 진군을 재촉하고, 몸소 3백 명을 이끌고 먼저 동대문 밖 30리에 이르렀다. 그러나 각 군이 이르지 않았는데 일병이 먼저 쳐들어 와 서로 분전하였으나 적에게 대적할 수 없어 이에 퇴군하였다.¹³⁷⁾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의병 총대장 이인영은 1908년 1월 28일 부친 사망의 부고를 받고 군사장 허위에게 후사를 맡긴 뒤 문경 본가로 가게 되었다. 허위는 3백 명을 이끌고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집합하기로 약속한 각지 의병부대와 연락이 끊어지게 되고 연합의진의 서울 탈환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후 이인영은 다시 의병을 일으키고자 하였으나,¹³⁸⁾ 1909년 6월 7일 충북 황간군 金溪洞에서 살던 중 일제에 체포되었다.¹³⁹⁾ 서울로 압송된 그는 일본 육군 헌병대위 村井因憲의 주재 하에 3회에 걸쳐 취조를 받았다.

이인영은 舉義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¹⁴⁰⁾

일본은 청일전쟁의 종국에서 馬關條約으로써 한국의 독립을 맹약하고 이를

137) 『騎驢隨筆』, 126~128쪽 : 國家報勳處, 『獨立有功者功勳錄』 10, 411쪽 재인용.

138) 「第一回 李麟榮問答調書」, 727쪽.

139) 國家報勳處, 『獨立有功者功勳錄』 10, 408~412쪽 참조.

140) 오영섭, 앞의 논문, 2001, 53쪽.

세계에 聲明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대를 해산하고 우리 황제로 하여금 강제 양위케 하는 등 특히 우리나라를 빼앗고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려 하였다. 이에 의병을 일으켜 그들을 이끌고 상경함으로써 統監과 詰談하려 하였다. 만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비록 힘이 미치지 않더라도 결단코 먼저 일본인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나라를 망치려는 不忠不義의 역신 宋秉峻·李完用·朴齊純·任善準·權重顯·李址鎔 등 (매국적신)을 살육하고 우리가 신용하는 인물과 가능하면 나도 그 일원으로써 정부를 조직하여 일본인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을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¹⁴¹⁾

그리고 1908년 3월 체포된 이인영의 참모장인 金燾도,

이인영은 강개비분한 태도를 보이며 한국은 오직 名義뿐으로 그 국가의 실권은 모두 일본에게 탈취당하기에 이른 것은 필경 五賊七奸의 處爲이라 憤懣하고 하면서 우리 의병은 彼等の 일파를 섬멸하고 국권을 회복한 후 의병 중에서 인물을 선임하여서 정부를 조직할 企望이라고만 放言하여 自若하였다.¹⁴²⁾

라고 하면서 이인영의 거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였다. 즉 이인영의 거의 목적은 일제 통감부를 굴복시키고 한일협약의 체결을 주도한 오적칠간의 매국

141) 金正明, 『韓國獨立運動』 I, 東京, 原書房, 1967, 37~38쪽.

142)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19, 1990, 129쪽.

노를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또 을사늑약과 정미조약을 파기시키고 의병 중에서 신망이 높은 인물을 선임하여 정부를 조직함으로써 조선의 자주독립을 천명하려는 것이었다.

이인영은 심문을 받을 때에도 조금도 굴복하는 기색 없이 일본인들을 준엄하게 꾸짖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에 감명 받은 일본인들이 그를 義士라고 생각하며 각별히 예우하였다.¹⁴³⁾ 그는 심문조서 작성이 끝날 무렵 최후진술을 권하는 일본인들에게,

나는 국가를 위하여 창의하여 충군애국의 정신은 물론 나의 誠意로 이를 받기시킨 것이다. 世事는 뜻대로 되지 않고 또 親喪을 당하여 얼굴도 拜見치 못하고 忠孝 공히 죄인으로 천지에 몸 둘 바가 없게 되었다. 이 이상은 죽을 수밖에 없다. 처분을 기다릴 뿐이다.¹⁴⁴⁾

라고 하며 자신의 굳센 독립의지와 충효정신을 밝혔던 것이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양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한·일간 평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동양평화론이 담긴 다음과 같은 한시를 남겼다.¹⁴⁵⁾

밝고 밝은 해와 달이 中洲에 걸렸는데
온 세상의 바람과 물결이 넘쳐 흘러드네

143) 宋相燾, 『騎驢隨筆』, 129쪽.

144) 「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42쪽.

145) 오영섭, 앞의 논문, 서대문구청, 2001, 55쪽.

도요새와 썩조개는 어찌 그리 서로 다투는가
西洲가 힘도 안들이고 그 둘을 잡아 가겠네¹⁴⁶⁾

그러나 이인영은 1909년 8월 13일 京城지방재판소에서 교수형을 받고 동년 9월 20일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하였다.

3) 許 蔭

한말 의병장 왕산 허위(1854~1908)는 경북 선산군 구미면 임은리 출신의 유생으로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등 일제의 침략으로 국난을 당하자 의병을 일으켜 구국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1899년 이후 신학문을 접하면서 자주적인 개화사상을 수용하여, 종전의 춘추대의론을 명분으로 봉기하였던 의병투쟁을 자주적 민족보존과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의병으로 확대하여 전개하였다. 즉 허위는 前期에는 金山義陣의 의병장으로서 활약하였고 국왕의 詔勅에 의해 의병을 해산한 후에는 정부요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엄격한 관직수행을 통해 구국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에 일제는 그를 대표적인 배일파의 중심인물로 인식하고 있다.

허위는 경상북도 서산군 臨門洞에서 출생하여 知禮郡에 거주하였다. 그 경력은 유생 출신이며 일찍이 議政府叅贊의 요직에 있었으므로 그 이름이 儒生·兩班 사이에 널리 알려졌고 또 중하게 여겼다. 그러다가 자기의 의견이

146) 義兵總大將 李麟榮氏 略史(續)」, 1909년 8월 1일. “分明日月懸中洲 四海風潮濫○流 蚌鷸緣何相持久 西洲應無漁人收”

용납되지 않으므로 관직을 사퇴하고 돌아온 후 향시 경상남북·전라남북·강원제도의 유생들과 기맥을 통하여 크게 인심을 수습하는데 노력하고 거침 없이 排日의 언동을 하며 통감정치를 비방하여 은연한 가운데 배일파의 중심인물이 되었다.¹⁴⁷⁾

이렇듯 허위는 정계에서 은퇴한 뒤에도 일제의 한국침략이 본격화되면서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자 軍事長으로서 이인영과 함께 본격적으로 서울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여 모든 임무를 허위에게 일임하고 귀향하게 되자, 의병통합군의 총지휘권을 갖게 된 허위는 서울 진공작전을 개시하여 1908년 1월 말 우선 300명의 선발대를 이끌고 동대문밖에 도착하였다. 그는 일본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은 물론, 각국 영사관에 통문을 돌려 일제 침략의 불법성과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알렸다.¹⁴⁸⁾

하지만 후속부대가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여기에서 전투력이 미치지 못하여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¹⁴⁹⁾

허위는 다시 국권회복을 위한 대규모 의병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1908년 4월 21일 이강년·이인영·유인석 등과 함께 전국 각지에 통문을 발송하여 의병항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동년 5월 일제 통감부에 大皇帝를 복위할 것, 외교권을 還歸시킬 것, 통감부를 철거할 것 등의 내용을 요구하는

14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資料集』 3, 1971, 572쪽. 1908년 10월 1일 경상북도 관찰사 朴重陽이 내부 경무국장 松井茂에게 보낸 의병투쟁 상황 보고서인 「暴徒史編輯資料」 참조.

148) 이현희, 「許蔭의 義兵鬪爭과 西大門刑務所」, 『義兵戰爭과 西大門刑務所』, 서대문구청, 2002, 76쪽.

149) 『大韓每日申報』 융희3년 7월 30일자.

한편¹⁵⁰⁾ 13도 의병연합부대가 다시 한 번 서울진공작전을 시도하여 성공한 후 실현하고자 하였다.¹⁵¹⁾

그러나 허위는 제2차 서울진공작전을 구상하던 중 일제의 고문을 이기지 못한 의병의 실토로¹⁵²⁾ 오오타(太田) 일본군 헌병대위 이하 40명의 일본헌병대의 급습을 받고 1908년 6월 11일 체포당하였다.¹⁵³⁾

체포된 후 허위는 1908년 6월 17일 서울로 이송되었는데 그 과정에 있었던 오오타(太田) 일본군 헌병대위의 취조에서

한국의 부흥을 꾀하는 이유는 결코 한국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실은 동양 평화에 입각해서이다. 만일 일본이 한국을 병탄한다면 중국은 필히 일본을 능멸할 것이어서 중일양국의 교의는 원만치 못할 것이니 어떻게 동양평화를 유지하겠는가. 그러므로 먼저 일본은 성심성의껏 한국을 돕고 다시 진심으로 중국을 돕는다면 이에 일본은 맹주로서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오늘 내가 한국의 부흥에 힘을 다하는 것은 실로 세계의 대세를 보고 일본을 위해서나 또는 한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오늘 잡혀가는 욕을 당한다고 해서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다. 바라건대 하루속히 京城에 가서 일본 당국의 대관에게 이 징표를 말하겠으며 만일 기회가 된다면 일본 정부의 당사자에게 극언할 생각이다.¹⁵⁴⁾

15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융희2년 5년 19일.

151) 이현희, 앞의 논문, 2002, 78쪽.

152) 小森德治, 『明石元二郎』 上, 소화3년, 427쪽.

153) 『황성신문』, 1908년 6월 19일자.

154) 小森德治, 위의 책, 소화3년, 428~429쪽.

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의병투쟁은 한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동양평화를 위해서임을 당당하게 표명하였다. 이처럼 그는 한국의 안보는 동양평화와 직결되어 있으며 양자는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 그의 구국사상에는 동양평화론이 전제되어 있었다.¹⁵⁵⁾

이러한 동양평화론은 허위가 순국하기 직전 자식들에게 남긴 유서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너희들은 우둔하기가 나보다 심한 것 같으니 지금의 시국과 정책을 말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에 박아한 대군자를 만나 학업을 닦아서 그 빼내지 못한 것을 빼내고 밝혀서 세상을 세상을 위한 좋은 양재가 되어 면회아국권하고 유지 동양평화하게 된다면 후생이 두렵다는 것을 어찌 알게 될 것이 아니냐.¹⁵⁶⁾

허위는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된 뒤 일본헌병사령관 아카시 켄지로(明石元二郎)의 심문을 받았다. 아카시는 허위의 경력과 이력, 그리고 忠君愛國과 동양평화에 대한 탁월한 경륜, 한학과 역학에 대한 깊은 조예 등을 알고 모든 백성들의 사표라 하여 마음속으로 공경하고 복종했다.¹⁵⁷⁾

『旺山許蔦先生舉義事實大略』¹⁵⁸⁾에는 허위의 심문과 사형집행과정의 상세

155) 이현희, 앞의 논문, 2002, 80~81쪽.

156) 『왕산선생문집』 권1, 331쪽.

157) 國家報勳處, 『獨立有功者功勳錄』 1, 1971쪽.

158) 『旺山許蔦先生舉義事實大略』은 許蔦의 族孫되는 許馥이 편술한 것인데 왕산의 舉義 사실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신빙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獨立運動史資料集』 2권에 국역되어 있다.

히 기록되어 있다. 우선 서대문감옥에 투옥되어 심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는 의병을 일으킨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후 한 달이 넘어 서대문감옥에 옮겨 가두고 일본 사람 明石元二郎少將이 警務總監이라는 자를 데리고 와서 직접 심문했다. 이에 선생은 明石元二郎과 조용히 문답을 하게 되었다.

선생이 말하기를, “일본이 한국의 보호를 부르짖는 것은 입뿐이요, 실상은 속으로 한국을 멸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앉아서 볼 수가 없어서 적은 힘으로나마 義兵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문답하는 동안에 明石은 國土로 선생을 대접하여 예의를 차리는 동시에 동정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다. 그는 허위 의병장의 목숨을 구하려고 統監에게 청했으나 이를 수 없었다.¹⁵⁹⁾

이렇듯 체포되어 심문당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의기를 굽히지 않고 일체의 침략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그러나 결국 허위는 사형선고를 선고받았고 그의 가족들에 의해 상고가 신청되었으나 기각되었다.

1908년 9월 27일 허위 의병장의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그는 서대문감옥에서 씩어도 좋다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장렬하게 순국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資料集』 2, 1971, 243~244쪽.

이 해 9월 27일 정오에 선생은 絞首臺에 올라갔다. 그러나 선생은 神色이 변치 않고 말이 태연하다. 형이 집행될 때 倭僧이 주문을 외워 冥福을 빈다. 그러나 선생은 꾸짖기를, “忠義의 귀신은 스스로 마땅히 하늘로 올라갈 것이요, 혹 지옥으로 떨어진 대도 어찌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 복을 얻으랴.” 하였다.

倭官이 묻기를, “남길 말이 있느냐?” 하자 선생은 말하기를, “大義를 펴지 못했는데 유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였다.

또 묻기를, “시체를 거들 사람이 있는가?” 하자, “이 감옥에서 썩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생은 큰소리로, “빨리 나를 죽여라. 빨리 나를 죽여라.” 하면서 티력만큼도 눈썹을 찡그리는 빛이 없었다.¹⁶⁰⁾

허위는 1896년 춘추대의론에 입각하여 전기 의병항쟁을 전개한 이래 국권회복을 위해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여 순국할 때 까지 일생을 곤은 관리이자 의병으로써 부국강병과 국권수호를 위해 헌신하였다.

따라서 그의 구국사상은 계승되어 순국한 후에도 그의 부하들에 의하여 의병투쟁은 계속되었고 이후 민족독립투쟁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¹⁶¹⁾

한편 『백범일지』에 허위와 관련된 부분이 보이는데, 김구가 안악사건으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입감하면서 ‘其時 서대문감옥은 京城감옥이라고 문패를 붙인 때이고 수인의 총수 2천명 미만에 대부분이 의병이요 其餘는 소위 잡범이다. 옥중의 대다수가 의병이란 말을 들은 나는 심히 다행으로 생각하였다.’¹⁶²⁾ 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러나 김구는 얼마 되지 않아 서로 자기가 어느 의병의 참모장이니 하며 의병 두령 행세를 하고 그 마음 씩씩이와 행동거지가

16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71, 245쪽.

161) 이현희, 앞의 논문, 2002, 86쪽.

162) 김 구, 윤병석 직해, 『백범일지』, 집문당, 1995, 184~185쪽.

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통탄하였다.

특히 13호방에 같이 있던 한사람이 허위 밑에 있던 참모장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것을 보고 저런 자가 참모장이었으니 허위가 거의에 실패하였던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다고 안타까워하였다.¹⁶³⁾ 그렇게 허위 선생을 그리워하며 김구는 허위 의병장의 사형일로부터 自來井이 廢井된 서대문감옥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옥중에 전래하는 이야기가 있으니 이강년 선생과 허위 선생은 왜적에게 피포하여 신문과 재판을 받지 않고 就刑하기까지 왜적을 타매하다가 순국한 후에 서대문감옥에서 사용하던 自來井에 허위 선생 就刑日로부터 정수가 적탁하여 廢井되었다 하더라. 그 같은 霜雪의 절의를 聞思한즉 자괴하기 끝이 없다. 정신은 정신대로 保重하지마는 왜놈의 牛馬와 야만의 대우를 받는 나로서 당시 의병들의 자격을 평론할 용기가 있을까? 지금 내가 義兵囚를 무시하지마는 그 領袖인 허선생 이선생의 혼령이 나의 눈앞에 출현하여 엄절한 질책을 하는 듯싶다.¹⁶⁴⁾

이를 통해 허위의 의병장으로서의 위상을 알 수 있다.

4) 文泰洙

문태수(1880~1913)는 경남 안의 출신으로 원래 기골이 장대하고 재주가 탁

163) 김 구, 앞의 책, 집문당, 1995, 185~186쪽.

164) 김 구, 위의 책, 집문당, 1995, 186쪽.

월하여 일찍부터 글을 배워 문리를 통달하고 병서를 익혔다. 그는 1905년부터 의병을 모집, 學義하여 무주 덕유산을 근거지로 영남·호남 및 호서 일대에서 항일전을 벌여 일제를 처단하고 충기를 노획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1911년 8월 조국을 일으키고자 6년 동안 혼신을 다해 끈질긴 항일투쟁에 몸을 던졌던 문태수는 從妹 林鍾斗와 친구 曹漢基의 계략으로 다음과 같이 체포되었다.

문태수는 1912년(壬子) 8월 추석을 맞이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추석을 지내면서 잠시 쉬고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문태수와 잘 알고 지내오던 친구 林鍾斗와 曹漢基가 문태수를 찾아왔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서 함께 주막에 들러 술을 한잔하게 되었다. 이것이 문태수의 의병활동의 종말일 줄이야 문태수 자신이 꿈엔들 알았겠는가. 임과 조는 당시 安義郡 西上面長 崔永乃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로서 문태수를 생포하면 후한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임과 조는 주막으로 문태수를 유인하여 술을 권하여 취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철매로 문태수의 양쪽 무릎과 다리를 내리쳐 뼈를 으깨어 부수었다. 여기서 문태수는 그들에게 결박되어 일본 헌병대로 압송되었다. 때가 1911년 음력 8월 17일 오후 2시경이었다.¹⁶⁵⁾

즉 문태수가 고향에 돌아오자 어렸을 때부터 죽마고우요 이웃에 사는 從妹인 林鍾斗와 친구인 曹漢基가 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인했다. 그리고 취기가 돌기 시작하자 임종두가 뒤로 돌아가 문태수를 끌어안고 조한기는 미리 준비한 쇠매로 장군의 양쪽다리를 쳐서 碎骨 시켜놓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군사들

165) 『全北地域 獨立運動史』, 光復會全羅北道支部, 86~87쪽.

이 방으로 들어와 문태수를 결박하였다.

賊魁 文泰洙는……討伐隊의 索嚴重함을 因하여 跡을 隱匿하고 去八月 安義郡 西上面 靈塔洞 靈覺寺에 潛伏하였는데 同面面長이 此를 知하고 面民으로 하여금 文泰洙를 捕縛하여 同郡憲兵分遣所에 送致한 結果로 其筋에서 面長以下의 人民에게 對하여 賞與하였다더라.¹⁶⁶⁾

이렇듯 가장 믿었던 친구들이 조국을 배반한 일제의 走狗가 되어 문태수를 체포함으로 국권회복의 큰 뜻은 좌절되고 말았다.¹⁶⁷⁾

문태수는 체포당시 양다리가 부러지고 나무로 손바닥을 꿰어 묶여서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군에게 들것에 실려 헌병분견소에 호송되었다. 체포당시 마을 주민들은 문태수의 비참한 모습을 애통해 하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다리가 부러져 들것에 실려 내려가면서도 새들(鳳田)마을 앞을 지나갈 때는 일본군에게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하여, 그 해 대구감옥에서 순국한 全聖範 의병장의 무덤을 멀리 바라보면서 명복을 빌어주었다고 한다.¹⁶⁸⁾

호송하던 일본군이 왜 폭도행위를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남의 나라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너희가 폭도가 아니냐 어찌 조국을 위해 싸우는 자가 폭도이겠느냐고 오히려 꾸짖었다.

문태수는 안의에 주둔한 헌병 분견대에서 바로 진주로 호송되었고, 그 후

166) 『慶南日報』, 1911년 10월 27일자.

167) 金喆洙, 『義兵大將 文泰瑞傳』, 1962.

168) 鳳田마을의 90세 全相模 노인의 증언 : 金聲鎭, 『文泰瑞研究』, 咸陽文化院, 1997, 334쪽 재인용.

진주에서 대구감옥으로, 다시 대구감옥에서 서대문감옥으로 이송되었다

八月 十七日에 土雨滿空하고 日氣甚寒에 白日이 無光하더니 其夜毒霜이 下降하다. 惡人의 凶計를 豈知하리요 公은 不知凶計하고 本宅에 到着하얏더니 公의 四寸妹夫 林鍾斗 同知友 曹漢基의 擄人에 沒하야 造山村 酒店에 往하얏더니 西上面長 崔永乃의 凶計를 不免하고 右日 下午二時頃에 被害하야 倭賊에게 捕捉되어 晉州로 卽入한바 되었다. 凶人則 介介力士이라.

時에 倭賊이 公을 結縛하야 安義邑에 至하야 安義十二面長을 會合하야 問其可否則 皆默默不答인데 其中 渭川面長 慶汝文 答에 惟我 三千里運이 永絶이라고 憤痛한則 倭賊이 慶汝文의 誠義를 敬服하였고 晉州에 到着하야 自復하라 하되 不復한則 不得已하야 大邱로 移轉하니 大邱에서도 亦然則京城으로 移轉하야 京城未決所에서 時運이 不幸하야 癸丑 二月初四日 別世하였다.¹⁶⁹⁾

이렇듯 일제가 문태수를 바로 진주로 호송한 것은 탈출의 염려와 다른 의병들이 구출하기 위해 습격해 올 것에 대비하여 한시 바빠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문태수를 서울까지 옮겨야 했던 이유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가 거물급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다루기 곤란했던 것인지 아니면 대구에서도 심문받기를 거부하고 서울로 가기를 원했는지 자세한 심문기록을 찾을 수 없다.

문태수는 부러진 양다리의 고통과 악랄한 일제에 의해 갖은 고문을 당하였으나 늠름한 모습을 잃지 않았고 의병장다운 기개를 보였다. 그는 감방에서 운신도 못하는 몸으로는 더 이상 살아있어도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없음을 절

169) 「義兵大將文公家狀」, 1957丁酉, 南平文氏門中.

감하고 1913년 2월 4일 34세의 젊은 나이로 옥중에서 자결 순국하였다.

문태수가 대구감옥에서 순국했다는 기록도 있고 一說에는 일본 히로시마에 끌려가서 사형당했다고도 하지만 그것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¹⁷⁰⁾ 文泰瑞 家狀·文泰瑞 行狀·咸陽郡誌¹⁷¹⁾·獨立有功者功勳錄¹⁷²⁾ 등 대부분의 자료들에서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료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들도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으며, 또 다른 증언에 의하면 문태수의 遺骸를 선뜻 일본군 앞에 나서서 인수할 사람이 없어 형리들이 시신을 서울 공덕동 뒷산에 묻었다고 한다. 그 뒤에 그의 숙부가 나무에 位牌를 써서 무덤 앞에 묻은 후 장소를 표시해 두었으나 일제 36년 동안 후손들이 사망으로 흩어지게 되어 무덤을 찾지 못하고 忘失되었다고 한다.¹⁷³⁾ 그 후 고향에서 假墓로 안장했다가 1963년 국립묘지로 移葬했다.

문태수의 조국애와 혁혁한 무력투쟁의 성과, 우국충정의 정신은 우리 민족사와 후손들에게 큰 힘이 되고 교훈이 될 것이다.

5) 李殷瓚

李殷瓚(1878~1909)은 강원도 원주군에서 출생하였다.

1907년 8월 일제에 의한 강제 군대해산 이후 의병투쟁이 격렬해지면서 서울 진격을 위한 연합의병체인 '13도 창의대'가 형성되었는데 그 중심적 역할을 한

170) 金聲鎮, 앞의 책, 咸陽文化院, 1997, 337쪽.

171) 咸陽郡誌編纂委員會, 『咸陽郡誌』, 1984, 112쪽.

172) 國家報勳處, 『獨立有功者功勳錄』 1, 1986, 601쪽.

173) 2000. 8. 15일 오후 2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자료실에서 문태수 의병장의 후손 문기배 증언 녹취.

인물이 이은찬이었다.

그는 이인영을 찾아가 기병할 것을 권유하면서 총대장이 되어 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이인영은 원주로 출진하여 關東倡義大將에 오르게 되었고 사방에 격문을 띄워 많은 호응을 받고 일대에서 위세를 떨쳤다.

그 후 이은찬은 자신의 의진을 거느리고 포천·양근 방면으로 이동하여 임진강 유역에서 활약하던 許薦와 손을 잡고 유기적 전략을 전개하는 등 크게 위세를 떨쳤으며 농민출신 의병장 金秀敏 의진과도 협력하였다.

1908년 말경 경기 의진의 주요 의병장이 처형되자 이 지역의 항일운동은 보다 격화되었다. 1909년 임진강 유역은 의병활동의 중심지가 되어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200명 내외의 의병집단이 운집하였다.

이들은 양주·포천·漣川·朔寧·金川·白川·延安을 연하는 선내 및 해상 도서에서 보다 굳센 게릴라 전술로 일제를 기습 공격하여 수차례 큰 타격을 주었다. 바로 이때 총대장 임무를 수행한 이가 이은찬이었다.¹⁷⁴⁾

따라서 당시 지방민들은 이은찬을 신뢰하며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李殷瓚은 강원도 원주군 부흥사면의 儒生으로서 천성이 영리하고 또 才氣가 있어 언제나 정의를 표방하여 교묘하게 민심을 모았다... 그는 民意를 받아들여 양식 및 군자금 같은 것도 직접 細民에게 요구하지 않고 각 면·동장들에게 통고하여 일반에게서 징수하게 하고, 구입품에 대한 대금 지불 등도 한 번도 그 기일을 어긴 적이 없었다. 또 군표와 유사한 證票를 발행하여 그것으로 물자와 바꾸어 후일 반드시 통화와 교환하는 등 극력 민심수습에 부심하였기 때문에 완미한 농민들은 그것을 환대하여 토벌대에게 그들의 행동

17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 1, 1970, 563쪽.

을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보초가 되어 폭도 소제지의 주위를 경계하고 혹은 밀정이 되어 관헌의 행동을 통고하는 등 음으로 다대한 편의를 주었다¹⁷⁵⁾

그러나 이은찬은 국내 의병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만주 간도지방으로 항일운동의 거점을 옮겨 군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때 서울의 朴魯天·申左均 등은 이러한 이은찬의 계획을 탐지하고 趙壽淵을 보내 의병활동의 군자금과 군량비용의 지원을 미끼로 그를 유인해 내도록 하였다.

이은찬은 일본군의 함정에 빠져 1909년 3월 31일 체포되었다. 체포된 그는 일본 검사가 의병을 일으킨 이유를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검 사 : 당신은 왜 반역했는가.

이은찬 :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빼앗았으니 우리는 거의 하여 나라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 어찌 반역이라 할 수 있겠는가.

검 사 : 당신의 나라는 옛날에는 청국을 섬기다가 지금은 일본을 섬기게 되었다. 당신의 이와 같은 거사가 어찌 불가하다 하지 않겠는가.

이은찬 : 당신들은 개명인을 자처하고 있지만 狗皮를 입은 자들이다. 우리나라가 청국을 섬겼다 하더라도 청국은 조금도 우리의 국권과 강토를 침해하지 않았다. 다만 일년에 한번 修信使를 파견한데 불과하다. 당신들은 우리 국권을 박탈하고 생명을 살육하고 우리 강토로 하여금 하나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너희들을 어찌 청국에 비길 수 있겠는가.¹⁷⁶⁾

175) 朝鮮駐劄軍司令部 編, 『朝鮮暴徒討伐誌』, 1913, 151~152쪽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資料集』 3, 793~794쪽.

이러한 당당한 답변으로 이은찬은 재판정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싸우기를 대소 40여 차례 하였으며, 너희 병정 470여명을 참살 하였으니 빨리 나를 죽여라. 나의 거의는 홀로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양평화를 위함이니 오늘에 이르러 어찌 자신의 榮辱을 생각하라.¹⁷⁷⁾

이은찬은 京城지방법원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우국충정의 옥중 詩를 남긴 채 1909년 6월 2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한가지 오얏나무로 배를 만들어
蒼生을 건지고자 바닷가에 닿았더니
寸功도 못 세우고 내가 먼저 빠졌구나
동양의 영구평화를 그 누가 계책하리.¹⁷⁸⁾

176) 宋相燾, 『騎驢隨筆』, 128~129쪽.

177) 박은식, 남만성 율김, 『韓國獨立運動之血史』 上, 서문당, 57쪽 : 國家報勳處, 『獨立有功者功勳錄』 1, 844쪽.

178) 박은식, 남만성 율김, 위의 책, 서문당, 57쪽. “一枝李樹作爲船 欲濟蒼生泊海邊 寸功未就身先溺 誰算東洋樂萬年”

6) 金秀敏

金秀敏(1857~1909)은 농촌 출신의 용장으로 동학혁명에 가담하여 활약하였기 때문에 東學黨으로 지목을 받아오다가 1907년 의병을 일으켜 13도 총 도독이 되었다.

특히 그는 사격술에 능한 백발백중의 명수였고 화약과 탄환까지 스스로 제조할 줄 알아 의진의 명장으로 손꼽혔으며 그 휘하에는 많은 농민들이 모여들어 한때 2천명을 헤아리게 되었다.¹⁷⁹⁾

김수민 의병부대의 활약상을 일본군은 그들의 작전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다

전년 경기도·황해도 접경에 있는 卒浪里 부근에서 봉기한 賊徒의 수괴 金秀民은 11월 17일 개성 수비대에 격파되어 그 후 悅隱洞 부근에 은신하여 교묘하게 양민을 선동, 세력 확대에 노력하고 있었으나, 본년으로 들어서자 도당 약 3백이라 칭하고, 20내지 30의 소집단이 되어 각지를 횡행하였다. 특히 4월 16일, 九化場 헌병분견소를 습격하고, 병기 탄약을 횡탈함을 비롯하여 長湍·兩合里·豊德 부근에 출몰하여 약탈을 자행하였다. 그래서 이를 토벌키 위하여 長湍, 九化場·兩合里·開城·豊德의 각 수비대와 헌병 등이 협력하여 실시, 수차 그 소집단을 쫓아내려 약간의 손상을 주었으나, 아직 그 뿌리는 뽑지 못했다.¹⁸⁰⁾

즉 김수민은 경기도 장단으로부터 황해도 서흥 일대에 이르기까지 임진강을

179)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各地義兵의 略歷」.

180) 朝鮮駐劄軍司令部 編, 『朝鮮暴徒討伐誌』, 1913, 119~121쪽 참조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資料集』 3, 746쪽.

넘나들면서 신출귀몰의 게릴라전을 전개하였다. 그의 부대가 능숙하게 게릴라전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농민군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부상을 조직하여 적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데 있다.

그 후 김수민 의진은 본래의 근거지에서 점차 남하하여 1908년 10월 강화도를 기습 공략하였다. 이에 놀란 일제는 용산의 일군 보병 제 13연대 1소대 30명을 강화도로 급파하여 동년 10월 30일 강화에 상륙시켰다. 이때 鼎足山 傳燈寺에 웅거하고 있던 약 100명의 의병들은 접근해 오는 일본군과 1주일 동안 격전을 벌였고 이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¹⁸¹⁾

일제는 31일에 다시 35명을 증파하였고 합진한 일본군이 11월 1일 廣城으로 재상륙하여 전등사로 돌격하였으나 그 어느 곳에서도 김수민 의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군은 김수민 의진의 작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를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軍術에 능하여 이산·집합이 또한 교묘하고 궁지에 몰린 때도 한두 차례가 아니었으나 능히 빠져나가 지금도 부하를 곳곳에 흩어져 있게 하고, 자기는 적은 부대의 장수로서 출몰 배회하므로 그 체포가 용이하지 않다.¹⁸²⁾

일제는 강화도 의병들을 소탕시킬 목적으로 대 수색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개성 수비대의 30명, 용산 주차 일군 보병 부대 70명, 海州 수비대 34명,

181) 趙東杰, 『義兵들의 抗爭』,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2, 327쪽.

182) 朝鮮駐劄軍司令部 編, 위의 책, 1913, 119~121쪽 참조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512쪽.

延安 수비대 7명 등을 동원하여 이들을 8隊로 나누어 3일 동안 의병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수색전은 동년 11월 26일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첫날 약 20명의 김수민 의진의 유격대원들은 亭頭洞에 매복해 있다가 일본군에게 집중 사격을 가하여 7명 중 4명을 쓰러뜨리고 서북방으로 후퇴하였다. 이때 의병들은 이미 대부분 배에 승선하여 황해도와 주변 섬으로 이동한 지 오래되었다.¹⁸³⁾

김수민은 1909년 2월 積城에서, 그리고 3월에는 강원도·충청도·황해도 일대에서 延基羽·河相兌·李鎭龍·韓貞萬·鄭用大 등과 더불어 활약하였다.

그 후 김수민은 일본군의 정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병투쟁을 전개할 목적으로 車夫로 가장하고 서울에 잠입하였다가 체포되어 서대문감옥에 투옥되었다.¹⁸⁴⁾ 그는 1909년 10월 14일 교수형을 선고 받고¹⁸⁵⁾ 京城공소원에 공소하였으나 동년 11월 22일 기각되어¹⁸⁶⁾ 사형 순국하였다.

그의 휘하에는 많은 평민들이 운집하여 의병투쟁을 전개했는데, 그 중 李仁植¹⁸⁷⁾·金巨福¹⁸⁸⁾·李昌根이 유형 5년¹⁸⁹⁾, 崔起西가 징역 7년¹⁹⁰⁾, 全福奎가 유형 15년¹⁹¹⁾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83) 國家報勳處, 『獨立有功者功勳錄』 1, 1986, 538쪽.

18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 1, 1970, 562쪽.

185) 판결 융희3년 刑 제61호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資料集』 別集1, 1974, 76쪽.

186) 판결 융희3년 刑 제341호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74, 77쪽.

187) 판결 융희2년 刑 제364호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74, 28쪽.

188) 판결 융희2년 刑 제350호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74, 49쪽.

189) 판결 융희2년 형공 제21호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74, 70쪽.

190) 판결 융희3년 刑 제305호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74, 114쪽.

191) 판결 융희3년 刑 제39호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74, 86쪽.

7) 盧應奎

盧應奎(1861~1907)의 본관은 광주로 경남 안의군 안의면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한 재질을 타고났으며 전통적인 유학공부에 힘썼다.

1895년 10월 11일 林最洙·金在豊 등이 친일정부의 대신들을 처단하려는 의거가 일어나자 노응규도 그들과 약속하고 경복궁 修政殿에 머물고 있던 대신들을 제거할 계획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친위대의 공격으로 중도에 좌절되고 말았다.

1896년 1월 노응규는 다시 안의에서 거의하여 관리 수십 명을 처단하였고, 국왕에게 다음과 같은 「倡義疏」를 올렸다.

…중략… 節士는 목숨을 경솔히 버리지 않으며 의리를 붙잡는 것은 군자의 의무이옵기로 적개심을 이기지 못하와 고향 사람 鄭道玄·徐再起·朴準弼·林景熙 등과 더불어 사람을 모집하고 재력을 구하여 금월 초 7일에 晋州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1,2명의 관원을 배었습니다. 『春秋』에 이르기를 ‘亂臣 賊子 배어 죽이는 권리는 사람마다 가질 수 있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먼저 그 黨與를 처치해야 한다’ 하였으니 소위 왜놈은 난적의 괴수요, 소위 十大臣은 난적의 媒介요. 소위 감사 수령은 난적의 졸당입니다. 그 괴수 놈들이 전하의 위권을 탈취하고 그 매개자 노릇하는 놈들이 전하의 마음을 쬐먹고, 그 졸당 놈들이 전하의 총명을 현혹케 하여 마침내 나라를 망치고 몸을 망치는 지경에 이르러도 깨닫지 못하니 어찌 원통하지 않사옵니까? 어찌 애석하지 않사옵니까?

선왕의 정사를 崇奉하고 전하의 마음을 받들어 적의 무리를 섬멸한다면 백성의 마음이 물이 내리 쏟듯 할 것이니 그 형세를 누가 막으오리까?

라고 거의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면서 계속하여,

지금 세상에 처하여 만약 신의 오늘 같은 말이 없다면 만세라도 임금의 있을 수 없고, 또 신의 오늘 같은 의병이 없다면 한 세상에 임금이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당당한 5백년 예의의 나라로서 위급 존망의 즈음을 당하여 신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후일 史家가 만드시 붓을 들고 쓸 말이 없을 것이니, 이는 4천년 부모의 나라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오라 신이 어찌 감히 하나의 농사꾼으로 자처하고 편안히 앉아서 관망만 할 수 있겠사옵니까?

엿드려 바라옵건대 전하는 총명을 분발하시와 역적을 토벌하고 충신을 권장하여 사기를 격려하고, 짐승 같은 놈들을 몰아내고 도깨비 같은 놈들을 축출하여 변방의 방어를 견고히 하시고, 선왕의 의복이 아니면 입지 마시고, 구차하고 영악한 꾀는 털끝만큼도 가슴 속에 머물러 두지 마시고, 임금은 사직을 위해 죽는다는 것으로 몸을 유지하는 명맥을 삼으시면 자연 복구할 가망이 있을 것이오며, 西洋 여러 나라가 와 침범하고 함께 화친하자고 하는 일에 이르러는 그 전체를 신의 한 몸에 맡겨 주시면, 신이 비록 재주는 용렬하오나 3달을 넘기지 아니하고 군사는 칼날에 피를 바를 것도 없이 모두 저희 나라로 축출하고 선왕의 문물과 토지를 회복하겠사옵니다. 아뢰 말씀이 반도 못 가서 눈물이 비 오듯 하여 끝내 붓을 잡지 못하고 대략 미미한 정성을 바치옵니다.¹⁹²⁾

192) 盧應奎, 『愼庵集抄』, 「倡義疏」: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資料集』 3, 1971, 192~193쪽. 『愼庵集抄』는 노응규의 상소문들을 모아 놓은 것인데 1896년에 올린 「倡義疏」는 오직 春秋필법으로 亂臣賊子는 누구나 목을 베어야 한다는 논리적 전개와 또 弑后와 勒削을 뼈아프게 여겨 鄭道玄·徐再起 등이 몇몇 관리를 처단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는 글과, 또 임금께서 자기의 진언대로 들어 주시지만 한다면 칼에 피를 바르지 않고 능히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적은 글이다.

라고 하여 노응규는 국왕이 사직회복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앞으로 국왕을 위해 몸 바칠 새로운 결의를 피력하였다. 또한 사방에 격문을 돌려 민중들의 적극 참여를 호소함으로 십여 일에 수천의 의병들이 집결하였다.¹⁹³⁾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듬해 6월 노응규는 태인의 武城書院에서 수백 명의 동지들과 구국항일의 기치를 높이 들었으나 출동한 일본군의 탄압으로 해산하였다. 그러나 그는 충청·경기·전라 3도의 분기점인 충북 황간군 상촌면 직평에서 다시 擧義하여 총기와 화약을 모아 무장하고 2차에 걸쳐 20리 지점에서 일본군의 斥候隊를 괴멸시켰으며, 경부 철도와 일제시설을 파괴하였다.

이때 노응규는 황간 일대 전 주민들의 전폭적인 자진 협력을 받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전투를 전개할 수 있었다. 또한 상촌면 직평과 같은 지리적인 요충지를 전략 기지로 채택한 것은 그의 전략적 혜안이 뛰어났음을 알려주는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1907년 1월 21일 노응규는 京城진군을 계획하고 있다가 밀정에게 그 기밀이 누설되어 그의 수뇌 참모진과 더불어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된 후 서대문감옥으로 압송되어 검사의 탄압과 심문을 받았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의절을 빛냈다. 노응규는 동지들이 차입해 주는 私食 이외에는 일체의 官給食을 거절하다가 동년 2월 16일에 47세를 일기로 옥중 순국하였다.¹⁹⁴⁾

193) 황현, 『매천야록』, 202쪽 참조.

194) 國家報勳處, 『獨立有功者功勳錄』 1, 589~593쪽.

8) 南相穆

남상목(1976~1908)은 경기도 광주 출신이다. 1907년 7월에 경기도 용인군 용친곡을 중심으로 의병 50여명을 휘하에 두고 구식 총 40여 자루와 서양 총 10여 자루를 무기로 항일운동에 투신하였다.

그 후 새로이 의병진에 참여한 宋柱祥·金泰東 등으로 하여금 의진에 종사시키고 姜春善은 後軍將, 李時永은 砲軍으로 진용을 재정비하고 난 뒤 음성 지역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으나 불행히도 분패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패전군 30여명을 이끌고 죽산의 七亭寺에 도달한 뒤 全奉奎 휘하에 있는 100여명의 의진과 진을 합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나서 안성으로 진격하였다. 다시 일본군과 접전하여 큰 승리를 거두니 항일투쟁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하였다.

남상목은 1908년 11월 판교에 살고 있던 가족을 만나러 가던 중 일제 앞잡이의 밀고로 인하여 ‘느릿골’이란 지역에 잠복해 있던 일본헌병에게 체포당했다. 그는 모진 고문을 받고 서대문감옥에 수감되어 복역하던 중 1908년 11월 4일 고문의 휴유증으로 생긴 장과열로 인하여 옥중 순국하고 말았다.¹⁹⁵⁾

2. 抗日義兵의 西大門刑務所 投獄實態 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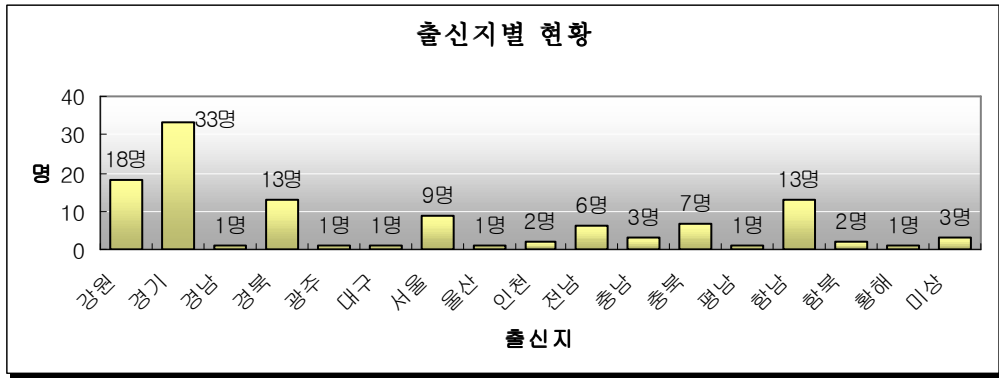
현재까지 자료 수집을 통해 발굴한 의병투쟁 관련 서대문형무소 순국선열 및 투옥인물은 총 115명이다. 서대문형무소가 1908년 설립되었기 때문에 1908년 이후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던 항일의병으로 한정하였다.

195) 國家報勳處, 위의 책, 579쪽.

명단 선정기준은 심문조서와 판결문, 그리고 당시 신문기사와 관보 등의 기록이 남아있는 분들로 한정했다. 그 명단은 <부록-자료 6>과 같다.

단, 한국 재판소의 3심 4급제(고등법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 사법조직은 1912년 3심 3급제(고등법원, 복심법원, 지방법원)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1908년 1월 1일부터 1909년 10월까지 존속한 대심원이¹⁹⁶⁾ 있었기 때문에 <표 IV-1>의 ‘판결 및 옥고’ 부분을 보면 같은 1심 판결기관이라도 여러 법원명이 등장한다. 따라서 혼란의 여지가 있어 나름대로 고심을 하였으나 원 판결문의 기록대로 옮겨 정리하였다. 대신 [통계 IV-2]의 ‘법원별 현황’을 1심·2심·3심으로 각각 나누어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통계 IV-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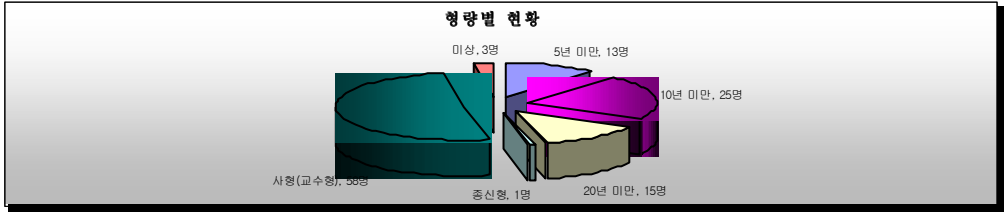


<표 IV-1>에 따라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된 항일의병의 ‘출신지별 현황’[통계 IV-1]을 보면 서울 경기 44명, 강원도 18명, 충청도 10명, 전라도 7명, 경상도

196) 대한제국의 최고법원인 대심원은 1909년 7월 12일 기유각서에 의해 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가 박탈되면서 동년 11월 1일 통감부 고등법원에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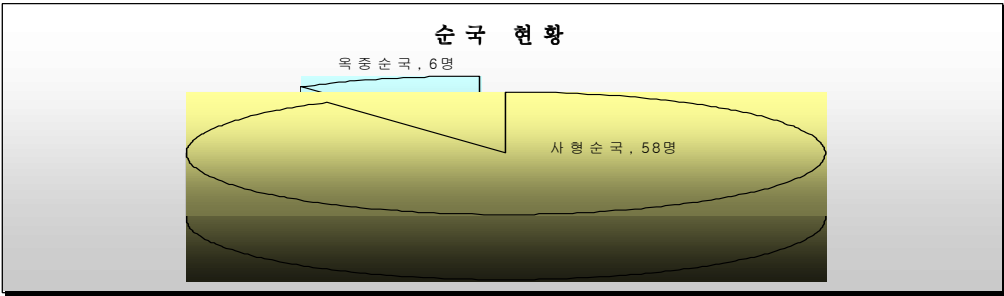
서 재판을 받으려면 서대문감옥으로 이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통계 IV-3]



다음 ‘형량별 현황’[통계 IV-3]을 보면 사형(교수형)이 58명으로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5년 이상 장기수도 36%나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5년 미만의 형량을 받은 의병은 단지 11%에 그쳤을 뿐이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의 항일의병들이 일본군과의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국권수호운동을 전개하여 얼마나 혁혁한 전과를 올리며 일제에게 큰 타격을 입혔는지 알 수 있다

[통계 IV-4]



특히 ‘순국 현황’[통계 IV-4]을 보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한 115명의 의병 중 56%인 64명이 순국하여, 체포된 2명 중 1명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즉 58명의 항일의병이 사형장에서 교수형을 당하여 순국하였고 나머지 6명도 옥중에서 자결순국 하거나 일제의 잔혹한 고문으로 옥·병사 한 것이다. 이는 한국독립운동사의 첫 장을 열어간 항일 의병들의 격렬했던 활약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의병투쟁은 거족적인 항일민족운동이었다. 전직 관료·향리층·해산 군인·지방군인·농민·상인·동학군·활빈당 등 실로 다양한 세력들이 우후죽순처럼 봉기하여 대규모 연합 의진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지위·신분·사상·지역의 차이를 극복하고 친일파와 일제를 물리치고 국가를 구하겠다는 충군애국론에 따라 거의하였다.

즉 일제의 침략이 점차 가열되는 가운데 우리 민족은 국가와 영토, 그리고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각기 중앙과 지방에서 총궐기하여 일제에 대항하였다. 그 가운데 일본군과 친일세력을 타도하고자 무장 봉기한 의병전쟁은 투쟁노선 면에서 가장 강렬한 항일운동이었던 것이다.

의병투쟁은 1910년 국권상실 후 러시아·중국 등지에서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의 인적자원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이 온갖 역경을 견뎌가며 장기간 치열하고도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신적인 원천을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의병투쟁은 한국민족운동사의 原型이요 한국독립운동사의 前史라고 평할 수 있다.¹⁹⁹⁾

항일의병의 활약은 일제 식민지 통치의 기반을 흔들고 민족적인 각성을 촉구하여 항일투쟁의 면면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한 크나큰 원동력이 된 것이다.

199) 金義煥, 『義兵抗爭史』, 博英社, 1974.

V. 西大門刑務所에 投獄되었던 105人事件 關聯者들의 獄中鬪爭

105인 사건²⁰⁰⁾은 일제가 국내 반일 민족세력을 단숨에 제거시킬 의도에서 조작, 날조한 허구의 사건이며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700여명의 피의자들이 훗날 항일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의 지도력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이 당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여기에 연루되었던 애국지사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는 점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의 조작과정에서 총독부 일경들이 자행한 반인륜적인 고문 실상이 날날이 공개되고 따라서 일제의 잔혹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것이다.

1910년 8월 한국을 강제 점령하여 식민지로 만든 일제는 민족독립운동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1910년 安明根 의사가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기회로 탄압의 구실을 삼고자 하였다. 곧 일제는 1910년을 전후하여 당시 국내에서 가장 활발히 국권회복운동을 펼치고 있던 新民會 회원들을 전멸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때문에 일제는 안명근 사건을 빌미로 하여 황해도 안악군을 중심으로 한 신민회 회원들을 대거 검거하였다. 이 당시 체포된 인사는 金九, 金庸濟, 李承吉 등 160여명이었다.

이어 1911년 9월에는 신민회가 주도하여 조선총독인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암살하려 하였다는 음모를 꾸며 전국에서 신민회 회원이 포함된 주

200) '105인 사건'에 관련된 연구로는, 姜在彦, 「新民會의活動と百五人事件」, 『朝鮮の開化思想』, 岩波書店, 1980 : 白樂濬, 「한국 교회의 핍박-특히 '寺內總督暗殺未遂陰謀의 陰謀에 대하여」, 『神學論壇』 第7輯, 1962 : 尹慶老, 「百五人事件의 一研究-起訴者 122人」의 人物 分析을 中心으로」, 『漢城史學』, 창간호, 1983 : 尹慶老, 『105人事件과 新民會 研究』, 一志社, 1990 등이 있다.

도적 애국지사 700여명을 검거하여 투옥시켰다. 이같이 체포된 애국지사들은 고문으로 철저히 탄압 당하였고, 그 중에서 梁起鐸, 李昇薰 등 10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옥고를 치렀다.

본장에서는 105인사건 및 안악사건으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된 애국지사들의 옥중기록 및 고문 사례와 그 투옥 및 순국선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安岳事件

1) 安岳事件과 愛國志士 投獄

1910년을 전후하여 평안도와 황해도 등 서북지역에서는 신민회와 기독교들을 중심으로 반일 애국계몽운동이 확산되고 있었다. 신민회는 통감부에 의한 정치활동의 감시와 억압이 날로 심해져 정치·사회단체들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1907년 2월 평양을 중심으로 조직된 비밀결사였다. 이 단체는 尹致昊, 安昌浩, 李東寧, 梁起鐸, 李昇薰을 비롯해서 대부분 서북 지방의 기독교 신자 및 교사,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신민회는 ①국민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함 ②동지를 발견하고 단결하여 국민운동의 역량을 축적함 ③교육기관을 각지에 설치하여 청소년 교육을 진흥함 ④각종의 상공업기관을 만들어 단체의 재정과 국민의 부력을 증진함 등 네 가지 목적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신민회는 민족의 독립역량을 키워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로 간도와 연해주 등지에 해외독립운동기지를 설립했다. 이 독립운동기지는 민족의 집단적인 거주 지역을 개척하여 경제적 토대를 이룩하고 민족교육과 군사

훈련을 강화하여 무장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민회는 안명근 사건을 기화로 불어 닦친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의 반일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총독부의 대대적 탄압으로 해체되었다.

安明根(1879~1927)은 安重根의 사촌동생으로 황해도 신천 사람이다. 그는 북간도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신천 일대를 중심으로 군자금 모금하다가 1910년 12월 평양역에서 일본경찰에 잡혀 서울 경무총감부로 압송되어 신문을 받았다. 안명근은 원래 신민회 회원은 아니었다. 그러나 황해도 일대의 반일 문화운동을 뿌리 뽑으려던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는 이를 기화로 안명근 사건을 황해도 지부 주요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일으킨 것으로 날조하였다.²⁰¹⁾

따라서 안명근이 구속된 지 얼마 안 되어 이듬해 1월 초에는 金九, 金鴻亮, 都寅權, 李相晉, 楊星鎭 등이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는데 이때 혹독한 고문을 받아가며 옥중항쟁을 전개했던 海西인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信川 : 李源植 · 朴晚俊 · 申伯瑞 · 李學九 · 柳元鳳 · 柳文馨 · 李承祚 · 朴濟潤
· 裴敬鎭 · 崔重鎬

載寧 : 鄭澆河 · 閔泳龍 · 申孝範

안악 : 金鴻亮 · 金庸濟 · 楊星鎭 · 金九 · 朴亨秉 · 李相晉 · 장명선 · 韓弼昊 ·
高奉守 · 韓楨教 · 崔益馨 · 高貞化 · 都寅權 · 李泰周 · 張膺善 · 元行燮 ·
金庸震 · 崔明植

殷栗 : 張義澤 · 莊元容 · 崔相崙 · 金容遠

松禾 : 吳德謙 · 張弘範 · 權泰善 · 李宗錄 · 甘益龍

長淵 : 金在衡

201)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 『白凡金九先生全集』 3, 대한매일신보사, 1999, 25쪽.

海州 : 李承駿 · 李在林 · 金英澤

鳳山 : 李承吉 · 李孝健

白川 : 金秉玉

延安 : 片康烈²⁰²⁾

이어 평안남도 安泰國 · 玉觀彬, 평안북도의 李昇薰 · 金龍圭 · 金基昌 · 李允珽, 강원도의 朱鎮洙, 함경도의 李東輝, 서울에서 양기탁 · 김도희 등을 포함하여 安岳郡을 중심으로 황해도 일대의 지식층과 재산가 등 애국인사 160여명을 검거하였고 가혹한 고문을 통해 ‘강도 및 강도미수사건’으로 사건을 확대 과장시켰다.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기 제정된 구법을 적용하여 형량을 무겁게 선고하였다. 1911년 7월 22일 京城지방재판소에서 선고한 아래와 같은 형량은 이를 잘 말해 준다. 즉 안명근에게 종신형, 김구를 비롯한 朴晚竣, 裴敬鎭, 李承吉, 韓淳稷, 金鴻亮, 元行燮 등 7인에게는 징역 15년, 都寅權, 楊星鎭 2인에게는 징역 10년, 나머지 崔益馨, 崔明植, 金益淵, 張倫根, 高奉守, 朴亨秉, 韓楨教, 金庸濟 등 8인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하였다.²⁰³⁾

이들은 주로 안악의 楊山學校와 勉學會를 중심으로 교육과 신앙을 통하여 애국계몽과 구국운동에 헌신한 독립지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白凡逸志』를 보면 안명근이 서대문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옥중 단식 투쟁을 위해 백범 김구와 나눈 대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우국충정의 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202) 朴殷植, 『韓國痛史』 제3편 59장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 10. 1978, 667~668쪽에서 재인용.

203) 「安明根등18人京城地方裁判所判決文」(1911. 7. 22), 416~440쪽.

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이에 심신이 극도에 혼란되는 차에 마침 안명근 형이 나에게 대하여 조용히 이런 말을 한다. 내가 입감 이후에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1일을 살면 1일의 욕, 2일을 살면 2일의 욕이니, 아사하기로 생각한다고 한다. 나는 쾌히 찬성하였다. 가능하거든 단행하시오 하였다. 그 날부터 명근 형은 단식한다. 자기 分의 음식은 다른 수인들에게 돌려주고 자기는 굶는다. 연 4, 5일을 굶은즉 기력이 탈진하여 운신을 못하게 되었다. 간수가 물으면 배가 아파서 밥을 안 먹는다고 하나, 눈치 밝은 왜놈들이 병원으로 이감하여 놓고 진찰하여 보아야 아무 병이 없으므로 명근 형은 뒷짐을 지우고 계란을 풀어서 억지로 관구한다. 이 봉변을 당한 명근 형은 나에게 기별한다. 저는 부득이 금일부터 음식을 먹습니다 하더라. 나는 傳告하기를 殺活自由라는 부처님이라도 入此門內하여는 奠存知解일 것이니 자중하라 하였다²⁰⁴⁾

안명근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5년 만에 출옥하였으며 출옥 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길림성 依蘭縣 八湖里에서 병사하였다.²⁰⁵⁾

2) 金九의 獄中鬪爭

白凡 金九(1876~1949)는 1911년 1월 5일 105인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른바 안명근 사건으로 체포되어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204) 김구, 『백범일지』, 집문당, 1995, 187~188쪽.

205) 國家報勳處, 『獨立有功者功勳錄』 1, 1986, 163쪽 : 『安明根略傳』 참조.

치렀다. 이후 그는 1914년 감형으로 형기 2년을 남기고 인천감옥으로 이감되어 축항 공사장으로 끌려 다니며 노역하다가 동년 7월에 가출옥으로 석방되었다.

『백범일지』에는 김구 선생이 안명근 사건의 관련자로 체포되어 서대문감옥에서 3년 여간 복역했던 기록이 나와 있다. 즉 입감 과정부터 서대문감옥의 의·식·주까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일제 당시 옥중기록을 매우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중 옥중생활의 의복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옥중생활, 옥중생활을 일일이 기록키 불능하나 의·식·주·行을 개별하여 쓰면서 그때 체험 목도한 것과 나의 생활하던 진상을 말한다. 각 수인들이 소위 판결을 받기 전에는 자기의 의복을 着하거나 자기 의복이 없으면 청색 옷을 주워 입히다가 기결되어 복역하는 시간부터는 赤衣를 착하나니 조선복식으로 製着한다. 입동시기부터 춘분까지는 먼의를 착하고 춘분으로 입동까지는 單衣를 입히되 病囚에게는 白衣를 입혔으며...206)

즉 서대문감옥 내에서 미결수는 청색 옷, 기결수는 적색 옷을, 그리고 병자는 백의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대문감옥 내의 식사에 대해,

식사는 1일 3회로 분배하는데 그 자료는 조선 각도에서 각기 그 지방에서 至歇한 곡물을 선택하는 故 各道監食이 동일치 않으니 당시 서대문감옥은 십분에 콩이 5푼, 小米 3푼, 현미 2푼으로 취성하여 최하 8등식에 2百50匁으로

206) 김구, 『백범일지』, 집문당, 1995, 189쪽.

위시하여 2등까지 문수를 증가한 것이며 私食差入은 감외식 주인이 수인 친족의 위탁을 맡아가지고 배식 시간마다 밥과 한두 가지 찬을 가져오면 간수가 검사하고 밥을 一字 박은 통에 다식과 같이 박아 내어 분배하여 주는데 사식 먹는 수인들은 일처에 모아서 먹게 하고 감식도 등수는 다르나 밥은 먹는 것이고 감식은 각 공장에서나 각 감방에서 먹게 한다.²⁰⁷⁾

라고 하여 감방 내 식사는 1일 3회로 私食도 있었는데 監外食 즉 죄수에게 사식을 들일 목적으로 영업하는 감옥 밖의 음식점 주인이 배식 시간마다 밥과 한두 가지 반찬을 가져오면 간수가 검사하고 밥을 일자 모양으로 박은 통에 분배하여 주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제는 식사 때마다 경례를 시켜 천황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도록 강요했으나 항일애국지사들은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저항하여 그 정신까지 지배하는데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

3시로 밥과 찬을 일제히 분배한 후에는 간수가 고두례를 시키면 수인들은 호령에 좇아 무릎을 꿇고 무릎에 두 손을 올려놓고 머리를 숙였다가 왜놈말로 모도이(우리의 軍號 바릇과 같다)하면 머리를 일제히 들었다가 끼빵(喫飯)하여야 각 수인이 먹기를 시작한다. 수인들에게 경례를 시키는 간수의 훈화가 식사는 천황이 너의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주는 것이니 머리를 숙여서 천황에게 예를 하고 感謝意를 표하라 한다.

그런데 每每 경례라고 할 때를 들어보면 각囚들이 입 안에 소리로 무슨 중얼거리는 것이 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된다. 밥을 천황이 준대서 천황을 향하여 祝意를 포함인가 하였더니 급기야 面熟한 수인들에게 물어본 즉 구구(입

207) 김구, 앞의 책, 집문당, 1995, 189쪽.

마다) 同然으로 당신 일본 법전을 보지 못하오. 천황이나 황후가 죽으면 대사가 내려 각 죄인을 放送한다고 앉았소. 그러므로 우리 수인들은 머리를 숙이고 上帝께 明治란 놈을 즉사시켜 줌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심히 기뻐하여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하였다. 其 후는 나도 노는 입에 엄불격으로 매매 식사시에는 동양의 大惡魁인 왜황을 나에게 全能을 베풀어 내 손에 죽게 합시사-하고 상제께 기도하였다.²⁰⁸⁾

김구는 草席(다다미) 3매 반에 해당하는 면적에 囚人 20여 명을 몰아넣을 때가 많았는데 감방 내에서 말소리가 나면 수인들에게 쇠창살 사이로 손을 내놓으라 하여 때렸기 때문에 이 방 저 방에서 아이구 소리와 사람 치는 소리가 그칠 때가 없다고 했다.²⁰⁹⁾ 즉 일제는 투옥된 항일애국지사들이 옥중에서도 독립운동 방략을 의논할까 노심초사하며 감방 안에서 얘기 자체를 못하도록 탄압을 가했던 것이다.

이어 그는 너무나 열악했던 서대문감옥의 수용 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감방에 수인의 수효가 과다하여 앉았을 제는 마치 그릇에 콩나물 대가리 나오듯이 되었다가 잘 때에는 먼저 一人首東(한사람이 머리를 동쪽으로 뚫) 一人首西로 착착 모로 누워서 다시 더 누울 자리가 없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일어서고 좌우의 한 사람씩 역강자로 판벽에 등을 붙이고 두 발로 먼저 누운 자의 가슴을 두 발로 힘껏 내어밀면 드러누운 자들은 아이구 가슴뼈 부러진 다 야단을 하지마는 내어 밀는 쪽에는 또 드러누울 자리가 생기면서 서 있던

208) 김구, 앞의 책, 집문당, 1995, 190쪽.

209) 김구, 위의 책, 집문당, 1995, 191쪽.

자가 그 새에 드리눴고 몇 명이든지 그 방에 있는 자가 다 누운 후에야 밀어 주던 자까지 다 눕는데 모말(곡식 따위를 되는 네모가 반듯한 말)과 같이 사개를 물려 짜서 지은 방이 아니면 방이 파괴될 터라 힘써 내어 밀제는 사람의 뼈가 상하는 소리인지 벽판이 부러졌는지 우두둑 소리에 숨치가 돋는다.

그런 광경을 보고 감독하는 간수 놈들은 떠들지 말라고 개짓듯 하고 서서 들여다본다. 종일 노역을 하던 수인들이므로 그같이 끼어서도 잠이 든다. 첫번 누울 때는 首南者측은 面北 모로 눕고 首北者측은 南面以臥하고 잠이 들었다가도 가슴이 답답하여 잠이 깨면 방향전환 하라는 의사가 일치하며 남면측은 북면, 북면측은 남면으로 돌아눕는다. 그는 고통을 바꾸는 것과 口鼻를 마주대고 호흡을 할 수 없음이나 잠이 깊이 들 제 보면 서로 키스하고 자는 자가 많고 약자는 솟겨 올라 사람 위에서 잠을 자다가 밑에 든 자에게 물리어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날을 밝히는 것이 옥중 一夜이다.²¹⁰⁾

이렇듯 좁은 감방에 20여명 이상을 몰아넣어 사람 위에 사람이 잠을 잘 정도로 혹독한 수형생활을 치렀던 것이다.

백범은 서대문감옥에서 1911년부터 1914년까지 3년여 동안 옥고를 치렀다. 이때는 일제강점 이후 수많은 의병과 항일애국지사들이 전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기 때문에 전국의 감옥은 차고 넘쳤다. 또한 급식과 감옥 시설은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투옥된 애국지사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히 백범은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이중삼중의 고역이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210) 김구, 앞의 책, 집문당, 1995, 192쪽.

獄苦는 夏冬兩節이 우심하니 하절에는 감방에서 수인들의 호흡과 땀에서 증기가 발하여 서로 면목을 분간 못하게 된다. 가스에 불이 나서 수인들이 질식이 되면 房內로 무소대를 들이쏘아 진화하고 질식된 자는 얼음으로 찢질하여 살리고 죽는 것도 여러 번 보았다.

수인들이 가장 많이 죽기는 하절이다. 동절에는 감방에 20명이 있다면 면금(숨이불) 4개를 들여 주는데 턱밑에서 겨우 무릎 아래만 가리워지므로 버선 없는 발과 무릎은 大半 동창(동상)이 나고 귀와 코가 얼어서 극히 참혹하고 발가락 손가락이 물러나서 불구자 된 수인도 여럿을 보았다. 간수 놈들의 심술은 감방에서 무슨 말소리가 났는데 누가 말을 하였나 물어서 말한 자가 자백을 앓고 同囚들이 누가 말했다는 고발이 없는 때는 하절에는 방문을 廢하고 동절에는 방문을 開하는 것이 감시의 묘방이다.²¹¹⁾

즉 여름철에는 수인들의 호흡과 땀에서 나는 증기로 서로 분간을 못할 정도였고 그 가스에 질식되면 무소대를 들이쏘아 진화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겨울철에는 동상으로 불구가 된 사람도 많았다고 하니 처절했던 서대문감옥의 실상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서대문감옥은 김구에게 특별한 곳이었다. 그는 수형생활을 하면서 뜨거운 민족애와 독립의지를 갖고 결의를 다지게 되었으며, 그 결심의 표시로 이름을 ‘九’라 하고 호를 ‘白凡’이라고 고쳤다.

즉,

결심의 표로 名을 九라 하고 號를 白凡이라 고쳐 가지고 동지들에게 言布하였다. 龜를 九로 改함은 倭民籍에서 脫離함이요. 蓮下를 白凡으로 改함

211) 김구, 앞의 책, 집문당, 1995, 193~194쪽.

은 감옥에서 다년 연구에 의하여 우리나라 하등사회 곧 白丁 凡夫들이라도 애국심이 現今 나의 정도는 되고야 완전한 독립국민이 되겠다는 願望을 가지 가는 것이다.²¹²⁾

라고 하면서 김구는 서대문감옥 복역 시 뜰을 쓸 때나 유리창을 닦을 때 우리 조국이 독립정부를 건설하거든 그 집의 뜰도 쓸고 창호도 잘 닦는 일을 해 보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²¹³⁾. 백범 김구의 조국 독립을 향한 열망과 조국애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서대문감옥에 투옥되어 내일의 운명을 가늠할 길 없는 상황에서 증오와 분노를 이겨내고 자신의 확고한 독립의지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백범에게 있어서 서대문감옥의 옥중생활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본성을 인식함으로써 오히려 조국 독립에 대한 의지를 굳히고 자신감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²¹⁴⁾

2. 梁起鐸 등 16人 保安法 違反事件

‘양기탁 보안법사건’ 역시 죄명과 적용 법률이 다를 뿐 내용 면에서는 사실

212) 김구, 앞의 책, 집문당, 1995, 207쪽.

213) 김구, 위의 책, 집문당, 1995, 208쪽.

214) 정경환, 「서대문형무소와 백범의 옥중투쟁」, 『서대문형무소와 105인 사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개관4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서대문구청, 2002, 96쪽.

상 안악사건과 동일한 맥락의 한민족탄압사건이다.

일제는 1911년 7월 안악사건과 동시에 양기탁(1871~1938) 등 16인을 ‘保安法違犯’ 혐의로 구속하여 재판에 회부하였다. 이 사건을 당시 ‘양기탁보안법위반사건’이라 지칭한데서 알 수 있듯이 일제는 사건의 주범으로 양기탁을 지목하였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 16명은 하나같이 舊韓國에 있어서 帝國의 세력을 배척하려는 사상을 懷抱하고 있는 자로서 명치 43년 8월 29일 舊韓國이 帝國에 併合되자 併合諭告의 趣旨에 반대하여 新政을 謳歌하지 않고 異圖를 기획하였으며, 서로 相率하여 淸國의 영토에 이주 또는 이주하기 위한 불온한 動作으로 치안을 방해한 자들이다.²¹⁵⁾

다시 말하면 양기탁 등 애국계몽운동가 16인에게 서간도에 계획적으로 집단 이주를 시행하여 신한민촌을 만들고,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국권회복을 도모하려 했다고 하면서 보안법위반이란 죄목을 씌워 체포하였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받은 16인의 면모를 살펴보자.

우선 평양 출신으로 당대 대표적 민족언론지인 『大韓每日申報』를 창립 운영했던 양기탁(41세), 『대한매일신보』의 부 총무 겸 회계로 있으면서 언론을 통한 항일투쟁에 헌신했던 평남 용강 출신의 林崑正(31세), 倣信學校 교사로 한문에 밝았던 金道熙(45세), 강원도 지역을 대표하던 유생 출신의 朱鎭洙(34세), 평양에서 太極書館을 운영하던 평남 대표인 安泰國(37세), 안악 출신으로

215) 「梁起鐸事件判決文」, 『靑崗梁起鐸全集』 3, 동방미디어, 2002, 187~188쪽.

김구와 교분이 두터웠던 高貞華(31세), 신천 출신으로 신천 지역 모집책을 맡고 있던 柳文馨(23세), 평양 대성학교와 보성전문을 수학하고 『대한매일신보』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던 玉觀彬(21세), 황해도 출신으로 송화군 모집책이었던 安允在(35세), 송화출신의 교사출신 權泰善(28세), 송화군 지방위원 출신인 甘翊龍(30세), 평북 龍川 출신의 군 서기이자 지방위원이었던 金容奎(35세), 그리고 김용규의 친제 金容參(24세), 용천 출신으로 상업에 종사하던 金熙祿(24세), 金成柱(24세)와 황해도 載寧 출신의 곡물상 鄭達河(39세) 등이다.²¹⁶⁾

이상의 16인은 사건 당시 ‘保安法違犯事件’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이 사건을 흔히 ‘양기탁 보안법사건’이라 지칭한다. 이유는 사건의 주범으로 양기탁을 지목하였기 때문이다. 즉 일제 측의 의도가 양기탁의 집에서 논의되었던 서간도 이주계획과 무관학교 설립, 즉 독립전쟁론의 실현을 사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었다.²¹⁷⁾

판결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국 영토를 自由의 天地라 믿는 西間島에 團體移住를 기도하여 朝鮮본토로부터 상당한 資力이 있는 多數 人民을 同地에 이주시키어 토지를 매입하고 촌락을 세워 新領土로 삼고, 다수의 교육받은 청년을 모집하여 그곳에 보내어 民團을 조직하고 학교 및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 武官學校를 설립하고 文武雙全教育을 실시하여 기회를 타서 獨立戰爭을 일으키고자 하였다.²¹⁸⁾

216) 「梁起鐸事件判決文」, 위의 책, 동방미디어, 2002, 178~186쪽.

217)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 앞의 책, 대한매일신보사, 1999, 27~28쪽.

218) 「梁起鐸事件判決文」, 앞의 책, 2002, 189~190쪽.

판결문에 따르면 서간도 이주계획과 무관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첫 회합은 임치정 집에서 시작되었다. 즉 李東寧이 서간도 현지 답사를 마치고 돌아온 1910년 11월 하순 임치정 집에서 회합을 갖고 서간도에 관한 상세한 사정을 청취한 후 동년 12월 중순 두 번째 모임을 양기탁 집에서 가졌다.

즉 김구·김도희·안태국·주진수 등 동지들이 양기탁 집에 모여 서간도 이주방법을 강구하고 通化縣 부근에 토지를 구입, 조선 본토인 가운데 1인당 금 1백원 이상 휴대 가능한 이주자를 모집, 동지에 이주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 일의 추진을 위해 참석자들이 자신의 출신지를 중심으로 이주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김구는 황해도 일원을, 안태국은 평안남도 일원을, 주진수는 강원도 지역을, 임치정은 경기도 및 기타 지역을 그리고 이 계획 전체를 총괄 지휘한 인물로 양기탁을 지목하였던 것이다.²¹⁹⁾

1911년 7월 22일 京城지방재판소에서 보안법위반으로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다. 즉 양기탁·안태국·임치정·주진수·고정화·김도희에게는 징역 2년, 옥관빈·감익룡·안윤재·김용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유문형·권태선에게는 징역 1년, 김용삼·김성주·김희록·정달하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안악사건과 양기탁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항일애국지사들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동년 9월 4일 京城控訴院 刑事部(裁判長 朝鮮總督府 判事 楠常藏) 주재로 상소심이 진행되었다.

이 재판 판결문에는 안악사건과 양기탁사건 피의자들이 혼선되어 있다. 특히 양기탁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양기탁·임치정·안태국·옥관빈·주진수 등 주모자급 인사들은 105인 사건의 주모자로 연루되어 상소심 재판에서 제외되었다.

이 京城공소원 판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19) 靑崗梁起鐸先生全集編纂委員會, 『靑崗梁起鐸全集』 3, 동방미디어, 2002, 40쪽.

피고 안명근·배경진·이승길·한순직·최익형·도인권·최명식·김익연·장윤근·양성진·고봉수·박형병·한정교·김용제의 각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피고 김홍량·김구를 각 징역 15년에, 피고 김도희·고정화를 각각 징역 2년에, 피고 김용구를 징역 1년 반에, 피고 유형문·권태선을 각각 징역 1년에, 피고 김용삼·김성주·정달하를 각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²²⁰⁾

즉 상소심 판결은 앞서 京城지방법원의 판결과 비슷하다. 안명근 등 14명의 공소를 기각하였고, 김홍량·김구·김도희·고정화·김용구·유형문·권태선·김용삼·김성주·정달하에 대한 京城지방법원의 원판결은 취소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판결 내용을 보면 김구와 김홍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고에게 원판결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고 단지 김구와 김홍량의 형량을 2년 감한 15년으로 확정하였다. 판결 이유 역시 1심의 판결내용과 동일하다.

안악사건과 양기탁 사건은 전혀 날조된 사건은 아니다. 안명근을 중심으로 황해도 지역 부호들을 대상으로 독립군기지 마련을 위한 기금모금을 시도했던 것이 사실이며, 역시 양기탁을 정점으로 서간도 이주계획과 무관학교 설립추진을 진행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²²¹⁾

양기탁은 105인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을 계획하고 추진했음을 시인했다. 문제는 이 사건 관련 애국지사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하여 사건을 확대, 과장, 왜곡시켰다는 점이다.

예컨대 안명근 사건으로 황해도 지역에서 신교육활동을 하던 지도력 전원에

22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資料集』 11, 1976, 546쪽.

221) 靑崗梁起鐸先生全集編纂委員會, 앞의 책, 동방미디어, 2002, 41쪽.

해당하는 160여 인사를 이 사건에 연루 구금하여 가혹한 고문을 가했으니 그 대표적인 인물의 한 사람이 바로 김구이다. 이때 받은 고문에 대해 김구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슬회하고 있다.

하루는 소위 신문실에 끌려갔다. 初也에는 연령, 주소, 성명을 묻고 다시 묻는 말은 너가 어찌하여 여기를 왔는지 알겠느냐? 나는 잡아오니 끌려올 뿐이고 이유는 不知라 하였다. 다시는 묻지도 않고 수족을 결박하여 천정에 달아맨다. 初也에 고통을 覺하였으나 필경은 寂寥한 雪夜月정에 신문실 一隅에 横臥하였고 面上과 전신에 냉수를 끼얹은 감각이 생함을 알 뿐이고 前事는 不知라 정신을 차리를 것을 보는 왜구는 비로소 안명근 과의 관계를 묻는다

나의 대답은 안명근은 相知하는 친구일 뿐이고 同事한 사실은 無하다 하였다. 그 놈은 분기 대발하여 다시 천정에 매달고 세 놈이 둘러서서 笞로 杖으로 무수 난타한다. 나는 또한 정신을 失하였던 것이다. 세 놈이 마주 들어다가 유치장에 들여다 뉘일 時는 東方이 既白하였고 내가 신문실에 끌려 가던 時는 작일 일몰 후이다.²²²⁾

이와 같은 비 인륜적인 가혹한 고문으로 김구는 7번씩이나 정신을 잃고 기절하였다고 한다. 요컨대 안악 사건과 양기탁 사건이 전혀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은 아니나 잔인한 고문방법으로 진실을 왜곡 확대 과장시켰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²²³⁾

이 사건과 관련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적용한 법률상의 不當性 문제이다. 양기탁 사건에 적용한 보안법은 且置하더라도 안악사건에 구한국

222) 김구, 『백범일지』, 집문당, 1995, 166쪽.

223)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 앞의 책, 대한매일신보사, 1999, 29~30쪽.

舊법인 『刑法大全』을 적용한 점은 부당한 것이었다. 그것도 法理 解釋을 확대 적용함으로 더욱 무거운 형량에 처해졌던 것이다.

일제가 이 사건에 적용한 법조문은 대한제국 때 제정된 『刑法大全』 제593조의 ‘強盜律’ 조항과 동법 제86조의 ‘未遂罪’ 조항이었다. 즉 ‘財産을 劫取할 計로 左開所爲를 犯호는者는 首從을 不分호고 紋에 處호디 已行호고 未得財호는者는 懲役 終身に 處호미라’²²⁴⁾와 ‘罪를 犯호라호고 準備까지 하거나 其事는 已行호았호디 其意外의 障碍됨을 因호야 범죄에 未及호는 자를 未遂犯이라 호미라’²²⁵⁾는 ‘강도 및 강도미수죄’에 해당하는 법률을 적용하였다. 우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이 강점 이후 행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마땅히 일본 刑法이 적용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무거운 구법인 『刑法大全』의 법조문을 적용한 점은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내용으로 보아 과연 피의자들의 행위가 미수범에 해당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판결문 중 ‘안악의 부호 원명락·원정주 등을 습격하기로 하고 습락현에 모였으나 내집한 수가 수명에 불과하고 자산가들이 음력 12월이 안되면 현금을 소지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해산하였다’고 되어있다.

말하자면 강도행위를 스스로 중지한 것이지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未遂犯’이 아닌 ‘中止犯’으로 다루었어야 했다. 형량에서 未遂犯과 中止犯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의자들은 이 같은 법률 적용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못했다.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은 물론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 당시로서는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와 같은 법률 적용상의 부당성 문제는 105인사건 공판과정에서 변호인단에 의해 제기되었다. 아무튼 이상의 문제만으로도 일제가 합리성을 가장한 재판제도를 이용하여 얼마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한민족을 탄압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224) 『刑法大全』 第593條(強盜律)

225) 『刑法大全』 第86條(未遂犯)

것이다.²²⁶⁾

3. 105人 事件

1) 105人 事件과 愛國志士 投獄

조선을 완전 식민지화한 후 일제는 언론이나 출판, 집회, 결사와 같은 근대적인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억누르고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한편, 민족운동에 대해 전면적인 탄압을 가했다. 특히 1910년 이후 독립투쟁은 ‘무단통치’라는 헌병경찰 통치를 자행하였다. 그러나 민족사의 자긍심을 갖고 있던 애국의 열사들은 국내에서는 주로 비합법적 문화·교육활동과 결사에 의한 반일운동을, 국외에서는 중국 간도, 연해주의 독립군 편성에 의한 무장 항일투쟁과 일본·미국 등지의 외교선전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민족운동 탄압 책략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른바 예비검속인 ‘105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1911년 일제가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잡힌 安明根을 확대 조작하여 600여명을 체포하고 그 중앙기탁 등 서북인사 105명의 애국지사를 투옥한 사건이다.

105인 사건은 식민지 강점기 일제가 만들어낸 최대 규모의 한민족 탄압사건이다. 사건의 연루자만도 600여 명에 달했고 이들을 재판대에 세우기 위해 재판소를 새로 증축까지 했으니²²⁷⁾ 이 사건의 규모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뿐만 아니다. 이 사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기도 했다. ‘동양의 유일한

226) 靑崗梁起鐸先生全集編纂委員會, 앞의 책, 동방미디어, 2002, 42쪽.

227) 재판이 시작되기 1주일 전 7,000元의 경비를 들여 가로 9m, 세로 25m 규모로 재판소를 증축하였다(The Korean Conspiracy Trial, 1913, 1쪽, Kobe, Japan : 鮮于燠, 『民族의 受難』, 愛國同志會 서울支會, 1949, 125쪽).

문명국'을 자처한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서 얼마나 포악한 반인륜적 무단통치를 자행했는가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 또한 이 사건이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가혹한 고문이 자행된 사실과 그로 이 사건 자체가 허위 날조된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연루자 중 재판에 회부된 기소자만도 122명이었는데 그 중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의자 수가 105명에 달해 흔히 '105인 사건'이라 지칭하며²²⁸⁾, 이때 받은 이들의 형량을 합치면 무려 648년형에 달하는 당시 이 사건의 명칭은 '寺內正毅總督謀殺未遂事件'이었다.²²⁹⁾ 이 사건을 '新民會事件'으로 지칭하기도 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비밀결사인 신민회의 실체가 드러났고 사건 연루자 대부분이 신민회원 이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즉 안악 사건을 계기로 애국지사들에 대한 탄압과 체포에 자신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항일결사인 신민회의 존재도 알아낸 일제는 신민회의 간부 및 회원들을 붙잡고 나아가 독립운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애국지사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105인 사건을 조작했다.

일제가 내세운 혐의사실은 1910년 12월 조선총독 데라우치(寺內正毅)가 압록강 철교 준공식 참석 차 西巡한다는 풍문이 돌자 윤치호, 양기탁, 이승훈, 안태국, 김 구, 옥관빈 등 '주모자'들이 京城 서대문 밖 임치정의 집에서 총독 암살을 모의하고 그 실행지를 서북지방의 경의선 연변 주요도시(평양, 선천, 정주, 신의주 등)로 정하고 그 지역 동지들과 외국인 선교사들의 지원을 받아 수차례 총독암살을 시도하려 했으나 삼엄한 경계 등으로 미수사건에 그쳤다는 것이었다.²³⁰⁾

228) 「105인事件 判決文」, 『明治44年(下) 上訴判決原文綴』 439~678쪽 참조.

229) 윤경로, 「105인사건의 실체와 피의자들의 수난과 법정투쟁」, 『서대문형무소와 105인 사건』, 서대문구청, 2002, 24쪽 참조.

230)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 앞의 책, 대한매일신보사, 1999, 31~32쪽.

이러한 각본에 따라서 일제는 1911년 9월 윤치호를 필두로 양기탁, 安泰國, 李東輝, 이승훈, 柳東說 등 전국적으로 700여명의 애국지사를 검거, 투옥했다. 일제는 야만적인 악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한편 사상전환을 요구했다.

일제의 고문으로 金根滌²³¹⁾·鄭希淳²³²⁾이 심문과정에서 옥중 순국하고 많은 사람이 불구자가 될 정도였다. 결국 억지 공판에 회부된 122명은 1912년 5월에 기소되어 6월 28일부터 京城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판결문에 나타난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明治 43년(1910) 8월 29일에 이르러 帝國이 舊韓國을 併合시키자 피고 尹致昊, 梁起鐸, 林崑正, 李寅煥(李昇薰:筆者), 安泰國, 玉觀彬 등은 분개를 참지 못하다가 동년 9월(일자 미상) 京城 서대문 밖에 있는 피고 임치정의 집 건넌방에 모여 국가의 금일의 상태를 당하여 한 사람도 불평불만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朝鮮人民 전체가 併合에 悅服하는 것이 되어 外國의 동정도 받을 수 없으니 이로써 人民을 선동하여 併合에 복종하지 않음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近日 中 寺內總督이 平安北道를 巡視한다는 風說이 있으니, 이 기회에 寺內總督을 암살하여 併合反對의 氣焰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平安南北道の 사람이 아니면 실행하기 곤란하므로 玉觀彬을 平壤과 西北地方의 각 郡에 파견하여 同志者를 모집하여 실행할 것을 謀議 결정하였지만 寺內總督 西巡의 일은 단순히 風說에 그침으로써 이 일을 실행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²³³⁾

231) 國家報勳處, 『獨立有功者功勳錄』 12, 1996, 164쪽.

232) 國家報勳處, 『獨立有功者功勳錄』 1, 1986, 227쪽.

233) 「京城覆審判決文-寺內朝鮮總督謀殺未燬被告事件」, 『百五人事件資料集』 第1卷, 高麗書林, 影印本, 1986, 75~78쪽.

105인사건 관련자들이 구속된 지 9개월 만에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The Korean Conspiracy Trial』²³⁴⁾에 나타난 첫 공판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오전 내내 예비신문이 있었다. 피고들은 자기들의 이름이 호명되면 차례차례로 나이·주소·직업 등을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 내용이 모두 통역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거의 2시간 30분이나 걸렸다. 그 다음 검사장 마츠테라(松寺竹雄)가 기소장을 읽는데 50분이나 걸렸고 통역하는데 또 50분이나 걸렸다. 기소장에 대한 통역이 끝나고 점심식사를 위한 휴정에 들어갔다.

2시 30분에 다시 재판이 시작되었다. 맨 먼저 신문받을 사람은 申孝範(32세)으로 구 한국군 상병(corporal) 출신이었고 그 후에는 信聖學校 체육교사였다. 그는 조선의 독립과 조선총독을 포함한 고위관리들을 암살하기 위해 조직되었다는 신민회 가입을 부인했다. 그는 그런 단체에 대해 들은 적도 없고 尹致昊가 그 단체의 회장이라는 사실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金鴻亮이 宣川이에 있는 기독교 학교 교장인 G. S. McCune(尹山濫)의 방에서 그로 하여금 신민회에 가입하도록 강요했다는 것도 부인했다. 그는 1903년 9월 체육교사로 신성학교에 들어갔으나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가 총독암살모의자라는 말을 결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검사 앞에서 이 조서내용을 시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단순히 경찰에 의해 가해진 고문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했다. 재판관은 피고에게 교사의 위치에 있으면서 어떻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 있으며, 비록 어떤 고문을 받더라도 굴

234) 『The Korean Conspiracy Trial』은 105인사건에 관한 1심 공판 기록 및 참판기를 영문으로 기술한 문건이다. 이 자료집은 일본 고베(神戸)의 Japan Chronicle 신문사에서 발간하였다. 'Japan Chronicle'은 당시 일본에서 발간되고 있던 영자신문 가운데 가장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있던 신문사였다. 1912년 6월에 첫 공판이 시작되자 특파원을 서울에 파견하여 1심 공판 전 과정을 영문으로 기록하였고 1912년 말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2001년에 윤경로 교수가 국역하여 『105인사건 공판 참판기』(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로 발행하였다.

복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겠느냐고 힐책했다. 피고는 자기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말을 해야만 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결코 이 암살모의 혐의를 받고 있는 주모자들의 방문을 받은 바 없었고 어느 누구와도 총독암살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했다.²³⁵⁾

이와 같이 신호범은 가혹한 고문 때문에 거짓 조서내용을 시인했다고 증언하면서 당시 자행된 잔인한 고문 사례를 하나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다. 이후 金一濬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들은 한결같이 검사 신문에서 허위사실을 시인한 것은 가혹한 고문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건을 기소한 검사측은 당황했다. 이보다 앞서 있었던 안악사건과 양기탁사건에서는 피의자들이 자신의 주장이나 변론을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공판 중 윤치호, 양기탁, 유동열 등은 고문에 의한 사건의 날조임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등 완강한 공판투쟁을 전개했다. 특히 앞서 양기탁 사건에 연루되었던 安泰國은 이 재판과정에서 정연한 논리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 즉 明月館 음식대금 영수증과 광화문 우체국에서 평양의 尹聖運 앞으로 보낸 ‘南岡下去出迎’이라 적힌 전보²³⁶⁾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재판장을 호령했다.

이 安泰國이 아무리 상식도 없는 樵夫牧童이라 할지라도 寺內正毅 같은 자 하나 죽이기 위해 수백 명을 동원하지는 아니할 것이 아니냐. 또한 백여 명이 總督 하나를 죽이기 위해 권총을 가지고 이틀이나 요소요소를 지킬 뿐만 아

235) 윤경로 譯, 『105인사건 공판 참관기(The Korean Conspiracy Trial, 1912)』, 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21~22쪽.

236) 윤경로, 앞의 논문, 서대문구청, 2002, 29쪽 참조.

나라 조직적으로 지휘까지 했다는데 어찌해서 딱총소리 한방 없었느냐.²³⁷⁾

이와 같이 정연한 논리를 제시하면서 허위 날조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안태국의 주장은 곧 사실로 밝혀졌고 영수증과 전보문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제시되자 재판정은 술렁이었고 결국 재판장은 후회를 선언해야만 했다. 그러나 곧 재판을 속개한 재판장은 ‘이상의 증거물을 모두 기각한다’고 억지 판결을 하였다.

그러자 오쿠보(大久保) 변호사가 나서 본 사건은 사건 구성상 의심이 짙으며 재판 역시 편파적임을 지적하여 ‘裁判忌避申請’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관이 이의 없이 동의함으로써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²³⁸⁾

제14회 공판은 1912년 8월 23일에 개정되었는데 13회 공판이 열린지 37일 만에 속개된 것이었다.²³⁹⁾

그러나 재판부는 이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제출한 각종 증인신청과 증거물 요구를 ‘모두 불필요하다’고 기각하고 몇 번에 걸친 일방적인 재판을 거쳐 1912년 9월 28일 123명의 기소자 중 李昌植 등 18인을 제외한 양기탁 등 105인에게 다음과 같은 유죄판결을 내렸다.

피고 尹致昊, 梁起鐸, 林崑正, 李寅煥, 安泰國, 柳東說을 각각 징역 10년에 처함.

237) 鮮于燠, 『民族의 受難』, 愛國同志會 서울支會, 1949, 158쪽 : 尹慶老, 『105人事件과 新民會 研究』, 一志社, 1990, 140쪽.

238) 윤경로 譯, 앞의 책,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197~200쪽 참조.

239) 제 13회 공판은 1912년 7월 17일에 열렸다.

피고 玉觀彬, 張膺震, 車利錫, 羅一鳳, 邊麟瑞, 崔叡恒, 梁濬明, 金一浚, 鮮于
嫻, 郭泰鍾, 崔德潤, 李溶華, 林罔燁, 崔聖柱, 洪成麟, 吳熙源, 李基唐, 宋子賢을
각각 징역 7년에 처함.

피고 李德煥, 李春燮, 金東元, 金斗和, 尹聖運, 鄭益魯, 安慶綠, 申尙昊, 申孝
範, 張時郁, 洪成益, 車均高, 李龍赫, 姜奎燦, 梁甸伯, 李鳳朝, 魯孝郁, 金昌煥,
魯晶權, 安濬, 朱賢則, 金益謙, 李昌錫, 李泰健, 崔周杙, 金燦五, 趙德燦, 李明龍,
任道明, 白夢奎, 李根宅, 吳學洙, 池尙周, 金時漸, 鄭元範, 劉學謙, 張寬善, 金昌
鍵, 白用錫을 각각 징역 6년에 처함.

피고 吳大泳, 玉成彬, 金應祚, 尹愿三, 徐基灃, 安世桓, 鄭周鉉, 梁濬熙, 孫廷
郁, 鄭德燕, 李東華, 李正순, 金賢軾, 車熙善, 李廷淳, 羅奉奎, 白日鎮, 洪規旻,
車永俊, 吉鎮亨, 趙永濟, 姜鳳羽, 白南俊, 吳宅儀, 片康烈, 羅昇奎, 安聖濟, 金善
行, 金溶燁, 崔濟奎, 崔聖民, 李載允, 李枝元, 朴尙薰, 林秉行, 朴贊亨, 李秉濟,
金鳳洙, 金龍五, 羅義涉, 金應鳳, 安光浩를 각각 징역 5년에 처함.

피고 李昌植, 金龍煥, 李圭葉, 李順允, 金仁道, 崔瑞燦, 金成奉, 金泰軒, 白夢
良, 李在熙, 金龍善, 鮮于燾, 金順道, 李在潤, 卓昌浩, 李俊英, 金玉鉉을 각각 무
죄로 함.²⁴⁰⁾

1심 판결에서 이상과 같은 형량을 받은 105명은 모두 상급법원인 京城복심
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변론을 맡은 우자와(鵜澤總明), 오쿠보
(大久保雅彦), 하나이(花井卓藏), 오가와(小川平吉), 다카하시(高橋章之助) 등
당시 일본에서 민권변호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9인의 일본인 변호사와 張
燾, 權燾采, 金正穆, 李基煥 등 한인 변호사들의 활약 그리고 변호인단 경비
일체를 지원하고 이 사건의 허구성을 세계 언론에 알린 재한 미국인 개신교

240) 105인사건 관련 1심 판결문은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元京城地方檢察廳 所
藏 刑事裁判原文綴 중 『明治44年(下) 上訴判決原文綴』 439~678쪽에 수록되어 있
다.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2심(京城복심), 3심(고등법원) 이후 다시 대구복심으로 환송되었다.

또한 105인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우리 애국지사들에게 가해진 잔인한 고문 사실이 세계 언론에 보도되는 등 세계 여론이 비등해졌다.

그러자 일제는 1913년 3월 20일 1심에서 105인에게 선고한 유죄판결을 무효로 돌리고 105명 중 99명을 무죄로 석방했고, ‘주모자급’ 인사 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 임치정, 옥관빈 등 6명에게만 징역 5~6년형을 선고했다.²⁴¹⁾ 말하자면 스스로 사건의 허구성을 인정하였던 것이며 이 사건이 잔악한 일제의 날조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었다.

이어 최종심인 고등법원에서 ‘피고 등이 다른 결사의 동지를 구하여 범죄를 실행코자 하였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피고 등이 범죄행위를 수행코자 하였지만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1913년 10월 9일 최종 판결함²⁴²⁾으로 사실상 ‘모살죄’를 제외한 ‘미수죄’ 부분만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재판상의 승리를 거두었고 주모자로 지목된 윤치호 등 6인에게만 유죄를 인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들 6인도 1915년 2월 12일 특별사면 형식으로 사면됨으로 105인 사건은 완전 종결되었다.²⁴³⁾

2) 105인 事件의 拷問方法 事例

앞에서도 언급하였거니와 105인 사건이 당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애국지사들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한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241) 『大正二年 自一月至三月 刑事裁判原本』, 京城覆審法院, 515~573쪽 참조.

242) 위의 판결문, 京城覆審法院, 515~573쪽 참조.

243) 靑崗梁起鐸先生全集編纂委員會, 앞의 책, 동방미디어, 2002, 45쪽.

일제가 이 사건 조작을 위해 체포에 나선 것은 1911년 음력 9월 3일부터였다. 총독의 서순 때 그를 암살하려 하였다는 정보에 접한 지 40일 뒤의 일이었다. 이날 오전 평북 선천의 신성중학교에서는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교실로 들어가려는 시간에 갑자기 일경이 나타나 교사 7인과 학생 20명 등 27명을 포승과 수갑에 채워 서울로 압송하였다. 그 후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일어났다. 이들을 검거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취조도 없이 갇혀 있다가 그 해 음력 12월 7일 서울로 압송, 경무총감부 제1헌병대 유치장으로 이첩되면서 본격적인 신문과 고문이 시작되었다. 신문은 악의에 찬 공갈과 위협, 동시에 곤봉으로 사정없이 온몸을 후려갈기는 고문으로 시작되었다.²⁴⁴⁾ 당시 고문을 직접 받은 鮮于燠은 첫 심문과정에서 받은 고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심문을 맡은 일경의 첫 마디가 ‘네 놈은 혈기 있고 강력한 놈으로서 신민회원이다. 기독교 신자로 우리(일본)를 가리켜 ‘왜놈 왜놈’ 하면서 우리말을 무엇이든지 듣지 않고 서양 놈의 말이면 죽을 테라도 잘 가는 놈인 줄 안다. 너는 지난 석 달 동안 유치장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통감부에서 어떠한 악형을 할지라도 불복하자는 결심을 했다는 것도 안다’고 하면서 주먹과 곤봉으로 마구 때렸다.²⁴⁵⁾

이렇게 시작된 고문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독해졌는데, 당시 사용된 대표적인 고문사례를 자료 『寺內總督謀殺未遂事件公判始末書』, 선우훈의 『民族의

244) 尹慶老, 「105人事件」, 『韓國史』 43, 國史編纂委員會, 345쪽.

245) 鮮于燠, 『民族의 受難』, 애국서울동지회, 1949, 48쪽.

受難』, J. G. Dunlop의 『General Akashi and the Charges of Torture』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⁴⁶⁾

< 拷問方法 事例 >

- 주먹과 구둣발로 목 부분과 全身을 비벼대거나 구타하는 방법
- 손가락 사이에 철봉을 끼우고 손끝을 졸라맨 후 천장에 매달고 잡아당기는 방법
- 대나무 못을 손톱과 발톱 사이에 박는 방법
- 수십 일간 완전 밀폐된 독방에 가두고 음식물을 일체 주지 않는 방법
- 가장 추운 날 옷을 벗긴 후 수도전에 묶고 찬물을 끼얹어 얼음기둥을 만드는 방법
- 가죽 채찍과 대나무 묶음으로 맨몸을 휘감아 갈기는 방법
- 널빤지에 못을 박아 그 위에 눕게 하는 방법
- 양쪽 엄지손가락을 결박한 후 한편 팔은 가슴 앞으로 돌려 어깨너머로 올리고 다른 한편 팔은 등 쪽으로 돌려 공중에 매단 후 가죽 채찍으로 갈기는 방법(이른바 鶴춤 拷問法)
- 온몸에 기름을 바른 후 인두와 담뱃불 등으로 단근질하는 방법
- 참대나무를 양쪽에서 마주 잡고 위에서 아래로 훑어 내리는 방법
- 입을 벌리게 한 후 혀를 빼게 하고 氣道에 담배연기를 넣는 방법
- 기절했을 때 종이를 얼굴을 봉창한 후 물을 끼얹는 방법
- 1전 짜리 동전 둘레만큼의 머리카락에 몸을 매달아 머리털이 빠지게 하는 방법
- 돌바닥에 매쳐 논 후 머리채와 귀를 잡아끌고 다니며 구타하다가 돌바닥에 처박는 방법

246) 尹慶老, 『105人事件과 新民會 研究』, 一志社, 1990, 132쪽.

- 코에 뜨거운 물을 붓고 거꾸로 매달거나 덩굴리는 방법
- 입을 벌리게 하고 막대기로 석탄가루를 쭉서 넣어 기절시키는 방법
- 입에 자갈을 물리고 머리털을 선반에 잡아 맨 후 앓을 수도 설 수도 없는 좁은 공간에 처박아 놓는 방법
- 여러 날 일체 굶긴 후 그 앞에서 만찬을 벌이는 방법
- 수염의 양끝을 서로 묶은 다음 빠질 때까지 잡아당기는 방법
- 死刑執行을 가장하여 自白을 최후로 강요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포를 쏘아 실신시키는 방법

이상에서 보듯 차마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고문이 자행되었다. 당시 사용된 고문방법은 무려 72種에 달하였다고 한다.²⁴⁷⁾ 이런 악랄한 고문방법은 이 사건을 조작한 장본인인 警務總監 아카시 겐지로(明石元二郎)가 러시아에 근무하면서 제정 러시아가 폴란드인 등 식민지 민족에 가했던 고문을 그대로 도용한 것이다.²⁴⁸⁾

아카시 겐지로는 105인 사건의 조작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1910년 주권강점 이후 초대 조선주차헌병사령관 겸 경무총감으로 부임한 현역 육군소장이었다. 1900년대 초 제정 러시아 주재 일본공사관에 파견되어 러시아의 교활한 통치술과 잔인한 고문방법을 익히고 있던 중 초대 총독에 부임한 테라우치(寺內正毅)의 특별지시에 따라 조선총독부 경무총감에 임명되어 러시아로부터 배워온 비밀 경찰제를 모방하여 헌병경찰제를 실시하고 105인 사건을 조작하였던 장본인이었다.

결국 이상과 같은 가혹한 고문에 못 견디어 金根滢·鄭希淳이 심문과정에서

247) 白樂濬, 「한국교회의 핍박-특히 寺內總督暗殺未遂陰謀에 대하여」 『神學論壇』 第7輯, 연세대학교 출판부, 1962, 23쪽.

248) 선우훈, 앞의 책, 22쪽.

모진 고문으로 옥중 순국하였다. 또한 全德基도 일제의 잔혹한 고문으로 심문 도중에 늑막염으로 쓰러져서 불기소되기는 했으나 결국 고문의 여독으로 일찍 서거하고 말았다.

이때 사용된 고문법은 잔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매우 교활하기도 하였다. 즉 고문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고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컨대 단근질 할 때는 온몸에 기름을 바른 후 지졌으며 천장에 매달 경우에도 먼저 손가락과 손목에 붓대를 감아 상처흔적을 최소화시켰던 것이다. 즉 ‘학춤고문’의 경우 양쪽 엄지손가락을 결박한 후 한쪽 팔은 가슴 앞으로 돌려 어깨너머로 올리고 다른 한쪽 팔은 등 쪽으로 돌려 공중에 매단 후 가죽 채찍으로 갈기면 마치 학이 날개 짓 하듯 비명을 지르다 기절하였는데, 이때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손가락에 붓대를 감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외상을 최소화시키며 고문의 효과를 최대화했다는 것이다.²⁴⁹⁾

그런데 이상의 술한 고문 중에서도 가장 참기 어려웠던 고문이 여러 날을 굶긴 후 그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들며 이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²⁵⁰⁾ 한번 고문이 시작되면 1~4시간 계속되었으며, 그러기를 35일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었는데²⁵¹⁾ 모진 고문은 순간순간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으나 고문 후에 몰려오는 허기짐은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의복 속의 솜을 뜯어 먹었는가 하면 문창호지를 씹어 먹었으며 심지어 깔고 자던 썩은 짚을 씹어 삼키기도 했다고 한다.²⁵²⁾ 그 결과 고문이 시작된

249) J.G. Dunlup, "General Akashi and the Charges of Torture"(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Board of Foreign Missions, Korean Conspiracy Cas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1912, Selected Correspondence, Reports and Miscellaneous Papers, in the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Philadelphia.

250) 선우훈, 앞의 책, 117쪽.

251) 선우훈, 위의 책, 97쪽 : 어떤 被疑者의 경우는 한번 고문이 시작되면 6시간씩 계속되었다고 하며, 이런 고문을 61일 동안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J.G.Dunlup, "General Akashi and the Charges of Torture", P.C.U.S.A)

지 16일 만에 처음으로 오동나무 먹장이 빛의 도토리 알 같은 검은 알변 ‘쌍둥이 변’을 비로소 볼 수 있었는가 하면 몸무게가 117근(77kg)에서 73근(44kg)으로 줄어들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²⁵³⁾

오동馬車에 앉아 京城 종로 구치감이란 문으로 들어서서 모든 수속을 한 후 몸을 달아 보니 전신 199근(77kg)이던 것이 지금은 73근(44kg)으로 기입함을 보았다. 이 구치소엔 外監, 內監이 있으니 內監엔 기결수가 있고 外監엔 미결수가 있다. 內庭에 들어서서 큰 솥에 콩밥을 짓는데 3인이 올라서서 삼으로 콩밥을 처제는 그 냄새가 코를 찢르니 주린 창자 뷔인 배에 먹으려는 본능적 세력을 막을 수 없었다. 꼬치처럼 마른 몸에 목은 견대미 갖고 머리는 뜯어먹든 꿩의 대가리 같은데 수갑 찬 손으로 콩밥 통을 붓잡고 주저앉았다. 열 그릇 백 그릇이라도 준다면 다 먹을 것 같았다. 그러나 왜 간수는 사정없이 끌고 가서 철문을 열고 집어넣으니 때는 오후 3시 반 경인 듯 하였다.²⁵⁴⁾

수많은 애국지사 가운데 한 두 사람만을 제외한 기소자 거의 전원이 ‘총독을 암살하려 하였다’는 허위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상과 같은

252) 선우훈, 위의 책, 120쪽

253) 선우훈, 앞의 책, 83·121쪽 참조. 그러나 이상과 같은 拷問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직접 가했던 구니도모(國友尙謙)는 證人 진술에서 “그 방(고문·취조실)은 용단이 깔려 있고 난로도 설치되어 있는 등 훌륭한 방으로서 拷問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고 하며 고문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본인은 本件 이전에 安明根事件 등도 취조했지만 그때는 하등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았는데 本件에서만 유독 취조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다”고 오히려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國友尙謙證人陳述, 「京城覆審 第30回 公判始末書」: 國史編纂委員會,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2, 1986, 72쪽 : 尹慶老, 앞의 책, 一志社, 1990, 134쪽 재인용)

254) 선우훈, 앞의 책, 121쪽.

잔혹한 고문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일제가 짜놓은 각본에 따라 심문관이 일방적으로 사건내용을 열거하고 이에 대해 애국지사들은 ‘아니오’ 혹은 ‘모른다’고 부인하면 ‘예’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무자비한 고문을 계속해 결국 허위자백을 받아내었던 것이다.²⁵⁵⁾ 그러나 선우훈·洪成麟 등 끝까지 시인하기를 거부한 사람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견디어 낼 수 있었던 힘은 신앙심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참을 수 없는 고문이 가해질 때마다 생을 저주하고 탄식하고 이를 갈면서 만难的 고통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으로 극복했던 ‘욥’(성경 구약에 나오는 인물)과 스테반의 순교(성경 신약에 나오는 인물)를 생각하며 “나는 내 갈 길이 있으니 십자가의 용사가 되어 불의와 싸울 뿐이다. 죽고 사는 것이 내게는 벌써 문제가 안 된다.”는 굳은 믿음과 의지를 갖고 버텼다고 한다.²⁵⁶⁾

선우훈은 같은 책에서 종로 구치감에서 일본 간수에 의해 동지 중의 한 사람이 서대문감옥으로 이감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간수가 문을 채우고 돌아서 가니 곁에 앉은 왜놈이 주동이 되어 나를 붙들어서 의복을 추어 입히고 끈없는 저고리로 앞가슴을 감싸주며 버선도 신겨주고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주며 조선말로 당신이 무슨 일로 이렇게 까지 되었소? 당신이 악형 받은 것 보니 경무총감부에서 오지 않았소? 그렇다면 서양인 尹山濶 사건이 아니요? 아참 가이없습니다. 당신 선천사람 차균설이를 압니까? 그 양반도 다 죽게 되어 이 방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있다가 작일 서대문감옥

255) <魯晶燿 京城地法 第4回 公判始末書> 「梁起鐸外 122人 謀殺未遂事件」 第52卷 ; <李圭葉 京城地法 第4回 公判始末書> 「梁起鐸外 122人 謀殺未遂事件」 第52卷 ; <李東華 京城地法 第5回 公判始末書> 「梁起鐸外 122人 謀殺未遂事件」 第53卷 ; 尹慶老, 앞의 책, 一志社, 1990, 134쪽 재인용.

256) 선우훈, 앞의 책, 88·111쪽.

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차씨가 쓰던 수건입니다. 그런데 차씨는 10일 만에 견디다 못해 寺內총독을 죽이려했다는 자백을 했다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까지 되었소. 모두 헤를 채며 얼굴을 찌푸리고 위로하여 편의를 주었다.²⁵⁷⁾

당시 105인 사건과 관련된 애국지사들은 이처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서대문 감옥으로 옮겨져 수형생활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은 사람은 애국지사들만이 아니었다. 애국지사들은 가족들도 견디기 어려운 고초를 이겨내야 했다. 특히 가장을 잃은 가정에서는 생활고로 집을 팔아야 했고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피의자 가족들이 홀어지기도 하고 함께 집단생활을 하는 등 함께 집단생활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²⁵⁸⁾

또한 박은식의 『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통해 본 105인 사건 관련 고문의 참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寺內正毅는 무단정치를 하고 경무총감 明石圓二郎은 또 잔인하여 사람 죽이기를 즐겼다. …중략… 그 악형의 실행을 영국 《泰晤士報》의 기자 麥聖西가 자세히 탐사하여 지상에 게재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寺內를 刺殺할 모의를 하였다는 혐의범들을 먼저 경찰관이 엄중심문하고 핍박하여, 척살모의 사건을 인정하는 공술을 하게 한다. 그리고 ‘모른다’고 대답하면 곧 고문을 가하는데, 그 방법은 대략 다섯 가지가 있다.

① 범인을 잡고 작은 상자 속에 집어넣는다. 그리하여 그 속에서 바로 설 수도 없고 동작할 수도 없어 움츠리고 꾸부린 채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257) 김삼웅, 『서대문형무소 근현대사』, 나남출판, 2000, 80~81쪽.

258) Letter of Mrs. Cysil Rose to A.J. Brown dated Jan. 9. 1912, P.C.U.S.A.

36시간 동안이나 오래 지내게 한다.

② 범인의 머리에 칼(枷)을 씌워 높이 달아놓는다. 그리하여 발이 땅에 닿지 못하게 하고 겨우 엄지발가락이 땅에 닿게 한다.

③ 범인의 엄지손가락을 묶어서 높이 공중에 달아놓는다.

④ 그 팔을 뒤로 꺾어 정강이에 닿게 하여 바싹 죄어 묶어 놓아 근육 이상의 고통을 받게 한다.

⑤ 그의 팔을 힘껏 거꾸로 끌어당겨 뒷사람을 향하게 하여 땅에 놓고, 머리 위에 다시 한 기계를 사용하여 아래턱을 누르고 그 목을 향하게 한 뒤에, 물을 점점 콧구멍에 부어 넣어 넷물 흐르듯 쉬지 않게 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 고문방법과 구타로 반죽음에 이르고 거의 목숨이 끊어지게 되어 지각이 없어지고 호흡이 막혀서 말을 할 수 없게 되면 겨우 강제로 한마디 ‘그렇다’고 대답하게 한다. 그리하여 곧 이를 ‘供詞’하고 한다 운운.“

또 상해의 『華人報』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일본 정부는 근래 조선에 문명과 행복을 수입시켰다. 거기에는 일종의 가장 교묘하고도 최신식인 肉刑이 있다. 범인의 배를 땅을 향해 누어 두 팔을 바로 펴서 머리 위로 올리게 한다. 그리고는 팔다리의 관절을 두루 노끈으로 묶은 후에 옷을 벗겨 양 볼기짜를 드러낸다. 고문집행자가 오른손에 채찍을 잡고 왼손은 몸 결 오른쪽 허벅다리 앞 사타구니에 드리운다. 그리하여 맹렬히 기세를 가하여 이에 채찍을 들어 바로 범인의 몸을 치면 그 가죽과 살이 손뼉 때마다 터지고 문드러졌다. 이러한 형벌을 定例적으로 식후 1시간 지나 집행한다. 行刑할 때에 범인이 정신을 지탱하지 못하면 한 모금의 물을 주도록 허락한다.” 소위 ‘謀殺寺內案’이란 것은 저들의 날조에서 나온 것으로서 억지로 죄를 꾸며 우리의 애국당을 소멸시키려는 악독한 계책이다.²⁵⁹⁾

259)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上, 서문당, 1999, 83~85쪽.

4. 105인 事件의 西大門刑務所 投獄實態 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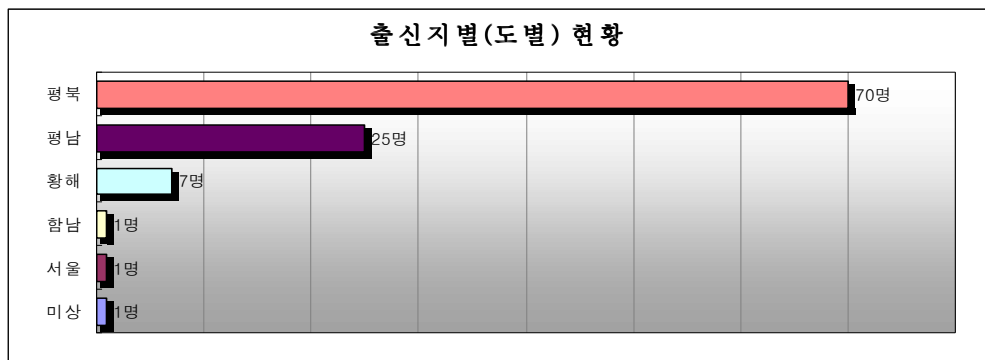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105인 사건 및 안악 사건으로 신민회의 애국계몽 운동가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간부들은 약 6년씩의 투옥에 처해졌던 것이며, 일반 회원들도 2년 여간 온갖 살인적 고문을 당하다가 국제여론의 압력 하에 더 이상 구실이 없어 풀려난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비밀결사 신민회의 활동이 중단되는 등 한동안 국내 반일민족 운동이 위축되었던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옥고에서 풀려난 이후 불굴의 투지로 국권회복운동을 다시 전개하였으며 반일민족 지도력으로 성장하여 1919년 3·1운동을 견인해 냈고, 더 나아가 상해 임정을 이끈 지도력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몇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판결문과 105인사건 公判始末書에 의거하여 105인사건 관련 투옥인물의 명단을 정리해 보면 <부록 - 자료 7>과 같다.

[통계 V-1]



<표 V-1>에 따라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된 105인사건 관련 인물의 ‘출신지별²⁶⁰⁾(도별) 현황’ [통계 V-1]을 보면 평안북도가 69명, 평안남도 26명, 황해도 7명, 함경남도·서울·미상이 각각 1명 등이다.

이 출신지별 현황 분석 결과 평안북도 출신이 약 66%, 평안남도 출신이 약 25%, 황해도 출신이 약 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총 105명 중 3명을 제외한 98%(102명)가 서북지방으로 지칭되는 평북·평남·황해도 출신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의 발생지가 평북 선천이었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 사건을 조작한 일제의 의도가 잘 시사되어 있으니, 즉 105인 사건이 서북지방의 반일세력을 芟除시킬 목적에서 꾸며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²⁶¹⁾

이와 같이 일제가 강점을 전후하여 西北地方을 특별히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우선 이곳의 지역적 특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서북지방은 지리적 조건으로 문호개방을 전후하여 서구의 근대적 문명을 일찍 접할 수 있었고, 또한 기독교 등 새로운 사상과 신문화가 신속히 수용 확장되어 근대사회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행되었다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대체로 1890년대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애국계몽운동이 1900년에 접어들어 항일구국운동으로 그 성격이 변모하는 한편 그 운동의 중심지가 서북지방으로 옮겨진 점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²⁶²⁾

260) <표 16>의 출신지는 105인사건 공판시말서의 출생지를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타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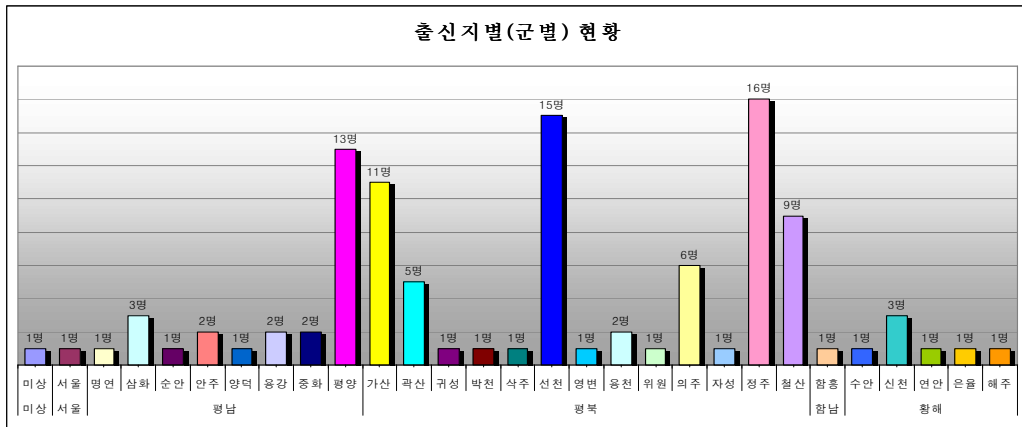
261) 尹慶老, 「百五人事件의 一研究」, 『漢成史學』 創刊號, 1993, 38~39쪽.

262) 姜在彦, 「新民會의 活動と百五人事件」, 『朝鮮の開化思想』, 岩波書店, 1980, 391~392쪽.

아무튼 일제가 강점을 전후한 시기 집중적으로 서북지방의 반일세력을 제거하려 했던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1909년 9월부터 2개월간 있었던 이른바 ‘南韓地域 匪徒大討伐’²⁶³⁾과 같은 특정지역에 대한 강압책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통계 V-2]에서 평안북도 69명의 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주 16명, 선천 15명, 가산 11명 등으로 3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평안남도의 군별 현황은 총 26명 중 평양이 13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 V-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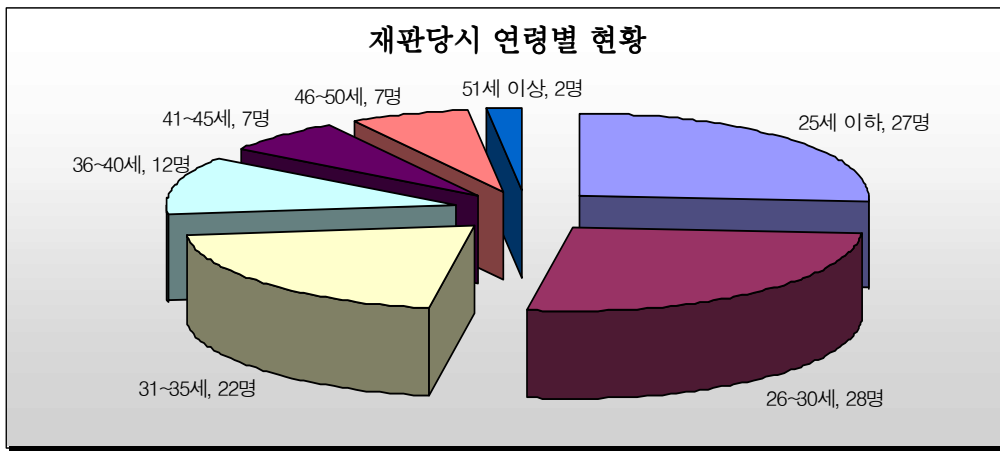
즉 평북·평남 중에 다수를 차지한 정주·선천·평양 등은 서북지방의 전통적인 도시이자 경의선 철도 연변의 주요 도시였던 것이다. 이 지역은 日商들의 內陸地方 침투가 심화되면서 토착상인들의 상권이 위협을 받는 한편 경의

263) 崔永禧, 「三·一運動에 이르는 民族運動의 源流」, 『三·一運動50周年紀念論文集』, 東亞日報社, 1969, 34~35쪽.

선 철도 부설 과정에서 이 지역 주민들의 田土와 家屋이 수탈 철거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²⁶⁴⁾

다음으로 <표 V-1>의 재판당시 나이 [통계 V-3]을 보면 25세 이하가 27명, 25세~30세가 28명, 31~35세 22명, 36~40세 12명으로 40세 이하가 총 105명 중 85%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 V-3]



20대는 宣川 信聖中學校의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30대는 교사 및 일반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일반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젊은 층이 이 사건에 대거 관련된 것은 윤치호·안태국·양기탁·이승훈 등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던 민족지도자들과 함께 미래의 반일 독립운동세력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청년·학생층을 대거 사건에 관련시켜 탄압하려 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의 조작을 위해 행동대원으로서의 학생층과 청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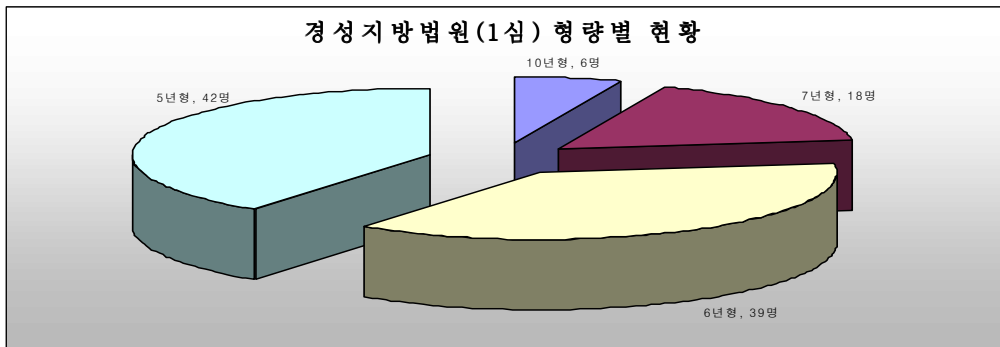
264) 尹慶老, 『105人事件과 新民會 研究』, 一志社, 1990, 76쪽.

이 필요했던 점도 한 요인이라고 하겠다.²⁶⁵⁾

105인 사건의 정식재판은 1912년 6월 28일 京城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 피의자가 구속된 지 9개월만의 일이었다. 재판당시 123명의 기소자를 한꺼번에 세울 수가 없어 기존 재판정 공간을 확대하는 공사를 하기도 하였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자신의 무관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재판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1912년 9월 28일 결국 123명의 기소자 중 李昌植 등 18인을 제외한 105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검사측이 구형한 형량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여 <표 V-1>과 같은 형량을 확정·선고한 것이다.

[통계 V-4]



<표 V-1>을 분석하여 ‘京城지방법원(1심) 형량별 현황’ [통계 V-4]을 보면 10년 형 6명, 7년 형 18명, 6년 형 39명, 5년 형 42명이다. 즉 105명 전원이

265) 尹慶老, 위의 책, 一志社, 1990, 7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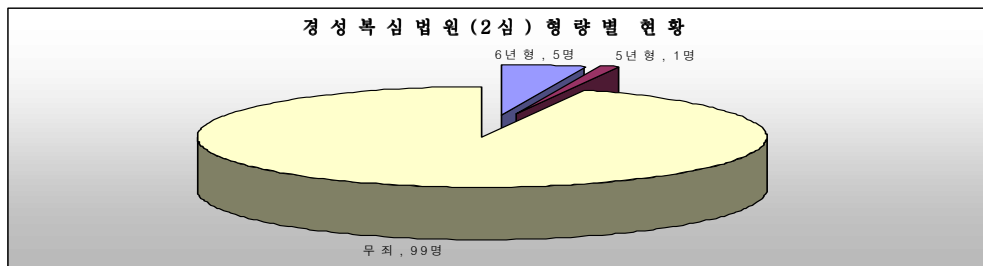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105인은 전원 상고하였고 이들의 재판은 1912년 6월 京城지방법원에서 1심 공판이 시작된 이래 1913년 10월 고등법원의 최종 결심공판이 있기까지 5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2차는 京城복심법원에서 1912년 11월 26일~1913년 3월 20일까지 52회 공판으로 진행되었고 3차는 고등법원에서 1913년 4월 26일~5월 24일까지 1회 공판으로 진행되었으며, 4차는 대구복심법원에서 1913년 7월 1일~15일까지 5회 공판으로, 마지막 5차는 고등법원에서 1913년 9월 29일~10월 9일까지 1회 공판으로 진행되었다.²⁶⁶⁾

이는 이 사건에 대한 세계 언론의 주목도 한 원인이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있지도 않았던 허구의 사건을 억지로 엮어 매려했던 재판부측과 이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인단 사이에 논쟁, 특히 이 사건에 적용한 법률상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통계 V-5]



266) 윤경로, 앞의 논문, 서대문구청, 2002, 29쪽.

결국 ‘京城복심법원(2심) 형량별 현황’ [통계 V-5]과 같이 6년형 5명, 5년형 1명, 무죄 99명으로 1심 때 유죄판결을 받은 105인 중 94%가 무죄로 풀려났다. 또한 1913년 10월 9일 최종심인 고등법원에서 ‘피고 등이 다른 결사의 동지를 구하여 범죄를 실행코자 하였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피고 등이 범죄행위를 수행코자 하였지만 실행하지 못하였다’²⁶⁷⁾고 판결함으로 사실상 ‘모살죄’를 제외한 ‘미수죄’ 부분만을 적용하여 사실상 재판상의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²⁶⁸⁾

267) 「高等法院最終判決文-寺內朝鮮總督暗殺未遂被告事件」, 『百五人事件資料集』 1, 399~400쪽.

268) 윤경로, 앞의 논문, 서대문구청, 2002, 36쪽.

VI. 結 論

서대문형무소는 일제의 식민지배 통치를 보다 영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탄압기구였다. 즉 1908년 일제는 한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을 억압하고 말살하기 위해 대규모의 신식감옥인 京城감옥을 현저동에 신축하였다. 그 후 이곳은 1945년 광복을 되찾기 까지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투옥되어 고문을 받으며 처형당했던 수난과 아픔의 현장이 되었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7년 12월 27일 法部令 제1호로 「京城監獄署를 설치하는件」을 반포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21일 法部告示 제8호 「京城감옥 이전」에 의해 종로의 舊 典獄署 자리에서 독립문 밖 금계동(현재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에 신축한 감옥으로 이전하였다. 금계동은 위치 상 악풍과 추위가 심하고 풍수설로 볼 때 험지이자 고통의 지옥이었던 곳으로 애국지사들을 체포하여 탄압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다.

京城감옥은 종래의 전옥서를 개편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행형기관일 뿐 아니라 행형의 근대적 개혁이 시작된 이후 최초로 설치된 감옥시설로 그 산하에 인천분감과 춘천분감을 두었다.

한편 한국의 사법권 및 감옥사무는 1909년 7월 기유각서로 일제에 박탈되어 통감부 사법청에서 관장하였다. 그리고 3審4級制(高等法院, 控訴院, 地方裁判所, 區裁判所)를 구성하고 검사국을 부설하였다. 여기에 일본인 판·검사와 서기가 배치되어 한국의 민사·형사재판 및 非訟事件까지 장악하였다.

1910년 8월 29일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총독부관제 실시와 함께 통감부 사법청을 총독부 사법부로 개편하여 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를 총괄하였으며 3심4급의 사법조직은 1912년에 고등법원, 복심법원, 지방법원의 3심3급제로 변경되었다.

일제는 한민족을 합리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성이 있는 재판제도마저 악용하였다. 따라서 일본인 법관이 일본법 내지 총독부 법령에 의하여 한민족에게 일방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중형을 내렸다. 항일 애국지사들은 장기간에 걸친 심문 및 재판과정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았으며, 그간의 옥고와 고문이 체력과 의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이 허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침략에 항거하고 독립을 쟁취하려는 항일의병이 전국적으로 쫓기하면서 무차별적인 체포와 투옥으로 감옥의 수용인원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일제 말 전국에는 형무소 17개소, 형무소지소 11개소를 운영하는 등 감옥을 계속 증설하였으나 항일 애국지사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된 항일의병은 매우 격렬한 항일투쟁의 양상을 보였다. 최종 판결법원 분석결과 1심(京城지방법원이나 京城지방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여 수감생활을 한 경우는 단지 30%에 그쳤고 대부분 일제의 일방적인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거나 항소한 경우가 많았다. 당시 재판소는 고등법원이 京城에 1개소만 있었고 공소원 역시 京城·평양·대구에 각 1개소씩 총 3개소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京城복심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서대문감옥으로 이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 ‘형량별 현황’을 보면 사형(교수형)이 58명으로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였고 5년 이상 장기수도 36%나 차지하였다. 반면에 5년 미만의 형량을 받은 의병은 단지 11%에 그쳤다. 이것만 보아도 항일의병들이 일본군과의 수많은 전투에서 얼마나 일제에게 큰 타격을 입혔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순국 현황’을 보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한 115명의 의병 중 56%인 64명이 순국하여, 체포된 2명 중 1명은 형장에서 사라졌다. 즉 58명의 항일의병

이 사형장에서 교수형을 당하여 순국하였고 나머지 6명도 옥중에서 자결순국하거나 일제의 잔혹한 고문으로 옥 병사하였다.

한편 105인 사건은 일제가 만들어낸 최대 규모의 한민족 탄압사건으로 여기에 연루되었던 700여명의 애국지사들이 훗날 항일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의 지도력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05인 사건 관련 투옥인물의 출신지별 분석 결과 평안북도 출신이 약 66%, 평안남도 출신이 약 25%, 황해도 출신이 약 7%를 차지하였다. 즉 총 105명 중 3명을 제외한 98%(102명)가 서북지방으로 지칭되는 평북·평남·황해도 출신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의 발생지가 평북 선천이었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서구의 근대적 문명을 일찍 접할 수 있었고, 신문화가 신속히 수용되어 근대사회로 급속히 진행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지닌 서북지방의 반일세력을 제거시킬 목적에서 일제가 꾸민 자작극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05인 사건의 재판당시 나이를 보면 25세 이하가 27명, 25세~30세가 28명, 31~35세 22명, 36~40세 12명으로 40세 이하가 총 105명 중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젊은 층이 이 사건에 대거 관련된 것은 윤치호·안태국·양기탁·이승훈 등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던 민족지도자들과 함께 미래의 반일 독립운동세력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청년·학생층을 대거 탄압하려 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5인 사건 관련 '京城지방법원(1심) 형량별 현황'을 보면 10년 형 6명, 7년 형 18명, 6년 형 39명, 5년 형 42명이다. 즉 105명 전원이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이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105인은 전원 상고하였고 '京城북심법원(2심) 형량별 현황'과 같이 6년 형 5명, 5년 형 1명, 무죄 99명으로 1심 때 유죄판결을 받은 105인 중 94%가 무죄로 풀려났다.

그리고 결국 1913년 10월 9일 최종심인 고등법원에서 '모살죄'를 제외한 '미

수죄' 부분만을 적용하여 사실상 재판상의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의 간부들은 약 6년씩의 투옥에 처해졌고, 일반회원들도 2년 여간 고문을 당하다가 국제여론의 압력 하에 더 이상 구실이 없어 풀려났다.

이들 대부분은 옥고에서 풀려난 이후 불굴의 투지로 국권회복 투쟁을 다시 전개하였다. 또한 반일민족 지도력으로 성장하여 1919년 거국거족적이고 혁명적인 3·1운동을 견인해 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시킨 지도력으로 굳게 자리 잡았다.

이처럼 일제하 서대문형무소는 일제통치의 잔혹한 탄압상과 체포 투옥되었던 애국지사들의 수난사, 그리고 민족적 저항이 집약된 성지로서 고귀한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參 考 文 獻

1. 基本資料

『高宗實錄』

『純宗實錄』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

『每日申報』

『獨立新聞』

『東亞日報』

『朝鮮日報』

『警務月報』

『高等警察報』

『查察彙報』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934.

國家報勳處, 『獨立有功者功勳錄』 1~15, 國家報勳處, 1987~2005.

國史編纂委員會, 『日帝侵略下韓國三十六年史』 1~13, 1966~1978.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1~5, 탐구당, 1965~1969.

國史編纂委員會,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40, 서울, 1986~1999.

國史編纂委員會,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別集1~9, 서울, 1991~1993.

金承學, 『韓國獨立史』, 獨立文化社, 1965.

內部警務局編, 『韓國警察統計』, 1909.

農商工部編, 『朝鮮要覽』, 1910.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 1~10, 서울, 1969~1978.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資料集』 1~14, 서울, 1971~1979.

法務部 刑政局, 『刑政』 I・II, 1947.

西大門刑務所職員交友會 編, 『西大門刑務所例規類纂』, 1936.

宋相燾, 『騎驪隨筆』, 國史編纂委員會, 1955.

亞細亞文化社, 『舊韓末官報』 1~5, 1973.

山口吸一, 『朝鮮制裁法規』, 大阪屋號書店, 1936.

野村調太郎, 『朝鮮民刑事令』, 東京, 松山房, 1932.

朝鮮總督府編, 『朝鮮法令輯覽』, 1916.

朝鮮總督府編, 『朝鮮事情』, 1922.

朝鮮總督府編,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09~1944.

朝鮮總督部 高等法院, 『朝鮮史法第要』, 巖松堂, 1923.

朝鮮總督部 法務局, 『司法制度沿革圖譜』, 1938.

朝鮮總督部 法務局, 『朝鮮の司法制度』, 1935.

朝鮮總督部 法務局 行刑課, 『朝鮮の行刑制度』, 朝鮮治刑協會, 1938.

朝鮮總督部 法務局 行刑課, 『朝鮮刑務第要』, 朝鮮治刑協會, 1927.

朝鮮總督部 治刑協會, 『朝鮮の刑務所寫眞帖』, 1924.

朝鮮治刑協會, 『朝鮮治刑彙報』, 1932.

中橋政吉, 『朝鮮舊時の刑政』, 治刑協會. 1937.

青柳綱太郎, 『朝鮮統治論』, 朝鮮研究會, 1923.

青柳綱太郎, 『總督政治』, 朝鮮研究會, 1918.

統監府編, 『統監府施政一斑』, 東京, 民友社, 1907.

刑務協會, 『日本近世行刑史稿』 上・下, 東京, 刑務協會, 1944.

2. 單行本

- 國立矯導官學校, 『韓國行刑史』, 國立矯導官學校, 1967.
- 國防部, 『韓國戰爭史』 I ~ V,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70.
- 권인호, 『行刑史』, 국민서관, 1978.
- 金 九, 『白凡逸志』, 집문당, 1995.
- 金基錫, 『南岡 李昇薰』,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4.
- 김동현 外, 『서대문형무소-옴기던 날의 기록 그리고 그 역사』, 열화당, 1988.
- 金炳華, 『韓國司法史-中世·近世編』, 一朝閣, 1982.
- 김삼웅, 『서대문형무소 근현대사』, 나남, 2000.
- 金厚卿 外, 『獨立運動功勳史』, 韓國民族運動研究所, 1971.
- 南基正, 『日帝의 韓國司法府侵略實話』, 육법사, 1978.
- 內務部 治安局, 『韓國警察史』 I · II, 1972.
- 明炯直 外, 『韓國刑政史』, 圓光大出版局, 1983.
- 文定昌, 『近世日本의 朝鮮侵奪史』, 栢文堂, 1964.
- 朴慶植,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 청아출판사, 1986.
- 法務部, 『韓國矯正史』, 1987.
- 徐基榮, 『韓國警察行政史』, 법문사, 1976.
- 서울특별시, 『서울拘置所 移蹟地 公園造成 基本計劃』, 1987.
- 서울특별시, 『구 서울구치소 보존대상 시설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연구(I)』, 1988.
- 서울특별시, 『구 서울구치소 보존대상 시설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연구(II)』, 1988.
- 徐壹教, 『朝鮮王朝刑事制度의 研究』, 博英社, 1974.
- 鮮于燠, 『民族의 受難』, 애국서울동지회, 1949.
- 宋柄基, 『統監府法令資料集』 上·中·下, 국회도서관, 1972~1973.
- 송병기 外,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9, 대한민국국회도서관.

- 尹慶老, 『105人事件과 新民會研究』, 一志社, 1990.
- 尹白南, 『朝鮮刑政史』, 文藝書林, 1948.
- 李圭昌, 『運命의 餘燼』, 寶蓮閣, 1992.
- 李正贊, 『韓國行刑史』, 選民出版社, 1984.
- 李正贊, 『韓國行刑學』, 選民出版社, 1978.
- 李炫熙, 『日帝時代史의 研究』, 삼진사, 1974.
- 李炫熙, 『韓國警察史』, 덕현각, 1979.
- 李炫熙, 『東學思想과 東學革命』, 청아출판사, 1984.
- 李炫熙, 『東學革命과 民衆』, 大光書林, 1985.
- 李炫熙, 『한민족 광복투쟁사』, 정음문화사, 1989.
- 李炫熙, 『光復鬪爭의 선구자』, 동방도서, 1990.
- 李炫熙, 『光復前後史의 再認識』 I · II, 범우사, 1991.
- 李炫熙, 『한국근현대사의 쟁점』, 삼영, 1993.
- 林紀東, 『監獄學論叢』, 各大書店, 1955.
- 전병용, 『감방별곡』, 공동체, 1990.
- 田鳳德, 『韓國法第史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68.
- 田鳳德, 『한국근대법사상사』, 박영사, 1981.
- 최종고, 『한국법학사』, 박영사, 1999.
- 韓國學文獻研究所, 『法規類編4-韓末법령집』, 亞細亞文化史, 1982.
- 許柱旭 外, 『行刑學』, 一朝閣, 1977.
- F.A.Mackenzie著 · 黃中燁 譯, 『朝鮮의 悲劇』 上, 永昌書館, 1946.
- Japan Chronicle특과원, 尹慶老 옮김, 『105人事件 공판참관기』,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2001.
- 重松一義, 『日本の監獄史』, 東京, 雄山閣, 1985.

3. 論文

- 姜徳相, 「憲兵政治下の 朝鮮」, 『歷史研究』 2, 1967.
- 구병삭·정문길, 「일제식민지하의 한국사회법제사 연구」, 『사회과학계』 3, 문교부, 1970.
- 김동훈, 「日帝의 韓國植民地統治機構와 그 運用에 關한 研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6.
- 김삼웅, 「조선총독 형무소장회의서 강압 훈시」, 『殉國』 통권 95호, 1998.
- 김삼웅, 「3·1 독립운동과 서대문형무소」, 『韓民族의 獨立運動과 西大門刑務所』, 서대문구청, 2000.
- 김삼웅, 「일제 말기 민족주의자들과 서대문형무소」, 『殉國』 통권 108호, 2000.
- 김삼웅, 「105인사건과 서대문감옥의 고문실상」, 『西大門刑務所와 105人事件』, 서대문구청, 2002.
- 金聲均, 「日本의 韓國司法權奪取事件」, 『白山學報』 8, 1970.
- 김옥희, 「조선시대의 형구에 관한 고찰」, 『崇智苑』 제1집, 수도여자사범대학 출판부 1967.
- 金龍德, 「憲兵警察制度의 成立」,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69.
- 金龍德, 「3.1운동 이전의 笞刑」, 『3·1운동 50주년기념 논문집』, 동아일보사, 1969.
- 남도영, 「서대문형무소의 민족사적 의의」, 『韓民族의 獨立運動과 西大門刑務所』, 서대문구청, 2000.
- 南興祐, 「日帝의 韓國侵略에 있어서의 法規範과 그 適用에 關한 問題」, 『아세아 연구』 1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 朴秉濠, 「法制面에서 본 日帝의 統治方式」, 『新東亞』 85, 1971.
- 박성수, 「운강 이강년의 병장과 서대문형무소」, 『義兵戰爭과 西大門刑務所』,

- 서대문구청, 2001.
- 송주석, 「日本監獄法の 改定方向과 特徵」, 『법무연구』 15, 1988.
- 梁盛熟, 「서대문형무소 현황 및 그 역사적 의의」, 『殉國』 통권 132호, 2002.
- 梁盛熟, 「105인 사건 및 안악사건과 서대문형무소」, 『殉國』 통권 136호, 2002.
- 梁盛熟, 「한말 의병전쟁과 서대문형무소(上)」, 『殉國』 통권 138호, 2002.
- 梁盛熟, 「한말 의병전쟁과 서대문형무소(下)」, 『殉國』 통권 140호, 2002.
- 梁盛熟, 「서대문형무소의 개소와 항일의병의 투옥실태」,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25집, 2005.
- 梁盛熟, 「서울지방의 의병·독립운동가 선양사업의 재조명-서대문형무소 투옥 인물을 중심으로」, 『의병·독립운동가 선양사업의 재조명』, 2005.
- 오영섭, 「한말 의병장 이인영과 서대문형무소」, 『義兵戰爭과 西大門刑務所』, 서대문구청, 2001.
- 윤경로, 「105인사건의 실체와 피의자들의 수난과 법정투쟁」, 『西大門刑務所와 105人事件』, 서대문구청, 2002.
- 李瑄根, 「日帝 總督府의 憲兵政治와 思想彈壓」, 『韓國思想』 8, 1966.
- 李延馥, 「舊韓國 警察考(1894-1910)-日帝侵略에 따른 警察權被奪過程小考」, 『서울교대 논문집』 4, 1971.
- 李延馥, 「日帝의 憲兵警察小考」, 『霞城李瑄根博士古稀記念論文集』, 1974.
- 이종민, 「1910년대 근대 감옥의 도입 연구」, 『정신문화연구』 75, 1999.
- 이종민, 「감옥의 사회사」, 『가톨릭대 성심사회학』 1, 1995.
- 이종민, 「식민지하 근대감옥을 통한 통제 메커니즘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 李炫熙, 「日帝侵略下の 抗日救國運動」, 『新世界』 2, 1953.
- 李炫熙, 「甲辰開化革新運動의 現代史的 意味」, 『신인간』 제41호, 1984.

- 李炫熙, 「일본의 문화침략정책과 그 실제」,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85.
- 李炫熙, 「韓國獨立黨의 獨立運動과 白凡」, 『백범연구』 제3집, 백범김구선생 기념사업회, 1987.
- 李炫熙, 「임시정부 수립 이후의 독립투쟁과 서대문형무소」, 『韓民族의 獨立運動과 西大門刑務所』, 서대문구청, 2000.
- 李炫熙, 「허위의 의병투쟁과 서대문형무소」 『義兵戰爭과 西大門刑務所』, 서대문구청, 2001.
- 임재표, 「조선시대 경주 원형옥의 지역별 분포와 특징에 관한 연구」, 『교정』, 법무부, 1998.
- 임재표, 「조선시대 전통 원형옥의 지역별 분포와 특징에 관한 연구-고지도에 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정』, 법무부, 1999.
- 정경환, 「서대문형무소와 백범의 옥중투쟁」, 『西大門刑務所와 105人事件』, 서대문구청, 2002.
- 정배식, 「일제의 식민정책과 식민지 조선의 법제」, 『법제연구』 14, 한국법제연구원, 1998.

ABSTRACT

A Study on Seodaemun prison during the era of the Japanese colonization

Yang, Sung Suk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Sung Shin Women's University

Seodaemun Prison is a representative oppressive body built to more efficiently carry out Japanese colonial rule policies, through which the Japanese attempted to oppress and wipe out anti 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From the time it was rebuilt as Gyeongseong Gamok in 1908 until the national independence in 1945, it has been a site of ordeals, and grief where a number of patriotic fighters were imprisoned and executed or tortured to death.

In the meantime,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Seodaemun Prison also served as a venue of spiritual revitalization as patriotic ancestors who fought for national independence overcame all the adversities after being imprisoned, and newly explored ways to achieve national independence in

this place.

With the opening of Seodaemun Prison which was the first modern prison of its kind, the Japanese invaders made a direct intervention, and as a result, the autonomy in prison system was deprived. Eventually, the traditional prison system of Chosun was put to an end, giving its way to the Japanese colonial execution system which had an influence of the West.

As the righteous army stood out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across the country, and the anti Japanese sentiment intensified, the number of occupants in the prison also exploded due to reckless arrest and confinement. In the last period of the Japanese occupation, the number of prisons across the country continuously on the rise; 17 prisons and 11 branch offices, but still far too short of housing anti Japanese patriotic fighters.

The condition of the prisons was close to animal pen in terms of hygiene and meal service, and a large number of prisoners were either sick or starved to death. Most of the cells were dark and severely humid due with lack of sunlight and ventilation. Prisoners had to use a box type toilet bowl in the cell as there were no toilet facilities built in the first place.

Despite brutal treatment inside the prison, patriotic ancestors waged extremely hard struggles within the prison to voice out their resistance against Japanese invasion. In particular, chief commanders of the Righteous Army such as Lee, Gang nyun, Lee, In young, Huh, Wee, Kim, Soo

min, and Lee, Eun chan maintained solid and upright demeanors and they even so strongly scolded down Japanese military police officers that some Japanese who were impressed by this showed a respect and offered a special treatment to them. As the Japanese oppression aggravated, righteous fighters in parallel reinforced their determination toward the independence, fueling the fighting for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s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Based on the latest data collected up to now, a total number of patriots imprisoned in Seodaemun related to righteous fight reaches 115. The analysis of the data shows that those who had imprisoned after accepting the judicial decision of the first instance of the trial at Gyeongseong local court or Gyeongseong district court were only 30%. As many as 56% of those who were imprisoned were either executed to death, or died in the prison, meaning that one out of two imprisoned was martyred at the execution ground. In addition, around 75% of those who were imprisoned except righteous fighters who died for the country had a long prison term with more than 5 years, which makes us presume how intensely these patriotic ancestors fought to open the first page of the history of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in Korea.

In the meantime, the Event of 105 Patriots is the largest scale oppression incident ever that had been falsely fabricated by the Japanese aggressors. It also holds a great significance in that the patriotic fighters who were implicated in this incident grew to be leaders in anti Japanese struggle and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future.

The analysis of the imprisoned figures related to the Event of 105 Patriots by each location shows that 98% of them(3 out of 105) were from northwestern provinces such as Pyungbuk Province, Pyungnam Province, and Hwanghae Province. This is partly because the Event was originated from Sunchon of Pyungbuk Province and also partly because the Japanese invaders fabricated the event in order to root out anti Japanese power in the northwestern provinces which had an outstanding geographical location to rapidly evolve into a modern society by being exposed early to modern civilization of the west speedily and by accepting new ideas such as Christianity and cultures.

The age of the convicted at the time of the trial of the event was mostly below 40, taking up 85% (89 out of 105) of the total. The massive involvement of younger people in this event was the result of intended oppression by the Japanese against the youth and students who had huge potentials for becoming future anti 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powers together with relatively widely known national leaders such as Yoon, Chi ho, An, Tae guk, Yang, Gi tak, and Lee, Seong hoon.

The record of prison term shows that all of the accused involved in the Event of 105 Patriots were given a heavy punishment with more than 5 years at the first instance by Gyeongseong District Court. However, all of them made an appeal to a Higher Court and 5 of them were given 6 year's term, one of them, 5 year, and 99 of them proved to be not guilty. This means 94% of those who were convicted at the first instance of the trial were released with acquittal. This is because of the disclosure of

Japanese fabrication in the course of the trial, as the accused made statements that they had been forced to make false confession due to ruthless tortures imposed on them during interrogation.

However, the Event of 105 Patriots attributed to the unjust suffering of activists of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of Sinminhoe with more than 6 years' imprisonment by being falsely charged, and even ordinary members were ruthlessly tortured for 2 years, but later forcibly acquitted under the pressure of public opinion by in international communities.

This event brought about a temporary suspension of activities by an underground organization, Sinminhoe and even affected overall anti Japanese national movements within the country to the level of withdrawal or shrinkage. However, most of the patriotic fighters resumed their activities for sovereignty restoration movement with invincible determination immediately after being discharged, and grew to be leaders for anti 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They assumed pivotal roles in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nd further turned themselves into great leader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set up at Shanghai, China.

附 錄

< 자료 1 > 監獄官制

제1조 監獄은 法部 大臣의 관리에 속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掌함.

제2조 감옥의 위치 및 명칭은 法部 大臣이 이를 정함.

제3조 控訴院 檢事長은 法部大臣의 명을 받아 그 管轄地 내에 있는 監獄을 감독함.

제4조 각 監獄을 통하여 左의 직원을 置함.

- 典獄 9명(奏任)
- 看守長 專任 54명(判任)
- 監獄醫 專任 12명(奏任 또는 判任)
- 通譯 專任 9명(判任)

제5조 典獄은 監獄의 長으로 法部 大臣 및 檢事長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감옥의 사무를 掌理하고 부하관리를 감독하며 看守 이하의 進退를 專任함.

제6조 看守長은 上관의 지휘를 받아 監獄事務에 종사하며 看守이하를 指揮監督함.

제7조 監獄醫는 上관의 명을 받아 醫務에 종사함.

제8조 通譯은 上관의 지휘를 받아 통역 및 文書翻譯에 종사함.

제9조 監獄에는 제4조에 揭한 직원이외에 看守 및 女監取締를 두고 判任對偶로 함.

제10조 法部大臣은 필요에 따라 分監을 둘 수 있다.

分監長은 看守長으로 하고 典獄의 지휘를 받아 분감의 사무를 掌理하고 부하를 지휘 감독함.

제11조 典獄의 유고시에는 上度 看守長이 이를 대행하고 分監長의 유고시도 위와 같음.

附 則

本令은 隆熙2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함.

< 자료 2 > 看守 및 女監取締職務規程

- 제1조 看守는 典獄 및 看守長의 지휘를 承하여 서무 및 계호에 종사함.
- 제2조 근무의 방법 및 사무의 분담은 典獄 및 看守長이 특히 지정한 바에 從함이 가함.
- 제3조 總히 담당한 사무는 一히 此를 他에게 依託함을 不得함.
- 제4조 서무에 종사하는 자는 항상 규정을 從하여 정확히 제반 사무를 정리 하되 若執行上違例 或 錯誤가 有함을 認定한 시는 直時 此를 看守長에게 報告함이 可함.
- 제5조 계호에 종사하는 자는 항상 규정을 從하여 監獄의 警戒 및 在監人의 檢束紀律에 관한 집행에 任함이 可함.
- 제6조 항상 在監人의 動靜을 視察하여 其 상황을 看守長에게 보고함이 가함.
- 제7조 在監人의 개인적 처우방법은 典獄이 判定한 바에 依함이 가함.
在監인 처우상에 關하여 의견이 有한 시는 典獄이나 간수장에게 開陳함이 가함.
- 제8조 항상 在監人의 건강상태에 주의하되 苟或 이상을 인정한시는 直時 此를 看守長 및 監獄醫에 보고함이 가함.
- 제9조 在監인이 訴願 或은 密告하러 하는 자가 有할 시는 此를 看守長에게 보고함이 가함.
- 제10조 檢束上 중대한 사고가 生하거나 또는 生하러 하는 우려가 有한시는 其 사태에 應하여 防制救護 및 急報의 조치를 行함이 加함.
- 제11조 檢束上 필요에 기인하는 제반 點檢 및 檢査는 세밀히 此를 行하되 若 異狀이 有함을 認定한 시는 每度로 看守長에게 보고함이 加함.
- 제12조 在監人을 감옥 外로 押送할 시는 戒具를 施하여 檢査를 經한 후 특히 엄밀한 주의로써 계호함이 加함.
- 제13조 항상 在監人의 作業을 독려하여 其 科程의 畢了與否 및 製品의 良好與否를 檢査함이 加함.

제14조 女性의 在監人을 戒護함은 특히 지휘한 경우에 한함.

제15조 女監取締는 典獄 및 看守長의 지휘를 承하여 女監內의 庶務 및 戒護에 종사함.

제16조 看守의 직무 제1조, 제12조, 제14조를 除한 외에 기타 각조는 總히 本職에 係도 적용함.

< 자료 3 > 看守採用規則

제1조 看守는 신체검사 및 學術試驗에 합격한 자 중으로 채용함.

제2조 左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술시험을 생략함.

단,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특히 其 技能에 就하여 시험을 행함도 有함.

1. 判任文官 이상의 자격이 유한 자 또는 判任文官 이상의 職을 經한 자
2. 陸軍下士 이상의 직을 經한 자
3. 看守 精勸證書가 有한 자
4. 전에 看守의 직에 在하여 퇴직 후 만 3개년을 경과치 아니한 자
5. 특별한 技能이 有한 자

제3조 左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採用함을 得치 못함.

1. 禁獄 이상의 刑에 처하였던 자
2. 懲戒에 의하여 면직된 지 만 2개년을 경과치 아니한 자
3. 신분에 상당치 아니한 負債가 유한 자 또는 性行이 불량한 자
4. 연령이 20세 미만되거나 50세 이상 되는 자

제4조 신체검사는 左記 標準에 의하여 행함.

체질이 善良하고 身長이 5尺 이상이며, 자세와 용모가 醜惡치 아니하고 全身의 기능이 健全하며, 질병이 無한 자

제5조 학술시험은 左記 과목을 就하여 행함.

1. 刑事法令 및 監獄法規의 大要
2. 역사 및 지리의 大要
3. 작문
4. 算術(加減乘除)

제6조 학술시험은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就하여 행함.

학술시험은 筆記와 口述의 2종으로 구별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就하여 口술시험을 행함.

제7조 신체검사 및 학술시험을 집행케 하기 위하여 委員을 置함.

위원은 典獄이 부하 관리 중에서 명함.

제8조 학술시험의 합격은 1개년 간 此를 유효로 함.

제9조 看守로 채용할 시는 豫先左의 誓書를 徵함이 가함.

(誓 書)

본인은 今回에 看守를 지원하온 바 채용하심을 蒙하온 후에는 官員服務 規律을 恪守하옵은 물론이옵고 좌의 諸件을 준수할 것을 誓約함.

1. 奉職한지 3개년을 未滿하여 일신상의 사고로써 辭職을 請願치 아니할 事
2. 자기나 가족은 허가를 得치 아니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商業에 종사치 아니할 事
3. 자기는 물론이요 가족에 至하기까지 品行을 謹慎케 하여 司獄官吏며 또 其 家族되는 체면을 汚損치 아니할 事

년 월 일

姓名 ㉠

제10조 本令 시행에 요하는 細則은 典獄이 정하여 보고함이 가함.

제11조 現今間은 巡檢이나 巡査의 직을 曾經한 자. 또는 巡査의 직을 現帶한 자로써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학술시험을 생략하고 試驗委員의 銓考를 經하여 채용함을 得함.

제12조 本令을 頒布日로부터 시행함.

< 자료 4 > 罪囚押送規則

- 제1조 未決囚 및 已決囚의 押送은 警察官吏로 하여금 행케 함.
단, 감옥의 經理 및 行刑上의 필요로 인하여 已決囚를 타 감옥으로 압송하는 경우에는 監獄官吏로 하여금 행케함을 得함.
- 제2조 押送은 總히 被押送者의 交付를 受할 官서까지 직접 압송할 자로 함.
단, 時宜로 인하여 경찰관서의 遞傳에 附함을 得함.
- 제3조 압송은 일출전과 일몰후에는 행함을 得치 못함.
단, 기차·기선에 의하는 경우나 특별한 이유가 有한 경우에는 此限에 在치 아니함.
- 제4조 發送官署는 최후에 被押送者의 교부를 受한 官서에 그 성명과 발송의 일시와 사유 및 방법을 豫先 通知함이 가함.
- 제5조 발송관서는 別記양식의 押送狀을 調製하고 필요한 서류를 編綴하여 피압송자와 공히 押送官吏에게 교부함이 가함.
단, 已決囚의 압송에는 他書類로써 押送狀에 代用함을 得함.
- 제6조 피압송자가 소지한 화폐와 물품은 좌의 手續에 의하여 처리함이 가함.
1. 貨帶는 發送官署에서 최후에 被押送者의 교부를 受한 官서에 직접 送致함. 단, 특히 필요로 인정한 시는 5圓 이내의 금액을 押送官吏에게 托寄함을 得함.
2. 물품은 압송관리에게 托寄하여 送致함.
단, 위험의 慮가 有한 물품이나 압송관리가 携致함이 가함.
- 제7조 送致中에 係한 화폐 및 물품은 押送官吏에게 托寄한 경우에는 押送을 행하는 官서의 保管에 屬함.
- 제8조 押送 도중에서 피압송자의 소지금을 支撥한 시는 此를 押送狀에 登記함이 가함.
- 제9조 押送官吏의 여비 및 피압송자에게 요하는 비용은 押送을 행하는 官서의 부담으로 함.

단, 被押送者를 감옥이나 경찰관서에 숙박케 한 경우에는 숙박에 要한 비용은 감옥이나 경찰관서의 부담으로 함.

감옥이나 경찰관서 이외에서 숙박 또는 飲食케 한 경우에는 其 宿泊料는 1宿에 金30錢 이내이며 飲食料는 1회에 金 10錢 이내로 함.

제10조 피압송자가 逃走한 시는 압송관리는 直時 부근 경찰관서 및 압송관서로 통보하며 押送官署에서는 발송관서 및 최후에 피압송자의 교부를 受할 관서로 통보하고 서류와 화폐 및 물품을 발송관서에 환부함이 가함.

제11조 피압송자가 질병에 罹한 시는 直時 상당히 치료하되 若 인하여 압송을 계속치 못할 자로 인정한 시는 被押送者를 서류, 화폐 및 물품과 共히 부근 감옥이나 경찰관서로 交付함이 가함.

제12조 前條에 의하여 피압송자의 교부를 受한 관서에서는 직접 질병의 情況을 발송관서 및 최후에 피압송자의 교부를 受할 관서로 통보함이 가함. 疾病이 快復하여 更히 押送에 附한 時도 亦同함.

제13조 被押送者가 사망한 시는 其 屍體를 서류, 화폐 및 물품과 共히 부근 警察署로 交付함이 가함.

屍體의 交付를 受한 경찰관서에서는 발송관서 및 최후에 피압송자의 교부를 受할 官署로 死亡의 일시 및 其 原因을 통지하여 압송에 관한 서류를 發送官署로 還付함이 가함.

사망 후 24시간 내에 시체의 受取人이 無할 시는 此를 假埋葬하며 遺留貨物 및 물품은 동시간 내에 出府를 청하는 자가 無한 시는 此를 발송관서로 還付함이 가함.

제14조 피압송자가 傳染病 流行地를 경유한 시는 離隔消毒을 행함이 가함.

제15조 本則은 軍衙間에서 행하는 未決囚 및 已決囚의 押送에는 적용치 아니함.

제16조 本則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은 監獄官吏의 押送에 관하여는 法部大臣이며 경찰관리의 압송에 관하여는 內部大臣이 정함.

附 則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시행함.

< 자료 5 > 일본의 감옥법

제1조 監獄은 이것을 아래의 4종으로 함.

1. 懲役監-징역에 처한 자를 拘禁하는 곳으로 함.
2. 禁錮監-금고에 처한 자를 구금하는 곳으로 함.
3. 拘留場-구류에 처한 자를 구금하는 곳으로 함.
4. 拘置監-行刑被告人 및 死刑의 言渡를 받은 자를 일시 구금하는 곳으로 함.

拘置監에는 징역·금고 또는 구류에 처한 자를 일시 구금할 수 있음.

警察官署에 부속한 留置場은 이것을 監獄에 代用할 수 있음.

단 懲役 또는 禁錮에 처한 자를 1월 이상 계속하여 구금할 수 없음.

제2조 2월 이상의 징역에 처한 18세 미만인 자는 특별히 설치된 감옥 또는 감옥 내에 특별히 分界를 設한 장소에서 拘禁함.

前項의 규정에 의한 자는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또는 만 20세에 이른 후 3월 이내에 刑期終了할 자는 그 殘刑期間 더 계속하여 구금할 수 있음.

心身發育의 상황에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전 2항의 적용에 있어서 연령에 불구할 수 있음.

제3조 監獄에 男監 및 女監을 設置하고 이것을 分隔함.

징역감·금고감·구류장 및 구치감의 동일 구획 내에 있는 것은 이것을 分界함.

제4조 主務大臣은 적어도 2년마다 1회 관리로 하여금 감옥을 巡閱시킬 것.

判事 및 檢事は 감옥을 巡視할 수 있음.

제5조 감옥의 參觀을 청하는 자가 있을 시는 學術의 연구, 기타 정당하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명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음.

제6조 本法에 의하여 沒入하고 또는 國庫에 귀속한 물건은 이것을 監獄慈惠의 用에 充當함.

제7조 在監者가 감옥의 처치에 대하여 불복이 유할 시는 명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主務大臣 또는 巡閱官吏에게 情願할 수 있음.

제8조 勞役場은 이것을 감옥에 부설함. 前 5조의 규정은 이것을 노역장에 준용함.

제9조 본법 중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형사피고인에 적용할 규정은 死刑의 言渡를 받은 자에게 이것을 준용하고 懲役囚에 적용할 규정은 勞役場留置의 言渡를 받은 자에게 이것을 준용함.

제10조 本法은 陸海軍에 속하는 감옥에는 적용치 않음.

제11조 새로 入監하는 자는 令狀 또는 判決書 및 執行指揮書, 기타 적법의 文書를 査閱한 후 入監시킬 것.

제12조 새로 入監하는 婦女가 그 子를 携帶할 것을 請하는 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 1세에 이르기까지 허가할 수 있음.

제13조 새로 入監하는 자가 傳染病豫防法에 의하여 예방방법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전염병에 걸린 자일 때는 入監시키지 않을 수 있음.

제14조 새로 入監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身體 및 衣類의 檢査를 할 것. 在監중인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역시 동일함.

제15조 在監者는 심신의 상황에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제외하고 獨居拘禁에 付할 수 있음.

제16조 雜居拘禁에 있어서는 재감자의 罪質, 性格, 犯數, 年齡 등을 짐작하여 그 감방을 別離함.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감자의 종류에 의하여 그 監房을 別異함.

18세 미만의 자는 제2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이상된 자와 그 감방을 別異함. 단 心身教育의 상황에 의하여 그것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시는 制限에 부재함.

前3項의 규정은 공장에 있어서의 就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함.

제17조 刑事被告人으로서 피고사건에 서로 관련하는 자는 거로 그 감방을 別異하고 監房外에 있어서도 그 交通을 차단함.

제18조 懲役監, 禁錮監, 拘留場, 拘置監 및 勞役場의 동일 구획 내에 있을 경우에는 同性者에 대하여 동일한 監房 또는 教誨堂을 사용할 수 있음.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在監者의 종류에 의하여 監房·좌석 또는 진찰·
敎誨의 시간을 相異케 함.

病監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18조를 적용치 않을 수 있음.

제19조 在監者逃走, 폭행 혹은 자살의 우려가 있을 시 또는 監外에 있을 시는
戒具를 사용할 수 있음.

戒具의 종류는 습으로 이것을 정함.

제20조 法令에 의하여 監獄官吏가 휴대하는 劍 또는 銃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서 在監者에 대하여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음.

1.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위협한 폭행을 하고 또는 하려는 협박을 가할 시.
2. 위협한 폭행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그 投棄命令에 복종치
않을 시.
3. 逃走의 목적으로 다중이 소요할 시.
4. 逃走를 기도한 자가 폭행을 하여서 浦拿를 免코자 하거나 制止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려고 할 시.

제21조 天災事變에 際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在監者로 하여금 응급의 用務에
就케할 수 있음

제22조 天災事變에 際하여 監獄內에 있어서 피난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在監者를 타소에 호송할 것.

만약 호송할 여지가 없을 시는 일시 이것을 해방할 수 있음.

해방된 자는 감옥 또는 警察官署에 출두할 것.

해방 후 24시간 내에 출두치 않을 시는 감옥관리는 도주 후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음.

전항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60조의 적용을 무방함.

제24조 作業은 衛生, 經濟 및 재감자의 刑期·健康·技能·직업, 장래의 생계 등을
집작하여 이것을 과함.

18세 미만의 자에 과할 작업에 대하여는 전항 외 특히 敎養에 관한 사항을
집작함.

- 제25조 大祭祝日 1월1일·2일 및 12월 31일에는 就業을 면함.
 父母의 訃에 접한 자는 3일간 그 취업을 면함.
 主務大臣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임시로 취업을 면함.
 炊事, 清掃, 看護, 其他 監獄의 經理에 관하여 필요한 작업에 就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취업을 면치 않을 수 있음.
- 제26조 刑事被告人, 拘留囚 또는 禁錮囚가 작업에 취하기를 청할 시는 그 선택
 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
- 제27조 作業의 收入은 모두 國庫의 所得으로 함.
 在監者로서 작업에 취하는 자에게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作業
 賞與金을 지급할 수 있음.
 作業賞與金은 行狀·作業의 성적 등을 짐작하여 그 액을 정함.
- 제28조 在監者 취업으로 의하여 創傷을 입거나, 또는 질병에 걸려 이로 인하여
 死亡 또는 業務를 經營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는 情狀에 의하여 手當金을
 給할 수 있음.
 전항의 수당금은 석방 시 본인에게 이것을 지급하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자의 父母, 配偶者 또는 그 子에게 지급함.
- 제29조 수형자에게는 教誨를 시행할 것
 기타의 재감자가 교회를 청할 시는 이것을 허가할 수 있음.
- 제30조 18세 미만의 수형자에게는 教育을 시행할 것.
 기타의 수형자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연령에 불구하고
 教育을 시행할 수 있음
- 제31조 在監者가 文書·圖書의 閱讀을 청할 시는 이것을 허가함.
 文書·讀書의 열독에 관한 제한은 명령으로서 이것을 정함.
- 제32조 수형자에게는 일정의 衣類, 寢具를 착용시킴.
 단, 拘留囚에게는 白衣의 着用을 허하고 기타의 자에게는 촌의(속옷)의
 自辯을 허할 수 있음.
- 제33조 刑事被告人 및 勞役場留置의 言渡를 받은 자의 衣類, 寢具는 自辯으로

하고 自辨이 불가능한 자에게는 이것을 貸與함.

자변의 의류·침구에 관한 제한은 명령으로써 이것을 정함,

제34조 재감자에게는 그 體質, 건강, 연령, 작업등을 짐작하여 필요한 식량 및 飲料를 급함.

제35조 刑事被告人에게는 양식의 自辯을 허할 수 있음.

제36조 在所者의 頭髮(두발), 鬚髻(수염)은 이것을 剪剃(전체)시킬 수 있음.

단, 형사피고인의 두발·수염은 위생상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한 외 그 의사에 반하여 이것을 전체시킬 수 없음.

제37조 在監者는 그 拘禁된 감방의 청결을 保持하는 데 필요한 용무에 복종할 것.

제38조 재감자에게는 그 健康을 保持하는데 필요한 운동을 시킴.

제39조 재감자에게는 種痘, 기타 전염병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醫術을 행할 수 있음.

제40조 재감자가 질병에 걸렸을 시는 의사로 하여금 치료케 하고 필요가 있을 시는 이를 病監에 수용함.

제41조 傳染病患者는 엄히 격리시키고 健康者와 타의 병자에 접근시키지 말 것.

단, 懲役囚로 하여금 간호케 함은 此限에 不在함,

제42조 病者가 의사를 지정하고 自費로써 치료를 補助할 것을 청할 시는 情狀에 의하여 임시 이것을 병원에 이송할 수 있음.

전항에 의하여 병원에 移送한 자는 이것을 재감자로 간주함.

제44조 妊婦, 産婦, 老衰者 및 불구자는 병자에 준할 수 있음.

제45조 在監者에게 접견할 것을 청하는 자가 있을 시는 이것을 허가함.

수형자에게는 그 친족이 아닌 자와 접견을 시키지 못함.

단,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此限에 不在함.

제46조 재감자에게는 信書를 발하고 또는 受할 것을 허함.

수형자에게는 그 친족이 아닌 자와 信書의 受發을 시키지 못함.

단,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此限에 不在함.

제47조 受刑者에 관한 信書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發受를 허가치

않음.

전항의 의하여 發受를 허가하지 않은 信書는 2년이 경과한 후 이것을 폐기할 수 있음.

제48조 裁判所 기타의 公務所로부터 在監者에 대한 文書는 披閱하여 이것을 본인에게 교부함.

제49조 재감자에게 교부한 信書 및 前條의 문서는 본인이 閱讀한 후 이것을 領置함.

제50조 接見의 入會, 信書의 검열 기타 접견 및 新서에 관한 제한은 명령으로써 이것을 정함.

제51조 재감자의 携有物은 點檢하여 이것을 領置함.

保存의 가치가 없거나 保存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그 영치를 하지 않고 또는 이것을 解除할 수 있음.

영치를 하지 않고 또는 이것을 해제된 물건에 대하여 재감자가 상당의 처분을 하지 않을 시는 이것을 廢棄할 수 있음.

제52조 재감자가 領置物으로써 그 父母, 配偶者 또는 子의 扶助 기타 正當한 용도에 充當할 것을 청할 시는 情狀에 의하여 이것을 허할 수 있음.

제53조 재감자에게 差入할 것을 청하는 자가 있을 시는 命令의 정한 바에 의하여 이것을 허할 수 있음.

재감자에 대하여 送致하여 온 물건으로써 그 差出人の 성명 혹은 居所가 不明하여 차입을 허가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할 시 또는 재감자에 있어서 受領을 거부할 시에는 이것을 沒入 또는 廢棄할 수 있음.

제54조 재감자가 私的으로 所持하는 물건은 이것을 沒入 또는 廢棄할 수 있음.

제55조 領置物은 竊奪할 시에 이것을 교부함.

제56조 사망자의 遺留物品은 청구에 의하여 相續人, 家族 또는 親族에게 교부함.

제57조 사망자의 遺留物品은 사망일로부터 1년내에 前條에 揭示한 자의 청구가 없을 시는 國庫에 귀속함.

逃走者의 遺留物品으로서 도주일로부터 1년내에 居所不明할 시도 역시 동일함.

제58조 수형자에게 改悛의 情이 있을 때는 賞遇를 할수 있음.

賞遇의 종류 및 방법은 명령으로써 이것을 정함.

제59조 在監者가 紀律을 違背할 시는 懲罰에 처함.

제60조 懲罰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

1. 叱責
2. 賞遇의 3월 이내의 정지
3. 賞遇의 廢止
4. 文書·圖書閱讀의 3월 이내의 정지
5. 請願作業의 10일 이내의 정지
6. 自辨에 관한 衣類·臥具着用の 15일 이내의 정지
7. 糧食自辨의 15일 이내의 정지
8. 運動의 5일 이내의 정지
9. 作業賞與金 計算高의 일부 또는 전부 減削
10. 7일 이내의 減食
11. 2월 이내의 輕屏禁
12. 7일 이내의 重屏禁

屏禁은 懲罰者를 罰室內에 晝夜屏居시키고 情狀에 의하여 취업시키지 않을 수 있음.

重屏禁에 있어서는 罰室을 暗黑케 하고 臥具를 禁함.

제1항 각호의 懲罰은 이것을 併科할 수 있음.

제61조 前條 제1항 제10호의 징벌은 刑事被告人 및 18세 미만의 在監者에게는 이것을 科치 않음.

제62조 懲罰에 처한 자가 질병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징벌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

징벌에 처한 자가 改悛의 情이 현저할 시는 징벌을 면제할 수 있음.

제63조 재감자의 釋放은 恩赦, 職權이 있는 자의 命令 또는 刑期의 종료에 의하여 관계 문서를 査閱하여 수속할 것

- 제64조 恩赦를 받거나 또는 假出獄 및 假出場이 허가된 자는 裁可狀 또는 許可書가 監獄에 達한 후 24시간 내에 이를 석방함.
- 제65조 前條의 경우를 제외하고 명령에 의하여 석방할 자는 命令書가 監獄에 달한 수 10시간 내에 석방함.
- 제66조 假出獄 또는 假出場이 허가된 자를 석방할 시는 이에 證票를 교부함.
- 제67조 가출옥이 허가된 자는 그 기간에 다음의 규정을 준수할 것.
1. 正業에 취하여 선행을 保持할 것.
 2. 警察官署의 監督을 받을 것.
- 단, 경찰관서는 監獄의 의견을 들어 타에 그 감독을 委任할 수 있음.
3. 주거를 이전하거나 또는 10일 이상 여행을 하려고 할 때는 監督者의 허가를 받을 것.
- 主務大臣은 假出獄이 허가된 자가 국외로 여행할 것을 허가할 수 있음.
- 제68조 滿期된 자는 刑期終了의 翌日 오후 6시까지 석방함.
- 제69조 석방될 자가 중한 질병에 걸려 監獄에서 醫療中일 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더 在監시킬 수 있음.
- 제70조 석방될 자가 歸任旅費 혹은 상당한 의류를 소유치 못하였을 때나 또는 監獄行政의 편의에 의하여 移監하기 때문에 歸任旅費의 증가를 요하게 된 때에는 의류 또는 여비를 급여할 수 있음.
- 제71조 死刑의 집행은 감옥내의 刑場에서 함.
- 大祭祝日 1월1일, 2일 및 12월 31일에는 사형을 집행치 않음.
- 제72조 死刑을 집행할 시에는 絞首한 후 死相을 檢査하고 또한 5분을 경과치 아니하면 絞繩을 解하지 못함.
- 제73조 在監者가 사망하였을 시에는 이것을 假葬함.
- 死體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火葬할 수 있음.
- 死體 또는 遺骨은 假葬후 2년을 경과하여 合葬할 수 있음.
- 제74조 사망자의 親族故舊로서 死體 또는 遺骨을 청하는 자가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交付할 수 있음.

제75조 수형자의 死體는 命令이 정한 處에 의하여 解剖하기 위해 病院, 학교
또는 기타의 公務所에 이것을 送付할 수 있음.

附 則

本法은 刑法 시행의 일로부터 시행한다.

< 자료 6 > 의병투쟁 관련 서대문형무소 투옥 및 순국선열

성 명	생몰년월일	출신지	판결밋옥고	판결년월일	형 량
姜 明 善	1880.07.08 ~1944.07.19	경기 연천	경성공소원 대심원	1908.09.29 1908.11.10	15년형
姜 炳 旭	1871.05.06 ~1952.03.10	경북 문경	경성지방법원	1914.07.03	10년형
康 伊 奉	(1881)~미상	충남 금산	경성 지방재판소	1910.02.04	15년형
姜 和 淳	1873~미상	서울	경성 지방재판소	1909.12.14	7년형
高 明 信	1865~미상	함남 이원	경성공소원	1909.02.05	5년형
高 文 成	1869~미상	경기 마전	경성 지방재판소	1911.03.31	3년형
高 翊 奎	(1856~1909)	함남 이원	경성공소원 대심원	1909.02.05 1909.02.23	교수형
郭 俊 熙	1870~ 1940.08.14	충북 옥천	경성공소원	1909.06.01	10년형
權 承 默	(1872)~미상	경기 양주	경성 지방재판소	1910.07.18	3년형
金 敬 文	(1863)~미상	평남 중화	경성공소원	1910.03.10	10년형
金 景 云	1862~(1908)	경기 통진	경성공소원	1908.11.06	교수형
金 癸 石	(1887)~미상	서울	경성 지방재판소	1909.07.08	2년형
金 龜 鶴	(1865~1909)	강원 회양	경성 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 대심원	1908.11.17 1909.01.19 1909.02.06	교수형
金 奎 明	(1881)~미상	서울	경성 지방재판소	1910.04.25	5년형
金 德 先	(1886)~미상	강원 평창	경성공소원	1912.03.22	5년형
金 德 順	(1878~1909)	인천 강화	경성 지방재판소	1909.03.23	교수형

金 東 洙	1897~(1910)	광주	경성공소원 옥중순국	1910.02.22	15년형
金 範 伊	(1884)~미상	경기 광주	경성 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	1909.10.02 1909.11.15	15년형
金 炳 一	(1886~1914)	경북 봉화	함흥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	1913.12.13 1914.02.18	사형
金 善 日	(1880~1910)	울산	대구공소원 고등법원	1910.01.18 1910.03.04	교수형
金 聖 天	(1883)~미상	충남 연산	경성공소원	1910.01.18	종신형
金 壽 萬	(1885)~미상	서울	경성 지방재판소	1909.11.30	7년형
金 秀 敏	1857~1909	경기 장단	경성공소원	1909.11.22	교수형
金 順 玉	(1876~1910)	강원 통천	경성 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 대심원	1908.12.17 1909.01.19 1910.02.06	교수형
金 時 伯	1887.10.27 ~1950.06.07	강원 영월	경성감옥		10년형
金 彦 世	(1869~1911)	함남 안변	경성 지방재판소 춘천지부 경성공소원	1911.05.29 1911.06.19	종신형 교수형
金 永 權	(1868~1909)	함남 갑산	함흥 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	1909.08.13 1909.09.20	교수형
金 永 俊	1868~1910	강원 금성	경성 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 고등법원	1909.12.21 1910.01.22 1910.02.15	교수형
金 益 洙	1880.02.26 ~1920.11.01	전남 무안	서대문형무소 공주형무소	1909.09	3년형

金 鍾 根	(1881)~ 1917.04.19	강원 원주	경성복심법원	1916.11.29	사형
金 鍾 植	(1883)~미상	서울	경성 지방재판소	1909.12.14	7년형
金 鍾 鐵	1880.03.24 ~1917.04.19	경북 봉화	경성복심법원	1916.11.29 1917.04.19	사형
金 晋 炫	(1883)~미상	강원 인제	경성공소원	1910.04.26	2년형
金 致 淵	(1890)~미상	경기 마전	경성공소원 대심원	1908.08.29 1908.11.10	5년형
金 泰 山	(1874~1909)	함남 단천	함흥 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	1909.01.20 1909.03.19	교수형
金 平 根	1870.02.21 ~1924.02.12	충북 영동	경성공소원	1909.06.01	5년형
金 헌 卿	1851.11.30 ~1910.05.05	강원 삼척	경성감옥 옥중 순국	1910.05.05	
金 憲 植	(1884~1909)	서울	경성 지방재판소	1909.07.24	교수형
金 顯 國	(1854~1909)	강원 원주	경성 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 고등법원	1909.06.08 1909.05.20 1909.06.05	교수형
金 熙 國	(1865)~ 1909.12	함남 장진	고등법원	1909.12.02	교수형
羅 奉 山	1860.05.16 ~1910.11.17	경기 가평	경성 지방재판소 옥중순국	1909.01.28	5년형
南 相 穆	1876~ 1908.11.04	경기 광주	경성 지방재판소 옥중순국	1908.11.04	
盧 鳳 鉉	(1885)~미상	경기 삭령	경성 지방재판소	1909.12.14	15년형
睦 子 商	1870.02.01 ~1910.08.04	경기 양주	경성 지방재판소	1909.03.09	3년형

			옥중순국		
文泰洙	1880~1913	경남 안의	대구감옥 서울로 이송 옥중자결순국	1911.08.17 1913.02.04	
朴光天	(1860~1910)	경기 양평	경성 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 고등법원	1909.11.26 1909.12.23 1910.01.27	교수형
朴文術	미상 ~(1913.07)	경북 울진	경성복심법원	1913.05.20	사형
朴福仁	(1879~1911)	경기 영평	경성 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 고등법원	1911.09.15 1911.10.06 1911.10.16	교수형
朴龍執	(1879)~미상	함남 안변	경성지방법원	1912.05.30	12년형
朴仁贊	(1878) ~1910.06	전남 나주	대구공소원 고등법원	1910.04.12 1910.05.16	교수형
朴春根	1865.08.09 ~1935.08.14	경북 울진	경성공소원	1912.02.21	7년형
朴弘錫	(1857~1909)	서울	경성 지방재판소 대심원	1909.05.06 1909.07.13	교수형
朴華俊	(1882~1911)	대구	경성공소원	1911.05.22	교수형
白琇瑛	(1873) ~1912.10.14	경북 울진	경성복심법원	1912.07.22 1912.10.14	사형
史文成	미상 ~1912.12.18	경북 울진	경성복심법원	1912.07.22 1912.10.14	사형
徐云先	(1884) ~1912.04.02	강원 원주	고등법원	1912.03.16 1912.04	사형
宣景化	(1889)~미상	경기 장단	경성 지방재판소	1910.06.24 1910.09.17	교수형 15년형

			경성공소원		
孫永植	(1884)~미상	서울	경성 지방재판소	1909.12.14	7년형
申寬秀	1884.01.06 ~1922.01.16	경기 김포	경성 지방재판소	1909.07.15	7년형
申大龍	1878~(1910)	경북 봉화	경성공소원	1910.07.07	교수형
申石奎	1862~(1909)	함남 갑산	경성공소원	1909.09.08	교수형
申昌龍	1878~(1909)	경기 양주	경성공소원	1909.06.16	교수형
申鉉九	(1878~1909)	경기 죽산	경성 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	1909.08.17 1909.09.13	교수형
吳相元	1845~1909		경성공소원 대심원	1909.04.15 1909.04.27	교수형
禹潤九	(1883~1910)	경기 마천	경성 지방재판소 고등법원	1909.12.14 1910.02.04	교수형
柳桂馨	1878~미상		경성공소원	1908.10.23	2년형
柳德三	(1878~1909)	충북	경성공소원	1909.	교수형
尹國範	1883.03.10 ~1911.03.03	경북 예천	고등법원	1911.01.11 1911.02.04	사형
尹致章	1876.06.13 ~미상	경기 광주	경성 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	1909.01.26 1909.03.23	교수형 15년형
李康季	1858.12.30 ~1909.10.13	경북 문경	경성 지방재판소	1908.09.19	교수형
李教永	1873~1910	경북 영천	경성공소원 고등법원	1910.01.29 1910.02.24	교수형
李根培	(1883~1910)	강원 철원	경성 지방재판소	1910.02.16	교수형
李能權	1864 ~1909.11.08	인천 강화	경성공소원	1909.09.27	교수형
李萬逢	(1891)~미상	충북 청주	경성공소원	1909.03.08	7년형
李復根	1879	전남 영암	대구공소원	1910.02.19	교수형

	~1910.04		고등법원	1910.03.29	
李 聖 德	(1888) ~1909.12	강원 평창	고등법원	1909.12.01	교수형
李 聖 瑞	(1856~1909)	경기 지평	경성 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	1909.11.19 1909.12.14	교수형
李 完 甫	(1857~1909)	강원 회양	경성 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 대심원	1908.11.17 1909.01.19 1909.02.06	교수형
李 龍 業	(1860)~미상	충북 영춘	경성공소원	1909.10.01	5년형
李 殷 瓚	1878 ~1909.06.27	강원 원주	경성지방법원	1909.05.10	교수형
李 麟 榮	1880.04.27 ~1909.09.20	경기 여주	경성 지방재판소	1909.09.20	교수형
李 鍾 甲	1874.07.10 ~1932.02.27	충남 남포	경성공소원	1909.05.28	7년형
李 仲 伯	1878 ~1910.05	전남 장성	대구공소원 고등법원	1910.03.05 1910.04.14	교수형
李 致 玉	(1879~1908)	미상	경성공소원 대심원	1908.09.25 1908.10.13	교수형
林 道 玆	(1887) ~1910.06	전남 나주	대구공소원 고등법원	1910.04.12 1910.05.16	교수형
林 永 化	1884 ~1910.06	전남 나주	대구공소원 고등법원	1910.04.12 1910.05.16	교수형
張 南 益	(1880)~미상	함남 북청	경성복심법원	1912.06.24	6월형
張 元 謙	(1867)~미상	경기 시흥	경성 지방재판소	1909.05.06	7년형
鄭 敬 泰	(1878~1911)	강원 춘천	함흥 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 고등법원	1911.08.10 1911.10.25 1911.11.10	교수형
鄭 斗 煥	1880.02.16	경기 양주	경성	1910.09.26	5년형

	~1943.04.09		지방재판소		
鄭永雲	1879~1910	경기 양평	경성 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	1910.02.16 1910.03.01	교수형
鄭用大	1882.02.28 ~1910.01.26	경기 파주	경성 지방재판소	1909.10.28 1910.	교수형
鄭濟煥	1878.04.21 ~1956.03.14	경기 양주	경성 지방재판소	1909.04.17	5년형
鄭忠煥	1888.04.19 ~1962.01.17	경기 양주	경성 지방재판소 대심원	1909.02.04 1909.04.05	5년형
鄭弘俊	(1879~1911)	경기 파주	경성 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 고등법원	1911.03.20 1911.04.24 1911.05.24	교수형
趙永煥	1868~1910	함남 안변	경성공소원 고등법원	1910. 1910.05.28	교수형
朱敬天	(1881)~미상	함남 함흥	경성공소원	1909.04.16	10년형
朱永秀	(1876)~미상	경북 영해	경성 지방재판소	1910.04.30	2년6월형
蔡敬默	(1871)~미상	강원 영월	경성 지방재판소	1909.03.20	5년형
崔敬先	(1880)~미상	충북 괴산	경성 지방재판소	1909.12.10	5년형
崔錫祐	(1882)~미상	함북 경성	경성공소원 대심원	1909.03.12 1909.03.24	3년형
崔有福	(1882)~미상	서울	경성 지방재판소	1909.11.30	7년형
崔正老	(1884)~미상	함북 경성	경성공소원 대심원	1909.03.12 1909.03.24	3년형
崔致魯	(1867)~미상	충북 청원	경성공소원	1910.03.08	7년형
秋三萬	1880~(1910)	경기 양주	경성 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	1909.12.21 1910.01.15	교수형

韓斗瓚	(1881)~미상	함남 갑산	경성복심법원	1912.06.19	2년형
韓龍極	(1870)~미상	함남 삼수	경성공소원	1909.05.14	15년형
韓貞萬	1865.09.05 ~1914.03	황해 평산	고등법원	1914	교수형
韓昌烈	(1882) ~1908.12	경기 장단	경성공소원 고등법원	1908.09.22 1908.12.05	교수형
許 蓼	1854.04.01 ~1908.09.27	경북 선산	경성공소원	1908	교수형
玄學用	(1881)~미상	경기 장단	경성 지방재판소	1909.05.04	5년형
洪光表	1870.01.17 ~1929.03.06	경기 연천	경성 지방재판소	1909.12.21	2년6월형
洪宜善	(1861)~미상	강원 영월	경성공소원	1909.10.22	5년형
洪千喜	1883.05.08 ~1950.05.15	경기 연천	경성 지방재판소	1910.12.16	10년형
黃順八	(1891)~ 1910.07	강원 평창	경성공소원 고등법원	1910.05.21 1910.06.20	교수형

※ 생몰년월일·출신지는, 國家報勳處, 『獨立有功者功勳錄』 1~15, 1986~2003 참조.
 법원명·판결년월일·형량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각 해당 의병의 판결문을 참고하여 정리.
 단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거나 상고한 경우는 2심과 3심의 재판기록까지 함께 찾아 1심~3심까지 각각의 판결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였음.

< 자료 7 > 105인사건 관련 서대문형무소 투옥 및 순국선열

성명	재판당시 나이	생몰년월일	출신지	판결및옥고	판결년월일	형량
尹致昊	47세		서울			
梁起鐸	42세	1871.04.02 ~1938.06.20	평남 평양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 대구복심법원 고등법원	1912.09.28 1913.03.20 1913.07.15 1913.10.09	10년형 6년형 6년형 기각
林崑正	32세	1880.09.26 ~1932.01.09	평남 용강			
李昇薰	49세	1864.04.25 ~1930.05.09	평북 정주			
安泰國	38세	미상 ~1920.04.11	평남 중화			
玉觀彬	22세		평남 양덕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 대구복심법원 고등법원	1912.09.28 1913.03.20 1913.07.15 1913.10.09	7년형 5년형 6년형 기각
柳東說	34세	1879.03.26 ~남북	평북 박천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	1912.09.28 1913.03.20	10년형 무죄
張膺震	33세	1880.03.05 ~1950.08.30	황해 은율			
車利錫	32세	1881.07.26 ~1945.09.09	평남 명연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	1912.09.28 1913.03.20	7년형 무죄
羅一鳳	42세		평남 중화			
邊麟瑞	31세		평남 평양			
崔叡恒	35세	1878.02.17 ~1913	평남 평양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 옥중 순국	1912.09.28 1913.03.20 1913	7년형 무죄
梁濬明	35세	1879.02.11 ~1949.12.23	평북 선천			
金一焮	29세	1882.11.06 ~1942.04.30	평북 정주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	1912.09.28 1913.03.20	7년형 무죄
鮮于赫	29세	1882.08.03 ~미상	평북 정주			

郭泰鍾	29세		황해 해주			
崔德潤	29세		평북 선천			
李溶華	41세		평북 가산			
林囧燁	28세		평북 정주			
崔聖柱	35세	1877.02.09 ~1944.11.18	평북 정주			
洪成麟	36세	1877.09.24 ~미상	평북 정주			
吳熙源	39세	1873.03.02 ~1936.08.03	평북 의주			
李基唐	37세		평북 용천			
宋子賢	33세		평북 용천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	1912.09.28 1913.03.20	7년형 무죄
李德煥	36세		평남 평양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	1912.09.28 1913.03.20	6년형 무죄
李春燮	34세		평남 평양			
金東元	29세		평남 평양			
金斗和	29세		평남 평양			
尹聖運	37세		평남 안주			
鄭益魯	50세		평남 평양			
安慶祿	30세		평남 삼화			
申尙昊	38세		평남 평양			
申孝範	33세	1878. ~1929.05.	황해 선천			
張時郁	32세		평북 선천			
洪成益	31세	1883.12.06 ~1920.01.27	평북 선천			
車均高	24세	1878. ~1929.05.	평북 선천			
李龍赫	26세	미상~1945	평북 선천			
姜奎燦	39세		평북 선천			

梁 甸 伯	43세	1869.03.10 ~1933.01.17	평북 의주			
李 鳳 朝	38세		평북 철산			
魯 孝 郁	35세		평북 선천			
金 昌 煥	31세	1872.04.09 ~1937.02.12	평북 선천			
魯 晶 瓘	39세	1875.06. ~1933.08.	평북 선천			
安 濬	46세		평북 선천			
朱 賢 則	30세	1882.07.07 ~1942.03.25	평북 삭주			
金 益 謙	25세		평북 선천			
李 昌 錫	52세		평북 선천			
李 泰 建	28세	1885.11.01 ~1958.05.18	평북 위원			
崔 周 杙	30세		평북 가산			
金 燦 五	22세		평북 가산			
趙 德 燦	44세		평북 정주			
李 明 龍	40세	1872.08.02 ~1956.11.12	평북 철산			
任 道 明	29세		평북 정주			
白 夢 奎	31세		평북 정주			
李 根 宅	28세		평북 광산			
吳 學 洙	28세	1885.07.10 ~미상	평북 광산			
池 尙 周	37세		평북 광산			
金 時 漸	31세	1882~미상	평북 광산			
鄭 元 範	32세	1881. ~1920.09.	평북 철산			
劉 學 濂	28세		평북 철산			

張寬善	45세	1866.05.05 ~1938.05.09	평북 철산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	1912.09.28 1913.03.20	6년형 무죄
金昌鍵	41세		평북 의주			
白用錫	34세	1878.03.05 ~1920.05.05	평북 의주			
吳大泳	28세		평남 삼화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	1912.09.28 1913.03.20	5년형 무죄
玉成彬	28세		평남 평양			
金應祚	56세		황해 수안			
尹愿三	26세		평남 평양			
徐基禮	31세		평남 용강			
安世桓	25세	1892.03.25 ~1927.09.20	평남 순안			
鄭周鉉	21세	1891.01.20 ~1923.	미상			
梁濬熙	28세		평북 귀성			
孫廷郁	25세		평북 광산			
鄭德燕	24세		평남 철산			
李東華	22세		평북 선천			
李正燁	23세		평북 철산			
金賢軾	24세		평북 철산			
車熙善	23세	1890.04.07 ~1971.12.28	평북 선천			
李廷淳	22세		평남 안주			
羅鳳奎	28세		황해 신천			
白日鎭	29세	1883.07.06 ~1921.03.06	평북 의주			
洪規旻	25세	1877.11 ~1919	평북 철산			
車永俊	25세		평북 자성			
吉鎭亨	21세	1891.02.19	평남 평양			

		~1917.10.13				
趙永濟	24세		평남 삼화			
姜鳳羽	23세	1892.02.05 ~1970.11.05	함남 함흥			
白南俊	28세		평북 영변			
吳宅儀	31세		황해 신천			
片康烈	21세	1892. ~1928.12.06	황해 연안			
羅昇奎	21세		평북 가산			
安聖濟	24세		평북 정주			
金善行	23세		평북 정주			
金溶燁	20세		평북 가산			
崔濟奎	30세		평북 가산			
崔聖民	48세		평북 가산			
李載允	21세		평북 가산			
李枝元	25세		평북 정주			
朴尙薰	29세		평북 가산			
林秉行	22세		평북 가산			
朴贊亨	48세		평북 정주			
李秉濟	28세		평북 가산			
金鳳洙	34세		평북 정주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	1912.09.28 1913.03.20	5년형 무죄
金龍五	49세		평북 정주			
羅義涉	29세		평북 정주			
金應鳳	25세		평남 평양			
安光浩	26세	미상	평북 의주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 옥중 순국	1912.09.28 1913.03.20	5년형 무죄

※ 생몰년월일은 國家報勳處, 『獨立有功者功勳錄』 1~15, 1986~2003 참조.

재판당시 나이·출신지는 『105人事件 公判始末書』를 그대로 기록하였고, 판결

및 옥고·판결년월일·형량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105인사건의 판결문을 정리하여 기록하였음.